

연구보고서 2007-

# 경찰의 UN PKO 참여 활성화 및 □경찰 PKO센터□ 설립방안

《研究陣》

---

연구위원 : 이 신 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 ( )

---

“본 연구는 2006년 경찰대학치안연구소의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의 내용은 경찰대학치안정책연구소의 공식적인 의견과 견해를 달리할 수 있음을 밝혀둔다.”

# 목 차

I. 서론 .....	5
II.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개념과 변천과정 .....	7
1. 유엔 PKO란 무엇인가? .....	7
2. 세계분쟁양상의 변화와 유엔 PKO의 변천과정 .....	12
III. 유엔경찰의 개념과 경찰의 PKO 활동 .....	27
1. 유엔경찰이란 무엇인가? .....	27
2. 유엔경찰 파견국가 현황 및 평가 .....	34
IV. 한국의 PKO 참여현황 및 향후 경찰 PKO 파견전망 .....	47
1. 한국의 유엔 PKO 참여와 의의 .....	47
2. 한국의 경찰 PKO 현황과 전망 .....	55
V. 한국의 '경찰 PKO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방안 .....	58
1. 경찰 PKO센터의 필요성과 타당성 .....	58
2. 세계의 경찰 PKO센터 현황 및 특성 .....	63
3. 국가급 경찰 PKO센터 설립 및 활성화 방안 .....	76
VI. 결 론 .....	87
참고문헌 .....	90



## I. 서론

유엔경찰(United Nations Police)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현장임무(UN Field Missions)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몇 년 사이 경찰 PKO 활동은 크게 증가하였는데, 2006년 한 해만도 유엔 PKO에서 경찰과건은 30% 증가하였고,<sup>1)</sup> 2007년 5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20개의 PKO 임무 중 18개 임무에 총 9,565명의 경찰이 참여하고 있다.<sup>2)</sup> 경찰의 PKO 참여에 대한 유엔 및 국제사회의 요구가 점점 증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수치는 향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PKO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지게 된 것은 분쟁원인과 양태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평화구조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력갈등에 개입하는 행위자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부터이다. 즉 PKO 임무가 중립지대의 정전감시 및 평화협정 이행감시와 같은 전통적인 역할을 뛰어넘어, 전투원의 무장해제, 민주주의 선거실시 감독 및 피난민 정착과 전후(戰後) 복구활동과 같은 인도적 지원 등 그 임무가 확대됨에 따라, 군인뿐 아니라 경찰, 민간옵서버, NGO 구호개발 전문가들이 국제평화활동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특히 경찰 PKO의 경우, 주로 순찰활동, 훈련제공(교육), 관할 경찰에 대한 자문 제공, 인권 기준 준수 및 보호를 위한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유엔이 분쟁지역에서 강조하고 있는 평화재건/구축(peacebuilding)의 임무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경찰의 PKO 참여가 현재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에 직면한 유엔 PKO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경찰 PKO에 대한 유엔 및 국제사회의

1) “UN Police Chief calls for More Darfur Peacekeepers,” Reuters, August 30, 2007. <http://www.altertnet.org/thenews/newsde나/SYD231999.htm>.

2) 유엔 Department of Peacekeeping (DPKO) 웹사이트에서 가장 최근 업데이트된 정보에 따르면, 2007년 8월 현재 9,380명의 유엔경찰이 PKO 임무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임무와 관련한 세부적인 정보는 아직까지 웹사이트에 기재되어있지 않은 관계로, 여기서는 같은 해 5월 현재 총 유엔 PKO 임무 중 몇 개의 임무에 경찰이 참여하고 있는 가를 언급하였다.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keeping, “Monthly Summary of Contributors of Military and Civilian Police Personnel,” <<http://www.un.org/Depts/dpko/dpko/contributors/>>.

기대와 요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한편, 한국도 국력에 부합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가위상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특히 1991년 남북한 동시 가입으로 161번째 유엔 회원국이 된지 15년 만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하는 나라로 국가브랜드를 크게 높인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이슈들에 대한 관심과 대응을 확장시켜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그동안 유엔은 한국경찰의 전문성과 자질을 높이 평가하여 동티모르 지역 중대급 경찰부대 파견요청, 유엔 평화유지활동국 근무요원 추천요청 등 적극적인 PKO 참여를 요청해왔다. 성장한 국력과 높아진 국가위상에 따라 국제적 의무를 수행하고 권리를 획득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국제평화유지활동은 경찰 PKO 임무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을 수 있다. 특히 경찰 PKO 참여확대는 국제적으로 책임감 있는 국가로서의 인식확대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세계적 발언권 확대로 연결됨으로써 한국의 국제사회 내 역할 수행을 활성화하는 선순환의 고리를 창출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 훨씬 더 많은 수의 우수한 경찰 인력들을 파견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부재한 실정이다.

한편, 유엔 PKO의 역할과 활동이 다양화되면서 참여 경찰의 숫자와 질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 또한 분쟁의 양상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해지고 그 발생빈도도 높아지는 만큼, 양적 증가 뿐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경찰임무의 다원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감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분쟁의 해결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펼칠 수 있는 경찰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유엔경찰은 인권에 대한 심도있는 지식과 이를 위한 희생정신을 겸비해야 하고, 경찰이 대면하는 현지인들로 하여금 책임의식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줄 수 있는 헌신적 자세와 노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도 경찰부대(특히 대규모의 경찰부대)의 유엔 파견을 대비하여 국제이슈에 대한 교육, 지구촌 분쟁상황이나 인도적 위기상황에 대한 이해, 외국어실력 배양 등 교육훈련을 진행할 체계적인 교육기관의 설립이 절실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국경찰의 유엔 PKO 참여 활성화를 위한 '경찰 PKO 센터' 설립의 이론적 근거와 정책적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경찰 PKO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분석하고, 이 센터설립을 위한 제반 여건 및 절차를 고찰하며, 유엔경찰로 파견될 인력들의 교육계획 프로그램 수립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II.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개념과 변천과정

### 1. 유엔 PKO란 무엇인가?<sup>3)</sup>

국제연합(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최우선 목적으로 1946년 발족된 국제기구이다. 양차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국제사회는 유엔이라는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체제를 구축하여 세계평화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집단안보는 1920년에 설립되었다가 세계대전의 재발로 붕괴된 국제연맹의 주요 평화확보 수단이었다. 국제연맹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란 원칙하에 전쟁을 도발한 회원국에 제재조치로 경제적 관계단절 또한 처벌 수단으로 규정하였지만 이러한 제재방안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에 불과하였고, 침략에 대한 강력한 대응(무력사용)도 없었다.

따라서 유엔은 그 목적과 구조의 상당부분을 국제연맹으로부터 이어받았지만, 국제연맹의 취약점이었던 집행 및 제재능력과 전쟁방지 기능 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필요시 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분쟁의 강제적 해결’을 택할 수 있는 규정을 유엔헌장 7장(“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에 명시하고 집단안보체제를 통한 개입을 합법화하였다. 즉 특정국에 대한 제재에 나설 경우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우선적으로 7장 41조에 해당하는 비군사적 제재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 제재가 효과적이지 못할 경우 7장 42조에 의거하여 병력사용(무력제재)을 담보하는 추가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이다.<sup>4)</sup>

3) 이 장의 평화유지관련 부분은 이신화, “국제분쟁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역할을 중심으로,” □신아세아□, 제11권 제4호 (2004), pp. 61-85를 토대로 수정 보완함.

4) 유엔헌장 7장은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행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대응조치는 41조와 42조에 명시되어 있다. 41조는 “경제관계 및 철도, 항해, 항공, 우편, 전신, 무선통신 기타의 운수통신수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과 외교관계의 단절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적시하였는데, 이는 안보리가 병력사용을 제외한 모든 제재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결정을 유엔회원국들이 수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42조는 “41조에 정한 조치로서는 불충분하다고 인정하고 판명될 때……. 세계평화와 안전의 유지 또는 회복에 필요한 공군, 해군 또는 육군의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이 행동은 국제연합가맹국의 공군, 해군 또는 육군에 의한 시위, 봉쇄 기타의 행동을

유엔헌장에 명시된 집단안보란 “국가들 간의 공통목표를 위하여 한 개 또는 여러 국가들에 의한 타국에 대한 무력침공을 억제하거나 만약 억제가 실패하면 그 무력침공을 제압하는 일련의 강제조치”를 의미한다.<sup>5)</sup> 따라서 유엔헌장이 규정한 집단안전보장조치란 힘의 자의적 사용을 통해 기존 국제질서를 교란시킨 침략국에 대응하여 세계평화와 안전보장이라는 지구촌 공동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무력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조직적·집단적 장치이다.

그러나 유엔 집단안보체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등 많은 한계점을 노정하였다. 집단안보는 상임이사국들 간 대립이나 이들이 연관된 분쟁에서는 실질적 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 그 이행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다. 유엔설립 이래 회원국들에 의한 집단안전보장이 적용된 사례가 1950~1953년 한국전쟁과 1991년 걸프전 두 번 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이 체제의 이행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든가를 보여준다. 특히 이 두 전쟁은 비록 안보리가 승인한 다국적군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전개되었지만, 양 전쟁 모두 미국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초강대국이 주도하고 여타 강대국들의 반대가 없을 때 적극적인 국제사회의 질서 유지활동이 가능했던 것이다. 즉, 집단안전보장이란 원칙하에 이루어진 개입은 유엔헌장이 애초 의도하였던 ‘모든 국가들의 의사를 취합한 행동은 아니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향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사정은 매한가지일 것이라는 비판론이 지배적이다.<sup>6)</sup>

한편, 평화유지활동(PKO)이란 국제안보와 분쟁중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회복·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취하는 활동으로써 군사적 강제력을 행하지 않는 군인들에 의해 수행된다.<sup>7)</sup> 대한민국 국방부는 유엔 평화유지국(Department of Peacekeeping

---

포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41조에 따른 조치가 여의치 않을 경우의 상황을 전제로 하며, 안보리의 결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무력 사용이 국제법의 보호를 받도록 한 조항이다.

5) Inis Claude, Jr. *Pow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Random House, 1962), p. 110, 박홍순, “한국전쟁과 UN의 개입(1950): 과정과 배경,” 강성학 편, □유엔과 한국전쟁□ (서울: 리북, 2004), p. 15에서 재인용함.

6) Michael Pugh and Wahegure Pal Singh Sidhu, *The United Nations and Regional Security: Europe and Beyond*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2003); Donald J. Puchala, Katie Verlin Laatikainen, Roger A. Coate, *United Nations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a Divided World*,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earson Prentice Hall, 2007).

Operation: DPKO)의 정의에 의거하여, PKO를 i) 유엔안보리나 총회가 행하는 결의에 따라; ii)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지역분쟁과 사태에 대해서; iii) 분쟁 당사자들이 분쟁 해결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 iv) 그 분쟁지역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유엔회원국들이; v) 유엔사무총장의 요청을 받아 자발적으로 군인 및 민간인들을 파견하여; vi) 파견요원들의 정치적, 군사적 중립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vii) 유엔이 주도하여 평화적으로 수습해 나가는 유엔활동으로 정의내리고 있다.<sup>8)</sup>

PKO는 크게 유엔 주도의 PKO와 지역기구나 특정한 국가(들) 주도의 비유엔평화유지활동(non-UN PKO)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유엔헌장에 근거하여 활동을 하지만, 전자는 지휘통제 및 전투근무지원 등이 유엔책임 하에 있는 반면, 후자는 지역기구나 해당국에 있다는 차이점을 갖는다. 걸프전, 코소보사태, 동티모르 독립투표실행 가결 직후 발생한 유혈사태에 특정국(예: 미국, 호주)이 주도하는 다국적군(multi-national forces: MNF)이 안보리의 승인을 거쳐 파견된 것이 후자의 대표적인 예이다. 반면, 유엔 평화유지군(peacekeeping forces: PKF)<sup>9)</sup>은 안보리의 결의안을 근거로 창설되어 평화유지활동이나 군감시단 역할을 수행하며, 유엔이 직접 군수지원과 파병비용을 부담한다.<sup>10)</sup>

유엔헌장에 그 활동과 관련한 기준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PKO는 국제평화유지와 분쟁관리 및 예방수단으로 세계도처에서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분쟁에 개입하여 실시되어 왔다. 대그 하마솔트(Dag Hammarskjold) 제 2대 유엔사무총장이 PKO의 근거는 “유엔헌장 6과 1/2장에 있다”고 언급한 것은 PKO가 그 활동의 특성상 법적 근거를 찾을 경우 헌장 6장과 7장의 사이에 해당된다는 의미이다. 군사력이 동원되기는 하지만 공세가 아닌 평화적 수단을 통해 분쟁을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PKO는 강제력이 없는 유엔헌장 제6장의 평화적 방법에 의한 분쟁해결방식이나 침략자에 대한 제

7) Oliver Ramsbotham and Tom Woodhouse, *Encyclopedia of International Peacekeeping Operations* (Santa Barbara: ABC-CLIO, 1999), p. 11.

8) 대한민국 국방부, “UN 평화유지활동 (PKO: Peace Keeping Operations,” <http://www.mnd.go.kr/policyFocus/koreanSolider/peace/index.jsp>.

9) 본 보고서에서는 ‘평화유지군’을 단순히 군병력을 일컫는 peacekeeping forces로 쓰지 않고, 평화유지활동을 하는 전체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평화유지군 내의 구성원인 ‘병력’과 ‘평화유지군’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10) “다국적군과 유엔평화유지군, 어떻게 다른가,” □동아일보□, 2004년 9월 15일자, <http://www.donga.com/fbin/news?f>.

제조치를 포함하여 강제력은 있지만 실제 집행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제7장의 집단안 보에 비해 현실성과 효용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1948년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사이에 체결된 정전협정을 감시하기 위해 팔레스타인 지역에 파견된 유엔 예루살렘 정전감시단(United Nations Truce Supervision Organization: UNTSO)으로 처음 시작된 PKO 임무는 2007년 7월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61회(현재 진행 중인 16개 PKO활동 포함)에 걸쳐 진행되었다.<sup>11)</sup> 현재 진행 중인 PKO에서는 71,205명의 군 병력, 9,563명의 경찰, 2,558명의 군 읍서버 등 총 83,783명의 평화유지요원들이 유엔 깃발 아래 활동하고 있다.<sup>12)</sup>

전통적으로 행해져 온 평화유지활동이란 분쟁지역에서 휴전동의나 정전협정이 체결되어 분쟁 당사자들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평화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현상유지 차원의 평화유지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평화유지군을 파견하는 유엔의 활동을 일컫는다. 즉 PKO란 분쟁당사자들의 싸움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 사이에서 휴전동의를 얻어낸 후 정전위반 사례 감시 등 두 당사자들 간의 중재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분쟁이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임무이다. 유엔 PKO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동의성, 자발성, 비강제성, 중립성, 대표성인데, 평화유지군은 주둔국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파견될 수 있고(동의성), 모든 파견요원은 해당 참여국의 자발적 결정에 따라 파견과 철수를 결정할 수 있다(자발성).

또한 자기 방어를 위해서만 무력 사용(경무장)을 할 수 있으며(비강제성), 두 당사자 간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중립성). 또한 PKO 파견군은 세계 각지의 군인들이 참여함으로써 그 활동이 특정 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벗어나 유엔 회원국의 의지를 대변하는 활동으로 진행된다(대표성). 이러한 PKO 임무수행에 있어 특정 참여국이 자의대로 그 활동을 간섭하거나

11) 현재 진행 중인 PKO에는 2007년 7월 개시된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과 유엔이 수단 다르푸르 지역에서 합동으로 수행중인 UNAMID(African Union/United Nations Hybrid Operation in Darfur)가 포함됨.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 (UNPKO), Background Notes, <http://www.un.org/Depts/dpko/dpko/bnote.htm>.

12) 상동. 기재된 유엔평화유지요원의 수에는 16개의 PKO 임무에 파견된 수에 더하여 DPKO 주도로 이루어지는 정치, 평화재건임무(special political and/or peacebuilding missions)인 UNAMA(아프가니스탄), UNIOSIL(시에라리온), BINUB(부룬디)에 파견된 수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UNAMID(수단 다르푸르)에 파견된 요원들의 수는 아직까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강요할 수 없다.<sup>13)</sup>

이와 같이 유엔에 의해 이루어진 전통적 평화유지활동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지금껏 이어지고 있으나, 탈냉전 이후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 분쟁조정 및 해결을 위해 국제평화유지와 관련한 몇 가지 새로운 개념을 토대로 한 활동이 첨가되었다. 이들 개념은 예방외교, 평화조성, 평화유지, 평화재건 및 평화강제 등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1992년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Boutros Boutros-Ghali) 전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인 □평화를 위한 의제□(An Agenda for Peace)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우선 예방외교(preventive diplomacy)란 단순한 위기관리차원을 넘어 대립 및 분쟁(dispute)발발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무력분쟁(conflict)으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강도나 범위의 확산을 제한하는 활동을 일컫는다.<sup>14)</sup> 평화조성(peacemaking)이란 헌장 제6장이 강조하는 평화적인 방법과 중재 등을 통하여 분쟁당사자들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유엔이 지명한 대표자나 유엔이 인정한 제3자의 주선으로 정전 또는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는데, 지금까지 순수한 평화조성활동만을 통해 성공적으로 그 임무를 완성한 경우는 도미니카 유엔사무총장 대리임무단(Mission of the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 General in the Dominican Republic: DOMREP, 1965-1966)뿐이었다.<sup>15)</sup>

한편, 평화구축(peacebuilding)이란 평화유지활동을 통해 일단 정전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지역의 분쟁재발 방지와 항구적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무장해제, 민간권한 회복 등 경제적·사회적·군사적·인도적 지원활동을 하는 임무이다. 이 개념은 분쟁이 일차적으로 끝난 후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분쟁 후 평화재건’(post-conflict peacebuilding) 활동이라고도 일컬어진다.<sup>16)</sup> 평화강제 혹은 평화집행(peace enforcement)은 앞서 언

13) Thomas G. Weiss, David P. Forsythe, Roger A. Coate, “Principles of Traditional Peacekeeping,” edited by Thomas G. Weiss, David P. Forsythe, Roger A. Coate, *The United Nations and Changing World Politics*, 4th ed (Boulder: Westview, 2005), Chapter 2, pp. 56-59.

14) 국방부 정책기획국, “유엔평화유지활동,” [http://www.mnd.go.kr/sub\\_home/html/sub\\_home9\\_menu1-1.html](http://www.mnd.go.kr/sub_home/html/sub_home9_menu1-1.html).

15)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 “The Mission of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 <http://www.un.org/Depts/dpko/dpko/info/page3.htm#note.htm>.

16) 국방부 정책기획국, 상동.

급한 다른 비강제적인 평화유지활동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경우 물리적 방법을 통해 평화를 획득하고자 하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앞서 설명한 집단안전보장조치를 취하는 것을 일컫는다. 유엔의 전통적인 집단안보가 '적극적 평화강제'의 성격을 띠다면, 평화유지활동의 한 유형인 평화강제는 최소한의 무력사용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소극적 강제'의 성격을 띤다.<sup>17)</sup>

요약하면, 평화유지활동을 새롭게 확대·정의내린 개념들은 전통적인 PKO와 구별된다기보다 탈냉전시대 평화유지활동의 전반적인 특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개념들은 유엔 주도로 이루어지는 PKO뿐 아니라 다른 국제기구나 특정한 국가 주도의 PKO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있다.

## 2. 세계분쟁양상의 변화와 유엔 PKO의 변천과정

### 1) 세계분쟁의 성격과 형태의 변화

동서냉전종식은 새로운 국제질서(New International Order)의 도래와 평화를 약속하는 것으로 보였다. 프랜시스 후쿠야마(Francis Fukuyama)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도 대규모 전쟁의 시대가 종결되고 자유주의적 이상이 실현되는 평화가 도래할 것이라 예견했지만, 탈냉전기 국제사회는 더욱 복잡하고 불확실해지고 있는 실정이다.<sup>18)</sup> 국가 간 재래전과 같은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구 유고슬라비아, 르완다, 체첸 분쟁사례에서 볼 수 있듯 많은 다민족국가들이 종교나 인종갈등, 민족주의 및 자결주의의 부활로 인한 내전(civil war) 혹은 국내 분쟁(internal conflict)에 빠져들었다. 이는 역사적 반목이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별 등으로 인종그룹들 간의 경쟁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소수민족들이 자신들을 향한 차별을 시정하고 집단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정부나 지배그룹에 대항하는 집단행동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실로 오늘날 발생하고 있는 내전 중 대부분이 '소수민족 해방전쟁' 혹은 '정치인종분

17) 상동.

18)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Free Press: 1992).

쟁'(ethnopolitical conflict)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에서 주권을 인정받은 국가가 200개(유엔 회원국은 192개)정도에 불과한 데 비해, 자주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인종·민족단위는 3,000개를 웃돌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sup>19)</sup> 이와 같은 정치적 행위는 처음부터 게릴라전과 같은 무력충돌로 시작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비폭력적 시위로 시작했다가 정부나 지배세력의 강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사태로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역사적으로 부족 또는 민족 간 갈등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 이와 같은 분쟁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으나, 냉전종식으로 이념이라는 강한 구심점이 약화되면서 제 3세계를 중심으로 더욱 빈번하고 격렬하게 나타나고 있다.<sup>20)</sup>

이와 같이 한 국가 내 분쟁(내전) 발생의 증가는 탈냉전기 분쟁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1900년부터 1941년까지는 전쟁의 80%가 국가 간 전쟁이었던 반면, 양차대전이 종결된 1945년부터 1976년까지는 85%의 분쟁이 내전이였다.<sup>21)</sup> 한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16년(1990-2005년) 동안 발생한 총 57건의 주요 폭력분쟁 중 53건(93%)이 내전(civil war)이었다.<sup>22)</sup> 더욱이 2005년과 마찬가지로, 2006년 한 해 동안 진행된 총 17건의 분쟁은 모두 국가 내에서 발생한 것이었다.<sup>23)</sup>

또한, 미국 메릴랜드대학 국제개발과 분쟁해결연구소(Center for International

19) 이상우, □국제정치학강의□제 6장, “전쟁과 국제질서,” (서울: 박영사, 2005) p. 190-191.

20) Ted Robert Gurr, *People Versus States: Minorities at Risk in the New Century* (Washington D. 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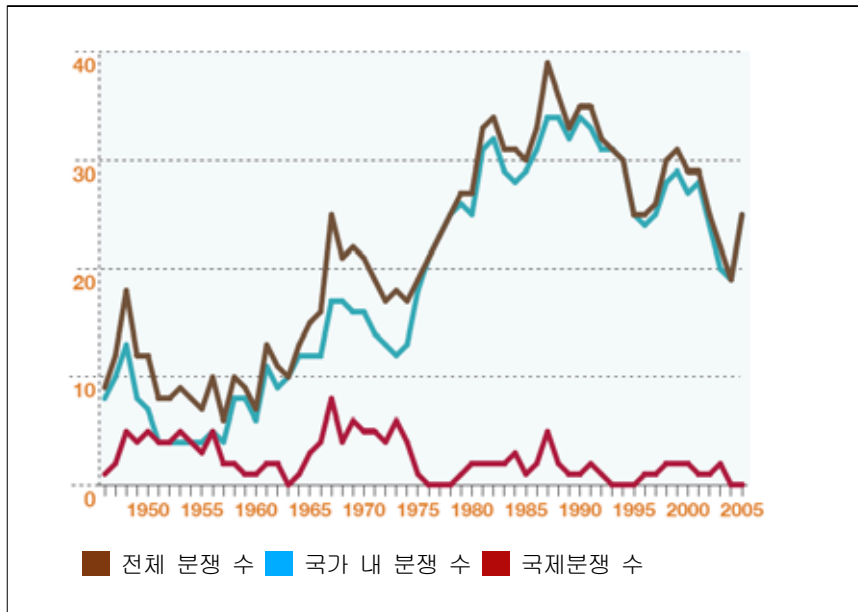
21) Michael W. Doyle and Nicholas Sambanis, *Making War and Building Peace: United Nations Peace Oper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p.10.

22) 여기서 “주요 폭력분쟁(major armed conflicts)”은 양측의 무력 충돌로 연간 1,000명 이상이 사망한 분쟁을 일컫는다. 2005년 말 현재, 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1998-2000), 인도-파키스탄(1990-1992 및 1996-2003), 이라크-쿠웨이트(1991), 미국주도의 이라크 전쟁(2003)만이 탈냉전기 동안 기록된 국가 간 전쟁이었다.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SIPRI Yearbook 2006*. Appendix 2A, Patterns of Major Armed Conflicts, 1990-200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p.108.

23) *SIPRI Yearbook 2007*에서는 1997년-2006년까지 10년간의 총 34개 주요 폭력분쟁을 기록하고 있다. SIPRI, *SIPRI Yearbook 2007*. Appendix 2A, Patterns of Major Armed Conflicts, 1997-200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Development and Conflict Management: CIDCM)의 조나단 윌켄펠트(Jonathan Wilkenfeld)와 테드 거(Ted R. Gurr) 교수 등에 의한 세계 폭력분쟁에 관한 연구에서도 국가 내 폭력분쟁의 수는 국가 간 이루어지는 국제분쟁의 수에 비해 월등히 많다 (<그림 1> 참조).

<그림 1> 세계 폭력분쟁의 추이, 1946-2005



출처 : J. Joseph Hewitt, Jonathan Wilkenfeld, and Ted Robert Gurr, *Peace and Conflict* 2008 (Boulder and London: Paradigm Publishers, 2008).

내전은 주로 인종, 종교, 정체성과 관련한 양립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갈등에서 비롯되어 국가 내 첨예한 대립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자발적 평화협정에 의한 종결이 어렵고 재발이 빈번하며, 대규모 난민과 국내유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 IDP) 및 사상자들을 초래하는 등 심각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상황을 불러일으킨다.<sup>24)</sup> 실제로 1945년 이후 전 세계에서 발생한 내전에서 약 2천만 명이 사망하였고 적어도 6천7백만 명이 거주지를 잃었다.<sup>25)</sup> 탈냉전기 들어 내전이 급증하면서 이러한 인도

24) Michael Brown, "Introduction," in Michael Brown ed. *The International Dimensions of Internal Conflict*, (Cambridge: The MIT Press, 1997) pp.1-31.

적 위기사태는 과거 어떤 이념분쟁이나 국가 간 전쟁의 경우보다도 훨씬 더 심각해졌다. 1990년대 동안 인종분쟁이나 이와 관련한 인권유린, 그리고 탄압을 벗어나기 위해 자국을 탈출한 난민들의 수가 급증하였다.

전통적인 국가 간 전쟁에서 민간인 사상자들은 전쟁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부산물이었던 반면, 탈냉전기 분쟁에 있어서는 민간인들이 전체 희생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제 1차세계대전시 전체 사망자의 14%가 민간인이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오늘날은 그 비율이 75%를 훌쩍 넘었다.<sup>25)</sup> 이는 내전의 와중에 정부와 지배세력이 자신들과 동일한 인종이 아니거나 자신들에게 대항하는 그룹을 강제로 제거·축출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공격과 보복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인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이 탈냉전기 분쟁으로 인한 전체 사상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고 정치적 안보를 확보하는 것을 통해서만은 주권국가 내 각 개인이나 그룹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캐나다 정부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개입과 국가주권에 대한 국제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ICISS)가 발간한 보고서, □ 보호의 의무□(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는 위협에 처한 타인을 보호해야 할 의무라는 개념을 도출하고, 유혈분쟁 상황에 처한 민간인들 보호를 강조하였다. 특히 이 보고서는 개별 국가가 홀로 방어할 수 없는 인도적 위기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하였다.<sup>27)</sup>

인도적 위기상황은 근래 들어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군사적 요인들과 복잡하게 얽혀 다차원적으로 진행되는 ‘복합적 인도적 위기’(complex humanitarian crisis) 경향을 보이고 있다. 흔히 이러한 복합적 인도적 위기상황을 ‘복합적 위기상황’(complex emergency)이라고 일컬으며, 유엔이 인간안보 최우선 대상으로 지칭하는 ‘취약그

25) Paul Collier and Nicholas Sambanis, “Preface,” in Paul Collier and Nicholas Sambanis ed. *Understanding Civil War: Evidence and Analysis*, (Washington DC: World Bank, 2005), pp. xiii- xv

26) Noeleen Heyzer, “Women, War and Peace: Mobilizing for Security and justice in the 21st Century,” Felix Dodds and Tim Pippard eds. *Human & Environmental Security: An Agenda for Change* (London: Earthscan, 2005).

27) ICIS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Ottawa: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2001).

룹'(vulnerable group)이란 이러한 복잡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회 내 개인(특히 여자와 어린이) 및 그룹을 포괄한다. 복합적 위기상황은 “삶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인간의 생명이 주로 정치적 요인들에 의해, 특히 높은 수준의 폭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데,<sup>28)</sup> 이 상황의 관리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총체적이고도 전면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따라서 평화와 안보증진을 위한 유엔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이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에서 R2P를 토대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sup>29)</sup> 이러한 맥락에서 안보의 논점이 국가적 차원에서 개인적 수준으로 전환, 또는 확대되어야 한다는 ‘인간안보’(human security)에 대한 관심이 국제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다.<sup>30)</sup>

더욱이 내전의 경우 분쟁 당사국의 정부가 폭력분쟁을 일으키고 평화를 지연시키는 가해자인 동시에 특정 그룹을 두둔하는 공범의 입장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민주적 평화재건은 기대하기 힘들다.<sup>31)</sup> 따라서 전쟁을 종결시키고 정전감시(observer mission)를 수행하는 전통적인 평화유지(peacekeeping)의 역할뿐 아니라, 평화구축(peacebuilding), 즉 분쟁 이후 붕괴된 국가질서를 재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국가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 역시 유엔 PKO의 역할로 요구되고 있다. 또한 대량 학살/인종청소나 실패국가(failed state) 상황에 대한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즉, 다양한 이해관계가 대표되고 안정적으로 기능하는 정치과정 형성에 유엔이 기여함으로써 분쟁지역이 자체적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주로 국가 간의 분쟁에 개입하여 정전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주요 임무였던 PKO는 국제분쟁의 양상이 바뀌면서 그 활동내용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주로 전투부대 위주의 평화유지군이었던 PKO의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전후

28)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Complex Emergencies,” <[http://www.usaid.gov/our\\_work/global\\_health/nut/techareas/complex.html](http://www.usaid.gov/our_work/global_health/nut/techareas/complex.html)>.

29) Ramesh Thakur, *The United Nation, Peace and Security: From Collective Security to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30) Shin-wha Lee, *Promoting Human Security: Ethical, Normative and Educational Frameworks in East Asia* (Paris and Seoul: UNESCO, 2004).

31) Stephen John Stedman, “Spoiler Problems in Peace Processes,” *International Security*, Vol.22, No.2, (Fall 1997), pp.5-53.

복구나 국가재건(state building)과 치안유지 등을 위한 공병, 경찰, 민사작전부대, 국제구호단체들의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이다.

## 2) 유엔 PKO의 변천과정<sup>32)</sup>

전통적으로 유엔 PKO는 비강제성, 제한적인 무장, 중립성, 당사자동의(주둔하게 될 국가의 허가) 및 자발적 참여라는 원칙에 의거하여 경계가 분명한 분쟁 당사자 간 완충지대 및 휴전선 정찰에서 시작하였다.<sup>33)</sup> 그러나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성격은 양적·질적으로 크게 변화하였다. 1948년 UNTSO가 설치된 이래 1988년까지 40년 동안 15개의 PKO가 진행되었던 반면, 탈냉전시대가 도래한 이후 지난 18년 동안에는 무려 46개의 활동이 이루어졌다.<sup>34)</sup> 또한 PKO의 내용도 1990년대에 들어서서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활동으로 발전하였는데, 그 업무의 특징에 따라 유엔 PKO를 크게 3단계의 세대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선 ‘제 1세대 평화유지활동,’ 즉 전통적인 평화유지활동은 냉전기의 유엔 PKO를 지칭하며 국가 간 평화 유지를 위한 활동이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1948년부터 1980년대 후반 동서냉전이 해체되기까지 진행된 당시 평화유지활동은 정전 및 평화협정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감시활동이 대부분이었고,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성격을 고수했다.<sup>35)</sup> 즉, 분쟁지역에서 최소한 군사적 충돌만이라도 중지시킴으로써 평화창설의 환경을 조성(peacemaking)을 돕는다는 취지하에 분쟁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 의해 평화적인 방식 혹은 제한적인 군사적 성격의 활동을 통해 폭력을 예방, 중재, 해결하려는 전통적 평화유지활동을 일컫는다. 따라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직된 군대뿐 아니라, 경찰, 유엔종사자들 및 민간인들에 의해 행해지는 정전 감시나 외국군 철수 감시 및 분쟁

32) 이 장의 PKO 관련 부분은 이신화, 상동, 2004를 참조함.

33) Paul Diehl, *International Peacekeeping*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4).

34) 유엔평화유지활동 사례에 관해서는 DPKO 홈페이지 참고 <http://www.un.org/Depts/dpko/dpko/bnote.htm>; 1946년 이래 국제사회에서 발생한 분쟁 수는 250건을 상회한다. 분쟁사례에 대한 정리는 읊살라대학교 분쟁 데이터 프로그램(Uppsala Conflict Data Program) 참고. [http://www.pcr.uu.se/publications/UCDP\\_pub/Conflict\\_List\\_1946-2005.pdf](http://www.pcr.uu.se/publications/UCDP_pub/Conflict_List_1946-2005.pdf).

35) 이신화, 상동

당사자들의 분리 및 적대 세력 간 완충지대 구축 등이 주요 임무였다.

냉전기 동안 이루어진 15개의 PKO 대부분이 이러한 전통적 평화유지활동이었는데, 최초의 평화유지활동인 UNTSO (1948년-현재), 최초의 군사수준의 활동인 수에즈 운하지역의 제 1차 유엔긴급군(United Nations Emergency Force: UNEF I, 1956-1967), 유엔 인도 파키스탄 군사감시단(United Nations Military Observer Group in India and Pakistan: UNMOGIP, 1949-현재), 유엔 키프로스 평화유지군(United Nations Peacekeeping Force in Cyprus: UNFICYP, 1964-현재), 중동지역의 유엔분리감시단(United Nations Disengagement Observer Force: UNDOF, 1974-현재), 유엔레바논잠정군(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UNIFIL, 1978-현재)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sup>36)</sup> 이러한 제1세대 PKO 활동은 동-서 대립으로 안전보장이사회의 기능이 번번이 마비되어 집단적·조직적으로 국제안전보장 활동을 수행하기 힘들었던, 소위 ‘유엔의 암흑기’라고도 불리던 냉전기 동안 국제분쟁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sup>37)</sup>

‘제2세대 평화유지활동’은 다차원적 평화유지활동으로 냉전종식과 더불어 양극체제가 다극적 국제질서로 재편되면서 유엔과 지역기구의 역할이 증대되던 시기에 이루어졌다. 제1세대 활동이 국가 간 분쟁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었던 반면 제2세대 활동은 당시 급증하기 시작한 국가 내 분쟁의 해결을 목표로 하였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동서 이데올로기 갈등이 해소되면서 그동안 억눌려있었던 인종, 종교, 민족자결 등 국가 내부의 문제들이 불거져 수많은 분쟁(내전)들이 속출하였고, 대량학살, 인종청소, 대량난민 문제가 발생하는 등 새로운 양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결국 국가 간 분쟁을 주로 다루던 종래의 전통적인 PKO 임무만으로 새로운 문제들을 다루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평화유지, 군비축소, 인도적 지원, 난민구호, 선거감시, 평화협정이행 감시

36) 이 시기에 시작된 유엔 PKO는 대부분 국가 간 분쟁 해결이 주목적이었으며, 도미니카공화국(DOMREP, 1965-1966)과 콩고(ONUC, 1960-1964)에서 이루어졌던 두 활동만이 국가 내 분쟁해결과 안정을 위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한편, UNFICYP의 경우 사이프러스에 있는 내전과 관련 있는 PKO이었지만, 1974년 이후 사이프러스와 터키 사이의 국가 간 분쟁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37) Paul Diehl, 상동.

등의 활동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이른바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평화유지활동을 표방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유엔이 예방외교와 평화강제 등 안보와 평화유지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 그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PKO의 임무를 확대하였다.

또한 심각한 내전은 한 국가 내부가 초토화되고 이를 재건할 적합한 내부 행위자가 부재하다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점차 전쟁의 종결과 평화유지로부터 한 단계 더 나아간 평화재건(peacebuilding)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이러한 변화에 부합하여) 평화유지활동의 구성원과 그 활동범위가 다양화되었다. 정전 상태를 감독하는 비교적 단순한 역할을 수행했던 제1세대 평화유지군과 달리 제2세대 평화유지군은 민간인 및 난민 보호, 군사 무장해제, 무기 감시, 지뢰 철거, 경찰 교육, 선거 감시 등 활동의 범위가 포괄적인 특징을 보인다. 또한, 국가 내에 사회, 경제, 정치적 제반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에 따라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민간 인력의 확충이 이루어졌다.<sup>38)</sup>

이렇듯 새로운 PKO 활동양상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유엔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주선단(United Nations Good Offices Mission in Afghanistan and Pakistan: UNGOMAP, 1988-1990)이 창설되면서부터인데, 이후 아프리카, 유럽, 남아메리카 지역에 다수의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었다. 1991년 유엔본부에 평화유지활동부서인 DPKO가 설립된 것도 효과적으로 시대적 변화와 평화유지 속성의 복잡한 변화에 대처하기 위함이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PKO 활동으로는 평화협정이행을 감시하는 앙골라(United Nations Angola Verification Mission: UNAVEMI, 1989-1997),<sup>39)</sup> 선거거나 민주화과정 및 무장해제를 지원하는 나미비아(United Nations Transition Assistance Group: UNTAG, 1989-1990), 서부사하라(United Nations Mission for the Referendum in Western Sahara: MINURSO, 1991-현재), 캄보디아(United Nations Transitional Authority in Cambodia: UNTAC, 1992-1993), 유엔 모잠비크활동(United Nations Operation in Mozambique: ONUMOZ, 1992-1994), 아이티(United Nations Mission in Haiti: UNMIH, 1993-1996),

38) Michael Doyle and Nicholas Sambanis, 상동, p.11

39) 평화협정이행감시를 목적으로 설립된 UNAVEM 활동은 UNAVEM I (1989-1991), UNAVEM II (1991-1995), UNAVEM III (1995-1997)로 나누어진다.

시에라리온(United Nations Mission in Sierra Leone: UNAMSIL, 1999-현재) 및 구호활동을 지원하는 보스니아(United Nations Protection Force: UNPROFOR, 1992-1995)와 마케도니아(United Nations Preventive Deployment Force: UNPREDEP, 1995-1999) 등이 있다.

또한 PKO 참여자의 다변화도 이 시기의 주요한 특징인데, 유엔뿐만 아니라 북대서양 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와 같은 지역기구, 국제금융기구, 각종 민간구호단체(NGO) 등이 활발하게 PKO에 참여하게 되었다.<sup>40)</sup> 일례로 시에라리온의 내전사태 수습을 위해 시작되었던 PKO인 유엔 시에라리온 지원단(UNAMSIL, 1998-1999)은 전통적인 평화유지임무만을 수행하고자 한 유엔 PKO의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평화유지군들이 포로가 되는 등 실패로 끝난 반면, 유엔전문기구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sup>41)</sup> 서아프리카 경제연합(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ECOWAS) 등 국제기구와 지역기구의 협력이 시에라리온의 분쟁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제2세대 PKO의 증가로 유엔의 국제분쟁 해결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대가 커지기 시작하였고, 부트로스-갈리 전 유엔 사무총장에 의해 평화유지활동의 개념도 보다 광범위하게 정의되었다. 물론 제2세대 PKO는 탈냉전시대 PKO의 주요 양상이지만, 제 1세대에도 이러한 특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1960년 시작된 유엔콩고긴급군(United Nations Operation in the Congo: ONUC)은 군사적 임무뿐 아니라 2,000여명의 민간인 평화유지요원들을 파견하여 콩고의 사회적 인프라구축 및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였다.<sup>42)</sup>

마지막으로 ‘제3세대 평화유지활동’의 경우, 기본적인 내용이나 성격에 있어서는 탈냉전기의 확대된 다차원적인 평화유지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제 2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40) United Nations, *The Blue Helmets: A Review of United Nations Peace-keeping*, 3rd edition, (New York: United Nations, 1996).

41) AU는 1963년 아프리카 38개 신생독립국들이 결성한 지역기구인 아프리카통일기구(OAU)가 2002년 개명된 것이다.

42) Thomas G. Weiss, David P. Forsythe, Roger A. Coate, op. cit. “The Rebirth of Peacekeeping,” Chapter 2, p. 72

그러나 그 활동의 성격과 목적에 있어 평화강제(peace enforcement)의 임무를 한층 강조한다는 것은, 종래의 당사자 동의나 경무장, 자기방위 등 PKO의 기본 원칙을 넘어 헌장 제 7장에 의거한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평화강제는 평화유지군이 분쟁 당사자들 간에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어떤 정파든 유엔의 임무수행을 방해하는 집단에 대해 응징하는 저강도 차원의 분쟁관리활동으로, 군사력을 이용한 조직적 전쟁차원의 강제와는 다르다.<sup>43)</sup> 특히 이러한 성격의 개입에 있어서는 경찰인력의 업무가 대폭 확대되는데, 이들은 주로 고문, 감시자, 교관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sup>44)</sup> 한편, 이 세대의 PKO는 군사 작전이 종료된 이후에 제반 행정업무와 안전을 담당할 인력 지원을 통하여 시민사회의 역량을 끌어올림으로써 분쟁이 부재한 장기적 민주국가를 건설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5년 12월에 설립된 유엔 평화재건위원회(UN Peacebuilding Commission)는 분쟁 이후에 지속적인 평화로의 전환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부서로써, 주로 군사작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존의 DPKO와 차별성 있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sup>45)</sup>

제 3세대 활동은 그 목표에 저강도 수준의 군사 활동과 더불어 인도적 구호활동의 보호, 휴전협정의 강제부과, 그리고 실패국가(failed state) 및 신생국가의 재건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가의 기본적 기능을 떠맡는 활동과 휴전협정의 강제를 위한 임무도 속해 있다. 제 2세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위자가 다양화됨에 따라 행위자들 간 이해조정문제도 주요 이슈로 부상하게 되었다. 동티모르 분쟁에 개입하여 선거감시 및 국가재건 등을 지원한 유엔동티모르지원단(United Nations Mission of Support in East Timor: UNMISET, 1999-2002)은 제 3세대 활동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 임무는 전통적인 평화유지활동처럼 소극적인 현상유지에 머물지 않고 동티모르 독립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유엔과도행정기구를 통해 동티모르가 완전히 독립할 때까지 민주정부수립 및 사회 인프라 구축 등을 수행하였다.<sup>46)</sup> 즉, 평화유지뿐 아니라 평

43) 김열수, 「국제제거를 통한 분쟁관리: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PKO)」 (서울: 오름, 2000), p. 151

44) William Lewis, Edward Marks and Robert Perito, "Enhancing International Civilian Police in Peace Operations," *USIP Special Report*,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2002), p. 3

45) <http://www.un.org/peace/peacebuilding/>

46) 동티모르 독립과정에서의 유엔 PKO를 예방외교의 성공적인 예로 보기도 한다.

화재건에도 적극 개입한 것이다.<sup>47)</sup> 코소보 분쟁에 개입하여 난민의 무사귀환과 코소보 치안확보 등을 임무로 하고 있는 코소보임시행정임무(United Nations Mission in Kosovo: UNMIK, 1999-현재) 역시 전통적인 PKO 임무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제3세대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요약하면, 탈냉전기 확대된 새로운 성격의 분쟁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제2세대와 제3세대 PKO는 주권국가 내정불간섭 원칙을 넘어 인권보호를 우선시하고, 정전감시만이 아니라 갈등의 근본원인 해결과 안정화의 기반구축을 위한 국가건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유엔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유지활동의 진화와 증가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국내 분쟁에 대응하기에는 유엔의 자원과 그 회원국들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평화유지활동은 공공재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인적 피해, 국내여론, 피개입국과의 관계악화 등과 같은 위험부담 때문에 군사적, 정치적, 재정적 지원을 꺼리기 때문이다.<sup>48)</sup> 이제까지 수행된 총 61개의 유엔 PKO 임무 가운데, 적극적인 분

47) 한편, 탈냉전시대 다양해진 유엔 PKO를 이해하는 유형으로 마이클 도일과 니콜라스 삼바니스(Michael Doyle and Nicholas Sambanis)는 크게 4개의 구분을 제시했다. 첫째, 군대나 시민 옵서버들이 정전을 감시하도록 하는 ‘감시와 옵서버’(monitoring and observer)의 역할로, 대개의 경우 이러한 옵서버 임무에는 비무장 민간감시단이 파견되며 그 규모가 작다. 둘째, 앞서 언급한 제1세대 평화유지활동인 ‘전통적 평화유지활동’은 단순한 옵서버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와 유엔관계자들을 파견해 분쟁 해결, 병력분리, 무장해제, 완충지역 등을 수행하는 역할이 있다. 전통적인 평화유지임무는 옵서버 임무보다는 규모가 크고 경무장한 평화유지군이 파견되어 자기방어를 위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 셋째, 전통적 평화유지 활동뿐 아니라 선거감시, 경찰력 강화훈련, 경제회생, 인권보호, 인도적 지원, 필요시 전후 사회통치 등을 아우르는 다면적 평화유지활동이 있다. 이러한 제 2세대 평화유지활동에 속하는 임무수행을 위해 대규모 민간 인력이 파견되곤 한다. 넷째, 유엔콩고활동(ONUC, 1960-64)처럼 파견된 지역의 공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동의에 기초하지 않고 전개되는 평화강제 역할이 있다. 첫 세 가지 임무가 유엔헌장 제 6장에 기초하여 분쟁당사자들이나 관련 국가들의 동의나 합의가 있어야만 수행 가능한 반면, 평화강제임무는 평화란 지켜지기에 앞서 만들어져야 하거나 강제되어야 한다는 원칙하에 유엔헌장 제 7장에 근거하여 분쟁당사자들의 동의없이도 개입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이때 파견되는 평화유지군은 규모가 더 크고 무장도 잘 되어 있으며 무력에 의해서라도 평화를 구현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Michael Doyle and Nicholas Sambanis, “International Peacebuilding: A Theoretical and Quantitative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2 (2000), pp. 779-801.

48) Ramesh Thakur, *The United Nations, Peace and Secur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 38; Hirofumi Shimizu and Todd Sandler, “Peacekeeping and Burden-Sharing, 1994-2000,”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9, No. 6.

쟁해결이나 평화재건에 관여한 경우는 전체의 1/3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정전감시(monitoring ceasefire)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러한 상황을 잘 대변해준다.<sup>49)</sup>

한편, 유엔의 활동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분쟁해결에 기여하지도 못하다는 비판과 함께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을뿐 더러 PKO로 인한 ‘예기치 못한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도 문제시되고 있다. 유엔에 의해 파견된 인력들이 분쟁 당사자들의 공격목표가 되어 집단적으로 희생을 당하거나, 반대로 평화유지인력이 난민캠프의 여성과 아동에 대한 학대 및 성폭력과 같은 비인도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본연의 임무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평화유지활동의 목적과 의의에 타격을 주고 있다.<sup>50)</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 분쟁 지역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조성 및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온 평화유지활동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기는 어렵다.<sup>51)</sup> 비록 평화유지활동이 유엔헌장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지는 않지만, 창설 이후 국가 간 분쟁중재, 내전과 인도적 위기에 대한 개입 등을 통해 확산방지와 평화회복을 위한 방안마련에 공헌해왔다. PKO는 또한 특정 국가를 침략자로 지목하거나 특정 지역에 대한 군사적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집단안보보다 회원국 간 합의달성이 용이하다.<sup>52)</sup> 특히 실패국가 혹은 불량국가(rouge state) 내부에서 심각한 유혈 분쟁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민주주의적 가치가 확립된 국가 구조아래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평화유지활동의 취지와 그에 준한 활동들은 지속적인 유엔 개입의 합법성과 평화유지활동 존립의 의의를 제공해 왔다.<sup>53)</sup>

또한 유엔 전 사무총장 코피 아난(Kofi Annan)은, “우리의 임무는 개입하는 것이다.

(November 2002), pp. 651-668.

49) Michael Doyle and Nicholas Sambanis, *Making War and Building Peace: United Nations Peace Operations*, (Oxfor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pp.76-81.

50) Shin-wha Lee, "Unintended Humanitarian Consequences," in Ramesh Thakur, Chiyuki Aoi, and Cedric de Coning eds.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Peacekeeping Operations*, (Tokyo: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2007), Chapter 6.

51) 이신화, 상동.

52) Paul F. Diehl, "Peacekeeping Operations and the Quest for Peac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03, No. 3. (Autumn, 1988), pp. 485-507.

53) ICISS, 상동.

그것이 가능한가의 여부에 상관없이, 분쟁을 예방하고, 중단시키고,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봉쇄하는 것이다”라고 유엔의 역할을 규정한 바 있다.<sup>54)</sup> 더욱이 그간 유엔이 펼쳐 온 평화유지활동 중에는 그 결과가 성공적인 사례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의 평화유지활동을 보완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분쟁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

유엔 PKO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도 진행되고 있다. 1992년 부트로스 갈리 당시 사무총장의 □평화를 위한 의제□에서 분쟁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 르완다에서 발생한 대량학살이 유엔의 개입 지연 때문에 악화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사전에 여단 규모의 상비군을 훈련시켜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투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상비군체제(UN Standby Arrangement System: UNSAS)를 구축하였다. UNSAS는 부대규모, 병력수, 반응시간, 제한사항 등을 유엔에 통보하는 1단계, 부대편성, 장비종류, 편제장비수준, 파견요원에 관한 개인별 자료 등을 유엔에 제출하는 2단계, 유엔과 참여국 정부간에 2단계 제출자료를 근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3단계로 구분된다.<sup>55)</sup>

UNSAS는 르완다와 같은 참사의 재발을 막는 실질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었지만, 아직 참여국들의 병력준비가 미흡하고 상황발생시 신속한 부대전개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할 새로운 개념개발과 체제구축이 요구되었는데, 이 문제와 더불어 전반적인 PKO 개혁노력의 일환으로 2000년 4월 □유엔평화활동에 관한 패널보고서□(Report of the Panel on United Nations Peace Operations, 일명 브라히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sup>56)</sup> 사무국 내 DPKO조직을 강화할 것과 함께 UNSAS를 개선한 ‘평화유지군의 신속배치단계(Rapid Deployment Level: RDL)’와 전략예비대 설치 등을 권고함으로써 PKO 파병의 신속성과 기동성을 강조하고 있다.<sup>57)</sup> 2006년 말 현재

54) Kofi Annan, “Reflection Intervention,” Ditchley Park, UK, June 26, 1998, in Kofi Annan, *The Question of Intervention* (New York: United Nations, 1999), p. 4

55) UN DPKO, “Member States in the UNSAS,” [http://www.un.org/Depts/dpko/milad/figs2/unsas\\_files/status\\_report/statusreport15april05.pdf](http://www.un.org/Depts/dpko/milad/figs2/unsas_files/status_report/statusreport15april05.pdf); 고성윤, 김열수 외, □유엔 평화활동 지역센터 구축방안 기초연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 보고서 06-1, 2007년 3월.

56) 이 보고서는 알제리 외무장관을 역임한 라크다 브라히미(Lakhdar Brahimi) 등 10인으로 구성된 유엔 PKO 패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브라히미 보고서’라고도 불린다.

57) 브라히미 보고서의 원 제목은 “Report of the Panel on United Nations Peace Operations”이다. 브

UNSAS에 참여하는 국가 수는 전체 유엔회원국 192개 중 87개에 이르고 있지만, 유엔은 보다 많은 국가들의 적극적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sup>58)</sup> 2007년 1월 반기문 사무총장 취임 이후에도 평화유지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반 총장은 자신의 최초 유엔개혁조치로서 비대해진 평화유지국을 업무별로 2개의 부서, 즉 기존의 DPKO와 현장지원국(Department of Field Support)으로 나누는 안을 총회에서 통과시켰다.<sup>59)</sup>

<표 1> 지역별 유엔 PKO 군병력(military personnel) 참여현황

(2007년 8월 31일 현재)

남아시아/중 양아시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유 럽	동아시아/ 태평양	중남미	북아프리카/ 중동	북 미
27,267	13,390	10,597	8,356	6041	5,616	25
38.2%	18.8%	14.9%	11.6%	8.5%	7.9%	0.04%

(총 71,292 명)

자료출처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keeping, "Monthly Summary of Contributors of Military and Civilian Police Personnel," <<http://www.un.org/Depts/dpko/dpko/contributors/>>.

요약하면, 평화유지활동은 국제정치 및 세계분쟁양상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여왔고, 이러한 유엔 PKO의 성격 변화와 맞물려 전투부대 위주의 평화유지군(PKF)에 민간 인력들의 참여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인력의 역할 또한 확대되고 있다. 경찰인력은 1960년대부터 평화유지활동에 파견되어왔으나, 당시의 업무는 감시와 보고 등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초부터 이들의 업무가 교육, 감독, 선도 등의 기능까지 확대되었으며, 이를 통해 평화가 재건된 국가 내의 법질서 회복과 개선을 돕고 있다.<sup>60)</sup>

라히미 보고서의 전문은 웹사이트 참고 [http://www.un.org/peace/reports/peace\\_operations/](http://www.un.org/peace/reports/peace_operations/)

58) "United Nations Standby Arrangement System," [http://www.un.org/Depts/dpko/milad/fgs2/unsas\\_files/sba.htm](http://www.un.org/Depts/dpko/milad/fgs2/unsas_files/sba.htm).

59) General Assembly GA/10602, "General Assembly establishes department of field Support as it adopts Fifth Committee recommendations on major peacekeeping overhaul," June 27, 2007, <http://www.un.org/News/Press/docs/2007/ga10602.doc.htm>.

또한 최근 평화유지활동의 특징으로 주목할 것은 분쟁당사국과 인접한 지역기구나 해당 지역에 깊은 이해관계를 지닌 국가 간 동맹이 중심이 되는 비유엔(non-UN) 평화유지활동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추세는 2006년 10월말 현재 유엔 평화유지병력(military personnel)의 수가 총 72,488명인데 비해 비유엔 평화유지병력이 74,270명인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인력규모 상 상위 20개 평화유지활동 중 10개 작전이 비유엔 활동이고, 특히 이 중 6개의 작전이 10위권 안에 있다는 것으로 보아, 비유엔 활동의 업무량과 범위를 추측할 수 있다.<sup>61)</sup>

이에 더해, 비유엔 평화유지활동은 제 2세대 및 제 3세대 평화유지활동의 일환으로써 전개되었으며, 유엔 못지않은 다양한 인력과 업무를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탈냉전기 전 세계적으로 국가 내 분쟁이 확대됨에 따라 유엔의 활동을 보완할 다른 행위자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이미 유엔 현장 8장은 “지역적 관리(Regional Arrangement)”라는 제목으로 지역 단위의 개입을 위한 유엔과의 협력과정을 규명하고 있다.<sup>62)</sup> 또한 1992년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부트로스 부트로스 갈리(Boutros Boutros-Ghali)는 그의 보고서 □평화를 위한 의제□를 통하여 지역기구의 유엔에 대한 협력을 촉구한 바 있다.<sup>63)</sup> 이렇듯 비유엔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면서 유엔이 다른 국제기구들이나 지역기구들과 협력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소위 ‘혼합미션’(hybrid operation)이 활발해졌다. 2006년 이래 콩고, 수단 다르푸르, 동티모르, 레바논 등에서의 유엔 PKO는 이러한 혼합미션이 이루어진 대표적인 예이다.

60) UN DPKO, <http://www.un.org/Depts/dpko/police/index.shtml>

61) Cente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nual Review of Global Peace Operations 2007*, February 2007, p.3, [http://www.cic.nyu.edu/internationalsecurity/docs/peacekeeping\\_BRIEFINGPAPER.pdf](http://www.cic.nyu.edu/internationalsecurity/docs/peacekeeping_BRIEFINGPAPER.pdf)

62)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Chapter 8,” <http://www.un.org/aboutun/charter/>.

63) <http://www.un.org/Docs/SG/agpeace.htm>.

### III. 유엔경찰의 개념과 경찰의 PKO 활동

#### 1. 유엔경찰이란 무엇인가?

유엔경찰(United Nations Police 또는 UNCIVPOL)은 1960년대 아프리카 콩고의 평화유지활동(ONUC, 1960-64)에 처음으로 파견되었다. 또한 1964년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는 사이프러스 PKO(UNFICYP)에는 1970년대 이래 30년 이상 유엔경찰이 참여하고 있다.<sup>64)</sup>

유엔경찰의 목적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공동체 내에서 범죄발생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유엔경찰의 임무는 감시(monitoring), 관찰(observing)과 보고(reporting)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부터 자문(advisory), 멘토링(mentoring), 훈련(training) 기능을 보강하여 유엔평화활동(Peace Operation: P O)<sup>65)</sup>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임무수행 경험과 평화와 안보에 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공동체 내에서 법이 준수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66)</sup>

보다 구체적으로 유엔경찰의 역할은 1988년 나미비아 유엔임무(UNTAG, 1989-90년)를 시작으로 크게 확대되었다. UNTAG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지역을 복구하여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회복시키는데 활약하였고, 이를 계기로 유엔경찰은 평화유지활동과 현장임무(UN Field Missions)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sup>67)</sup> 유엔경찰은 2006년 한 해 동안 그 파견 수가 30%를 증가하는 등 그 활동규모

64) 현재 사이프러스 PKO 임무에 참여하고 있는 경찰파견국은 아르헨티나, 호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엘살바도르, 인도,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이다. UN Peacekeeping, Cyprus - UNFICYP - Facts and Figures, <http://www.un.org/Depts/dpko/missions/unficy/facts.html>.

65) 탈냉전 이후 평화유지활동이 단순한 평화유지만이 아닌 전후평화구축, 평화강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면서 유엔 종사자들이나 학자들 중 PKO 대신 포괄적인 PO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66) UN DPKO, Peacekeeping Best Practices Unit, "Police, Judiciary and Corrections Aspects of Rule of Law," *Handbook on United Nations: Multidimensional Peacekeeping Operations*, 2003년 12월.

도 급증하고 있다.<sup>68)</sup>

2007년 5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총 20개의 PKO 활동 중 13개의 임무(UNMIK, UNMIT, UNIOSIL, UNFICYP, ONUB, MINURSO, UNMIS, UNAMA, UNMIL, UMOMIG, ONUCI, MONUC, MINUSTAH)에 참여하고 있다. 유엔경찰은 93개 국적의 9,565명의 경찰요원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중 35%에 해당하는 3,300여명이 아프리카 내전 및 전후복구사업을 위해 33개의 아프리카 지역에 파견되어 있다.<sup>69)</sup>

경찰 PKO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PKO 임무 확장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다양화’에 기인한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찰 PKO 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아지게 된 것은 분쟁원인과 그 양태가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평화구조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력갈등에 개입하는 행위자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즉 전통적인 PKO 활동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전이나 평화협정의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데 제한된 것이었다면, 반복해서 일어나는 폭력갈등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무장해제, 민주적 선거 실시 및 정권안정화 보조, 난민들의 정착 보조 및 사회경제적 기반구축과 같은 영역까지 포괄해야 할 필요성이 점차 인식된 것이다. 이는 군인 중심의 PKO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였기 때문에 경찰, 민간옵서버, NGO, 국제기구 소속 전문가 등이 PKO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특히 경찰 PKO의 경우 순찰을 비롯한 치안유지활동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당사국의 경찰에게 자문 및 훈련을 제공하고 보편적 인권기준을 전수함으로써 분쟁국이 평화를 위한 자생적인 기반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찰 PKO는 유엔이 강조하는 평화재건/구축(peace building)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sup>70)</sup>

한편 유엔경찰을 총괄하는 유엔경찰부서(UN Police Division)는 2000년 10월에 유엔평화유지활동부서(UN Peacekeeping Operations Division)의 소속으로 배치되었으며, 각국의 경험 많은 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유엔 PKO의 유엔경찰관 업무를 기획하고 지

67) UN Peacekeeping, “The Growing Role of UN Police,” <http://www.un.org/Depts/dpko/dpko/civpol/2.htm>.

68) UN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DPKO), *UN Police Magazine*, 2nd ed. June 2007.

69) DPKO, *UN Police Magazine*, July 2007, 상동.

70) Mark Kroeker, “Blue Beret Policing: To Protect and Serve Abroad,” *UN Police Magazine*, December 2006.

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유엔경찰부서의 목적은 i) 유엔 PKO 중 경찰의 업무를 지원; ii) 유엔활동 중 경찰업무의 기획력 강화; iii) 해당지역 형법체계(경찰과 교정기관 포함)의 집행력과 효과성, 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원; iv) 기능적 경찰력을 신속하게 배치하는 능력 강화; v) 현장에서 대표성의 질적 개선에 있다.<sup>71)</sup>

유엔경찰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은 어느 지역에 어떤 임무를 가지고 파견되었는가에 따라 다르다. 지역경찰업무를 감시하는 정도로 제한되는 경우도 있으며, 상황이 좀 더 복잡할 경우에는 조언, 교육, 지방경찰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협조서비스 제공, 법의 강화(rule of law) 등을 포괄하는 일들을 수행한다.<sup>72)</sup> 이들의 역할을 7개로 정리하면, i) 평화유지의 기본 목적,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법과 질서 유지를 확보하기 위한 로컬 경찰 업무를 감독; ii) 난민, 유민들의 귀향길을 안전하고 질서정연하게 인도하며 전범과 사체의 교환을 감찰하고 국제 인도주의 법의 준수를 감시; iii) 관할구역의 행정을 보살피고, 지역 공동체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조정과 협상을 통하여 공동체간의 긴장 완화; iv) 선거과정에 있어 발생 가능한 위협이나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자유로운 선거가 치러지게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환경을 도모; v) 보편적인 경찰의 기준에 맞추어 지역 경찰 인력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vi)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UNHCR)이나 국제적십자(Red Cross) 등 인도주의적 구호 단체들의 노력을 보조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평화유지 업무 수행을 돕을 수 있다.<sup>73)</sup>

유엔경찰부서가 설립된 이래 유엔경찰의 역할은 더욱 활발하게 임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유엔코소보임시행정기구(UNMIK, 1999년-현재)는 국내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지역의 경찰 서비스 수준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코소보에 약 4,700명의 유엔경찰을 배치시켰다. 유엔코소보임시행정기구의 경찰임무는 유엔국제경찰임무로써는 최초로 법의 집행을 강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았다. 유엔의 노력으로 2002년에는 4,500명이 넘는 지역경찰요원들이 배출되었으며 이들은 현재 유엔코소보임시행정기구 경찰과 함께 현

71) UN Peacekeeping, UN Police Division, Coordination with Missions," <http://www.un.org/Depts/dpko/dpko/civpol/4.htm>.

72) UN Peacekeeping, UN Police Magazine, 2006, <http://www.un.org/Depts/dpko/dpko/civpol/civpoll.html>

73) Edmund G. Primosch, "The Roles of United Nations Civilian Police(UNCIVPOL) with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Th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43, No. 2. (April 1994), pp. 425-431.

장에서 활동하고 있다.<sup>74)</sup>

동티모르에서 수행중인 평화유지활동(UNMIT, 2006년-현재까지)에서 유엔경찰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와 해당 국가 내 전문적인 경찰서비스를 확립하고 교육을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중이다. UNMIT 이전에 동티모르에서 이루어졌던 유엔 PKO인 유엔동티모르과도행정기구(The United Nations Transitional Administration in East Timor: UNTAET, 1999-02년)와 유엔동티모르지원단(The United Nations Mission of Support in East Timor: UNMISSET, 2002-05년)에서도 유엔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했다. 2002년에는 2000명이 넘는 지역경찰관들이 공인자격을 취득하여 40개 이상의 국적을 지닌 유엔경찰들과 함께 배치되었었고, 2007년 7월 현재는 UNMIT 산하 유엔경찰의 경찰업무들이 점진적으로 동티모르국립경찰(Policia Nacional de Timor-Leste)에게 양도되어 국가의 기틀이 새롭게 수립되는 과정에 있다.<sup>75)</sup>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는 수행된 평화유지활동인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유엔경찰병력 훈련임무(United Nations Mission in Bosnia and Herzegovina: UNMIBH, 1995-2002년)에서는 1996년 1월부터 2002년 12월간의 임무를 완수할 때 국제경찰태스크포스(International Police Task Force: IPTF) 경찰관무관(police commissioner)이 유엔경찰업무를 관장하였다. IPTF는 지역경찰들의 주요 임무를 국가안보에서 개개인의 안보확립으로 대체하고, 경찰병력을 다양한 인종그룹들을 포괄하여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인력들로 재구성하였다. 총 1,400명 이상의 유엔경찰요원들이 인권조사, 지역경찰 감시 및 재건, 경찰업무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는 지침을 교육하고 발전시키는 등과 관련된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UNMIBH의 원조를 받아 설립된 두 개의 경찰학교에서 1,165명 이상의 사관생도들(이 중 400명은 여성)이 배출되었다. 2002년 말 UNMIBH의 임무가 종료된 후에는 유럽연합이 유엔경찰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sup>76)</sup>

74) The United Nations Interim Administration in Kosovo, "UNMIK At a Glance," <http://www.unmikonline.org/intro.htm>.

75) The United Nations Mission in East Timor, "Timor Leste - UNMIT - Background," <http://www.un.org/Depts/dpko/missions/unmit/background.html>

76) UNMIBH의 경찰과견국가는 아르헨티나, 호주, 방글라데시,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중국, 체코, 덴마크, 이집트, 에스토니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독일, 가나,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요르단, 케냐,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네팔,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파키스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네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태국, 터키, 튀니지,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바누아투 등 총 46개국이었다. United Nations Mission in Bosnia and Herzegovina, "Bosnia and Herzegovina - UNMIBH - Facts

<표 2> 유엔 PKO 임무의 경찰파견 현황 및 전망

(2007년 5월 현재)

유엔 평화활동 임무명 (국가/지역, 임무기간)	경찰 실제 파견 수	경찰 총 파견수(계획)
<b>유엔평화유지활동(PKO)</b>		
UNMIK(United Nations Interim Administration Mission in Kosovo), 코소보(1999년 6월-현재)	2,001명	2,065명
UNMIT(United Nations Integrated Mission in Timor-Leste), 동티모르(2006년 8월-현재)	1,641명	1,608명
UNFICYP(United Nations Peacekeeping Force in Cyprus), 사이프러스(1964년 3월-현재)	65명	69명
MINURSO(United Nations Mission for the Referendum in Western Sahara), 서부사하라(1991년 4월-현재)	6명	6명
UNMIS(United Nations Mission in the Sudan), 수단(2005년 3월-현재)	613명	715명
UNMIL(United Nations Mission in Liberia), 라이베리아(2003년 9월-현재)	1,202명	1,240명
UNOMIG(United Nations Observer Mission in Georgia), 조지아(1993년 8월-현재)	12명	20명
ONUCI(United Nations Operation in Côte d'Ivoire), 코트디부아르(2004년 4월-현재)	1,157명	1,200명
MONUC(United Nations Organization Miss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콩고(1999년 11월-현재)	1,033명	1,141명
MINUSTAH(United Nations Stabilization Mission in Haiti), 아이티(2004년 6월-현재)	1,793명	1,897명
<b>정치, 평화재건임무(political and peacebuilding mission)</b>		
UNAMA(United Nations Mission in Afghanistan), 아프가니스탄(2002년 3월-현재)	3명	4명
UNIOSIL(United Nations Integrated Office in Sierra Leone), 시에라리온(2006년 1월-현재)	28명	29명
ONUB/BINUB (United Nations Operation in Burundi*/United Nations Integrated Office in Burundi), 부룬디 (2004년 6월-2006년 12월/2007년 1월-현재)	11명	15명
<b>총 파견경찰수</b>	<b>9,565명</b>	<b>10,009명</b>

출처 : "UN Police Deployment," <http://www.un.org/Depts/dpko/police/map.pdf>

저자 주 :

i) 본 표의 유엔 평화활동임무별 파견경찰수와 총 파견경찰수는 UN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UN Police Magazine, June 2007의 "Actual/Projected Deployment of UN Police in Peacekeeping Missions,"를 토대로 저자가 작성한 것임.

ii) 유엔임무의 약자는 한국어로 다음과 같음.

- |                          |                          |
|--------------------------|--------------------------|
| UNMIK: 유엔 코소보행정기구        | UNMIT: 유엔 동티모르 합동임무단     |
| UNIOSIL: 유엔 시에라리온 통합 사무소 | UNFICYP: 유엔 키프로스 평화유지군   |
| ONUB: 유엔 부룬디 작전          | MINURSO: 서부 사하라 주민투표 감시단 |
| UNMIS: 수단유엔파견단           | UNAMA: 유엔아프칸지원단          |
| UNMIL: 유엔라이베리아 미션        | UNOMIG: 그루지야 유엔정전감시단     |
| ONUCI: 유엔 코트디부아르 미션      | MONUC: 콩고 유엔감시단          |
| MINUSTAH: 유엔아이티안정임무      |                          |

iii) \* ONUB는 유엔평화유지임무이었고, BINUB는 평화재건임무임.

iv) 2007년 5월말 현재 9,565명이었던 유엔경찰 수가 7월말 통계에 따르면 9,602명으로 늘어남. 그러나 이 업데이트 된 인원수와 관련한 통계는 최종 인원수만 나와 있고, 작전지역별론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포함시키지 않음.

and Figures," <http://www.un.org/Depts/dpko/missions/unmibh/facts.html>.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2007년 5월 현재 유엔 경찰은 약 70여개의 국가에서 파견된 경찰요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엔경찰의 파견은 2001년 9.11 사태 이후 잠시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4년부터 다시 세계 각 국에서 파견되는 경찰요원의 수치가 증가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대로 2007년 5월 현재 총 19개 유엔평화활동(16개의 PKO, 3개의 정치/평화재건임무) 중 13개 임무가 경찰인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93개국 9,565명의 경찰(2006년 대비 30%의 증가세)이 파견되어 있다.<sup>77)</sup> 전체 파견경찰 PKO의 절반 이상이 동티모르, 코소보, 아이티에 파견되어 있지만, 아프리카 내전지역으로 파견되고 있는 유엔경찰이 2006년 한 해 동안 2,300명에서 3,800명으로 늘어나는 등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코트디부아르, 콩고, 라이베리아, 수단에 유엔군 병력과 더불어 경찰들이 집중되어 있다. 반면, 아프가니스탄에 파견되어있는 3명의 유엔경찰을 제외하고는 중동에 파견된 유엔경찰은 현재까지 없다.<sup>78)</sup> 또한 주목할 것은, 경찰 수가 군인 수보다 더 많은 PKO 임무(예: 아이티의 UNTMIH), PKO 참여요원 전원이 경찰로 이루어진 경우(예: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의 UNMIBH, 아이티의 MIPONUH, 크로아티아의 UNPSG, 코소보의 UNMIK)도 있다는 점이다.<sup>79)</sup>

한편, 유엔평화유지국(DPKO)의 가장 업데이트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8월말 현재, 총 9,380명의 경찰이 유엔 PKO에 참여하고 있고, 2,656명의 민간요원이 옵서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표 3> 및 <표 4> 참조). 이렇게 3개월을 전후한 파견인원 수가 200여명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특정 임무가 끝나거나 그 임무에 파견된 파견국의 임

77) 유엔 및 비유엔 PKO 임무에 있어 지역별 경찰파견 현황은 2006년 10월 31일 현재 다음과 같다. 2007년 5월 유엔 임무에 파견된 경찰수가 증가한 것을 고려할 때, 이 유엔 및 비유엔 PKO 임무에 파견된 수도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Cente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상동.

지 역	유엔 및 비유엔 PKO 임무에 파견된 경찰 수	전체 대비 비율(%)
아프리카	5,383명	50%
유럽	2,163명	21%
중남미	1,682명	16%
동아시아/태평양연안	1,228명	12%
중동	88명	1%
중앙아시아/남아시아	-	-
북미	-	-
<b>전체</b>	<b>10,544명</b>	

78) Cente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상동.

79) 허남성, 김열수, 최종철, □한국군의 국제적 역할 확대방안: 평화유지 활동을 중심으로□, 2002년도 국회 국방위원회 정책연구 용역과제 보고서, 2002년.

무시기가 끝나면서 인원이동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양적 증가추세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지역별 유엔 경찰임무 참여현황

(2007년 8월 31일 현재)

남아시아/중 양아시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유럽	동아시아/ 태평양	중남미	북아프리카/ 중동	북미
2,116	2,306	1,899	1,575	133	998	353
22.5%	24.6%	20.2%	16.8%	1.4%	10.6%	3.7%

(총 9,380명)

출처: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keeping, "Monthly Summary of Contributors of Military and Civilian Police Personnel," <<http://www.un.org/Depts/dpko/dpko/contributors/>>, 2007년 8월 31일 현재.

<표 4> 지역별 유엔 PKO 감시임무(observer) 참여현황

(2007년 8월 31일 현재)

남아시아/중 양아시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유럽	동아시아/ 태평양	중남미	북아프리카/ 중동	북미
333	632	687	371	315	263	55
12.5%	23.7%	25.8%	13.9%	11.8%	9.9%	2.0%

(총 2,656명)

출처: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keeping, "Monthly Summary of Contributors of Military and Civilian Police Personnel," <<http://www.un.org/Depts/dpko/dpko/contributors/>>, 2007년 8월 31일 현재.

결론적으로 유엔평화유지군은 병력(Force), 경찰(Police), 민간(Civilian Staff)으로 나누어진다. 평화유지군은 유엔 PKO 차원에서 총회의 결의에 의해 구성되는 군대로, 유엔 사무총장이 사령관을 임명하고 유엔이 경비를 부담한다. 이 때 국내 경찰 구조가 부재하거나 미약할 경우, 혹은 현지 정부의 능력이 취약할 경우, 유엔경찰은 군인들의 업무와는 별도로 치안 집행기능을 맡아 법질서 유지를 책임지게 된다. 특히 경찰인력은 분쟁 이후 평화적인 안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전통적인 군사인력보다 훨씬 효과적인데,

이는 작전상에 발생하는 불규칙적이고 비체계적인 위협을 대비하는 데 있어 경찰인력이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화유지활동에 대항하는 세력들은 종종 폭동을 일으키거나 민간인들을 위협하거나, 혹은 타인의 재산을 약탈하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경찰인력들은 능숙하게 대처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80)</sup>

## 2. 유엔경찰 파견국가 현황 및 평가

### 1) 유엔경찰 파견국가의 현황과 활동

유엔 PKO에 참가하는 경찰의 경우 군 병력과 달리 비교적 다양한 지역으로부터 파견되는데, 아프리카, 유럽, 중앙아시아/남아시아에서 전체 파견경찰의 1/4 가량을 각각 제공하고 있다. 비유엔 평화유지임무(non-UN missions)의 경우, 아프리카지역연합(AU)이 수단 다르푸르에 1,425명(여성경찰 234명 포함)을 증원·파견한 반면, 유럽연합(EU)은 200명 미만의 적은 규모의 경찰병력을 파견하였다.<sup>81)</sup>

2007년 7월 현재 가장 많은 유엔경찰을 파견한 상위 10개 국가는 파키스탄, 요르단, 방글라데시, 네팔, 세네갈, 인도, 나이지리아, 포르투갈, 필리핀, 미국 순이다(<표 5> 및 <별첨 1> 참조). 이렇듯 유엔경찰을 주로 파견하는 국가들은 선진국과 후진국(빈국)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우선 미국과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그리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상대적으로 경찰요원을 많이 보내는 이유는 국가적 위상에 부합하는 책임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경제대국인 독일 역시 유엔 창립 때부터 지속적으로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자청해온 국가인 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82)</sup> 특히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강대국들의 경우 국제질서유지를 위한 유엔 활동에 기여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획득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고자 하는 모습을 보인다. [Box 1]은 강대국들의 유

80) Peter Whelan, "Civilian police in peace support operations," *The Ploughshares Monitor*, (Winter 2005), Vol. 26, No. 4, <http://www.ploughshares.ca/libraries/monitor/mond05d.htm>

81) Cente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상동.

82) Cente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t New York University, *Annual Review of Global Peace Operations*, 2007, Briefing Paper, <[http://www.cic.nyu.edu/internationalsecurity/docs/peacekeeping\\_BRIEFINGPAPER.pdf](http://www.cic.nyu.edu/internationalsecurity/docs/peacekeeping_BRIEFINGPAPER.pdf)>.

엔경찰 파견의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과 중국의 참여를 정리하고 있다.

반면, 요르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 등 빈국이나 개도국의 파견 현황이 두드러지는 것은 충분한 재정적 지원과 쾌적한 생활조건에 기인한다. 특히 이에 따른 경제적 혜택은 파병인력에게 뿐 아니라 파견국가에게도 상당한 동기부여를 제공한다. 유엔은 모든 평화유지군에게 미화 1,028달러를 매달 지급하는데, 이는 후진국 국민들에게 있어 굉장히 큰 액수에 해당한다.<sup>83)</sup> 이에 더해 의복과 기자재 구입을 위한 보조금 68달러, 무기를 위한 5달러가 각 개인마다 추가로 지급되며, 전문가에게는 303달러가 더 주어진다.<sup>84)</sup>

아이티(Haiti)에서 평화유지군으로 근무한 네팔 국적의 청년 카날(Khanal)은 증언에 따르면, “네팔에서 우리가 번 돈으로는 생계를 이어나기 힘들며, 아이티에서 번 돈으로 우리 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낼 수도 있었다”라고 했다. 또한 아이티에서는 네팔에서와는 달리, 수영장과 비치에서의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었다고 회상한다.<sup>85)</sup> 또한 실명을 밝히기 꺼린 한 전역 군인은 “많은 이들이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평화유지군으로 6개월만 일하면, 10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금액보다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sup>86)</sup> 동티모르에 한국 상륙수부대의 헌병으로 6개월 근무한 김광희 역시 그곳에서 만난 유엔경찰들의 대부분이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지원한 후진국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그들에 따르면 파견지인 동티모르에서 1년간 근무하고 귀국하면 집과 기아(기아자동차)차를 살 수도 있으며 그것은 그 마을에서 최고의 부자를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sup>87)</sup>

그러나 재정적인 이유가 전부는 아니다. 방글라데시의 전역장군인 아크바르(Fazle Elahi Akbar)에 따르면, 평화유지활동으로 인해 국가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의 ‘좋은’ 이미지를 세계 각국에 전파하는 것 역시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참여를 권장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한다.<sup>88)</sup>

83) 2005년 세계은행의 조사를 기준으로, 네팔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GNI per capita)이 270달러이다.

84) “How Peacekeeping Works,” Special Reports, *BBC News* (2007/04/17) (검색일: 2007/08/07)

85) “UN Peacekeeping: Every Soldier’s Dream?,” *Reuters AlertNet*, (2007/04/23)

86) “Peacekeeping away from home,” *Nepal Times*, (2004/05/21-05/27)

87) 이 내용은 상륙수부대의 헌병으로 동티모르 북동쪽인 라오템(Lautem)지역에서 약 6개월간 (2000.10~2001.4) 근무한 김광희(현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재학)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작성된 것이다.

더욱이 유엔 역시 제3세계 국가들의 병력 참여를 권장하고, 이들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는데, 유엔 내 권력의 중심에 있는 선진국들이 방글라데시, 케냐, 네팔, 피지, 파키스탄, 가나와 같은 국가들의 참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sup>89)</sup>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캐나다인이나 소말리아에서의 미국인 사망 사건은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큼 큰 화제가 되었고, 선진국들 대부분은 이 일들을 계기로 평화유지군 참여를 꺼리며 제3세계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sup>90)</sup>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난한 국가들이 이들의 회유에 넘어가 평화유지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힘의 정치가 지배하는 국제관계에 있어 후진국인들의 죽음은 상대적으로 등한시 여기는 것이라는 ‘윤리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후진국인들의 PKO 참여가 점점 늘고 있다.

한편, 후진국들이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그 국가 내부에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들의 경우, 파견국가에서 부담하는 재정지원이 미비하고 파견 요원들에 대한 훈련 수준도 선진국의 경찰력에 비해 월등히 떨어지기 때문에, 양적인 문제를 상쇄할 만한 질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의 군병력이 국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파견국가 자국의 안보 상황이 불안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에 더해 선진국들은 유엔임무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후진국들을 독려하고, 이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기 위하여 이들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인권침해 상황을 묵고하는 경향이 있다.<sup>91)</sup>

요약하면, PKO 참여주체가 군인에 한정되지 않고 경찰, 일반 공무원, NGO 등 민간 요원을 포함시키는 추세가 확산되면서, 비군사요원들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한계점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전후 국가재건이나 질서회복 등에 있어 유엔경찰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임무수행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예를 들어, 평화유지활동에 있어 평화유지군이나 다국적군의 군사병력 주 임무가 순찰, 호송지원, 사건처리 등인 지역이 많은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지에 파견되어 있

88) Reuters AlertNet, 상동

89) *Nepal Times*, 상동

90) Linda Polman, "Blue Helmets as Cannon Fodder: Western nations shunning UN Peacekeeping," *Guardian*, (2004/02/17) (검색일: 2007/08/07)

91) *Nepal Times*, 상동

는 유엔경찰과의 공조 순찰 및 사건처리이다. 내전이 진행 중이거나 종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는 군인들의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종전이 되고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전투병 위주의 평화유지군의 활동은 크게 필요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나라를 재건하는 작업에는 필수적으로 현지인과의 소통이 중요한데, 군복과 실탄을 장전한 총을 가지고 다니는 유엔군은 단지 공포의 대상이 되기만 할 뿐이며, 현지인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경찰을 찾는 경우가 더 많다. 경찰은 자국에서도 기본적으로 민간인을 상대로 다양한 대민보호 및 봉사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현지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작전을 진행시킬 수 있다.

또한 유엔경찰은 현지인을 선발하여 경찰관후보로 두고, 이들을 교육하고 업무에 함께 투입시킴으로써 현지인들에게 지배자가 아닌 협력자의 인상을 줄 수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분쟁지역에서 여성의 인권이 비교적 남성보다 더욱 취약하다는 점을 가정할 때, 상대적으로 여성비율이 높은 유엔경찰은 그들의 인권보호나 생활과 관련하여 더욱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sup>92)</sup> 이러한 이유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유엔의 전반적인 활동에 관하여 주요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은 유엔 PKO에서 경찰병력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시스템을 구축, 발전해 오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더욱 견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유엔경찰의 대부분이 저개발 국가출신이고, 많은 경우 경제적인 이유로 지원하게 된 것으로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질을 갖추었는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더욱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에서 온 경찰들은 현지의 안보 상황이 자국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며, 그 결과 임무수행에도 열의를 보이지 않고 유엔군으로서의 사명감이나 자부심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도 있다.

아직 사회적 제반시설이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아프리카에서 무려 35%의 경찰인력이 파견된다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들은 그들의 능력과 실제경험을 활용함으로써 파견지역에 도움을 주는 한편, 유엔 관계자들과 생각을 교환하고 화합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자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참여는 국제적인 경찰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93)</sup>

92) 김광희씨와의 인터뷰, 상동.

93) 모하메드 알 하산(Mohammed Alhassan)은 아프리카 출신으로는 유엔경찰의 첫 번째 수장으로 서, 2007년 7월 현재 라이베리아에서 임시 경찰 감독관의 임무를 맡고 있다. 25년 이상의 경력을 바탕으로 그가 제시한 유엔경찰의 해결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UN Department of

### [Box 1: 미국과 중국의 평화유지경찰]

미국의 유엔경찰 파견현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국무부 내의 정치담당 차관(Secretary for Political Affairs) 소속 하에 있는 국제마약 및 사법담당국(Bureau for International Narcotics and Law Enforcement Affairs)의 하위 부서로서 국제시민경찰프로그램(International Civilian Police Program: CIVPOL)을 두어 관련된 사안을 다루고 있다. 미국 정부는 탈냉전 이후 평화유지/재건 활동에서 경찰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1994년 아이티 임무(MINUSTAH)에 50명의 경찰을 처음 파견하였다. 이후 CIVPOL 임무에 배치인력을 증가시켜, 2007년 7월 현재 280여명의 미국경찰관들이 유엔 PKO에 참가하고 있다.<sup>94)</sup>

CIVPOL은 단기적으로 국내법 집행과 강화문제를 다루면서 국제적 군사임무를 지원하는데 유용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지역 내 민주적 장치를 수립함으로써 시민질서를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되고 있다. 시민경찰 임무 배치는 백악관의 자문을 바탕으로 하는 연방정부, 국무부, 국방부의 다른 고위급기관의 차원에서 논의되어 결정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시민경찰을 관할하는 기관은 앞서 밝힌바와 같이 미 국무부이다.<sup>95)</sup>

중국의 경우, 최근 들어 유엔경찰을 포함한 평화유지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방침으로 입장을 선화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중국의 참여 증가는 중국인들이 참가하는 미션 지역뿐 아니라 유엔 안보리에서 혹은 다른 회원국들 사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인들이 평화유지단의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세계에 책임감 있는 국가로서의 중국 이미지를 고양시킬 수 있다고 분석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부상에 따른 중국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희석시키고, 보다 긍정적인 중국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대만과의 관계에 관련된 것인데, 세계로 하여금 ‘하나의 중국’을 인식하게 하여 대만의 독립 시도가 설자리를 잃도록 하는 전략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는 다른 국가에 대하여 중국 물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면,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인정하게끔 회유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계산이다.<sup>96)</sup>

또한 중국인민해방군(People's Liberation Army: PLA)과 중국인민경찰(People's Armed Police) 역시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따른 다양한 이득을 얻고 있다. 우선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참여는 이들의 현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훈련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평화유지활동을 통하여 중국 내에서 개발한 기자재와 전술들을 현지에서 실험할 수 있고, 분쟁 현장에 대한 직접적 경험을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션을 수행하는 다른 국가들의 역량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셋째, 중국 국내총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유엔 분담금도 증가시켜야 하는데, 인력들이 더 많이 참여할수록 유엔에 지급한 금액들을 그 만큼 더 많이 보상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sup>97)</sup> 이러한 인센티브는 중국으로 하여금 더욱 적극적으로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Peacekeeping, *UN Police Magazine*, DPI/2444 (2007년 5월)를 참조할 것.

94) U. S. Department of State, "United State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Police (CIVPOL) Missions," May 18, 2005, <http://www.state.gov/p/inl/rls/fs/47759.htm>; UN Department of Peacekeeping, *UN Police Magazine*, DPI/2444, 2007년 5월.

95) U.S. Department of State, 2005, 상동.

96) Drew Thompson, "Beijing's Participation in UN Peacekeeping Operations," *China Brief*, Volume 5, Issue 11, May 10, 2005, pp.7-10.

97) Thompson, 상동

<표 5> 전체 평화유지인력 및 평화유지경찰, 국가별 기여도

(2007년 7월말 기준)

평화유지인력기여도 (국가별)			평화유지경찰기여도 (국가별)		
2007년 7월 현재			2007년 7월 현재		
	국가명	인원수		국가명	인원수
1	파키스탄	10,723	1	파키스탄	916
2	방글라데시	9,696	2	요르단	911
3	인도	9,348	3	방글라데시	794
4	네팔	3,662	4	네팔	568
5	요르단	3,572	5	세네갈	502
6	가나	2,943	6	인도	492
7	우루과이	2,591	7	나이지리아	432
8	나이지리아	2,502	8	포르투갈	288
9	이태리	2,455	9	필리핀	282
10	세네갈	1,934	10	미국	281
11	프랑스	1,928	11	우크라이나	219
12	중국	1,830	12	말레이시아	218
13	에티오피아	1,827	13	터키	213
14	모로코	1,537	14	루마니아	203
15	베닌	1,314	15	중국	190
16	브라질	1,280	16	니제르	170
17	남아프리카	1,211	17	독일	161
18	독일	1,196	18	카메룬	151
19	스페인	1,187	19	폴란드	145
20	케냐	1,091	20	프랑스	139
21	인도네시아	1,070	21	가나	127
22	스리랑카	1,058	22	짐바브웨	119
23	폴란드	1,001	23	베닌	113
24	터키	966	24	부르키나파소	97
25	이집트	963	25	스리랑카	89
26	아르헨티나	895	26	감비아	83
27	말레이시아	671	27	말리	81
28	나미비아	650	28	스웨덴	76
29	필리핀	650	29	호주	75
30	니제르	581	30	러시아	71
31	우크라이나	545	31	영국	70
32	칠레	521	32	캐나다	70
33	튀니지	506	33	스페인	68
34	잠비아	481	34	케냐	66
35	볼리비아	456	35	기니	64
36	포르투갈	440	36	이집트	63
37	오스트리아	415	37	잠비아	60
38	대한민국	393	38	르완다	57
39	영국	371	39	우간다	55
40	벨기에	357	40	불가리아	51
41	토고	340	41	태국	40
42	르완다	334	42	피지	38
43	미국	307	43	사모아	35
44	러시아	298	44	아르헨티나	34
45	슬로바키아	297	45	이태리	34
46	피지	269	46	엘살바도르	32
47	루마니아	265	47	노르웨이	31

48	몽골	262
49	핀란드	258
50	파테말라	253
총인원		83,783

48	코트디부아르	27
49	뉴질랜드	25
50	덴마크	25
51	지부티	25
52	말라위	24
53	체코	23
54	에맨	22
55	오스트리아	22
56	네덜란드	21
57	마다가스카르	21
58	싱가포르	21
59	나미비아	19
60	부룬디	18
61	아일랜드	18
62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16
63	브라질	15
64	슬로베니아	15
65	헝가리	15
66	키르기스스탄	14
67	스위스	13
68	우루과이	13
69	자메이카	13
70	칠레	13
71	차드	12
72	크로아티아	12
73	토고	12
74	바누아투	11
75	그리스	9
76	리투아니아	6
77	대한민국	5
78	중앙아프리카공화 국	4
79	핀란드	4
80	세르비아	3
81	남아프리카	2
82	동티모르	2
83	일본	2
84	콜롬비아	2
85	마케도니아	1
86	모리셔스	1
87	인도네시아	1
88	팔라우	1
평균		109
합계		9,602

저자 주 : 2007년 7월말 기준 전체 평화유지인력과 유엔경찰의 수가 UN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DPKO), United Nations Police, [http://www.un.org/Depts/dpko/dpko/contributors/2007/jul07\\_1.pdf](http://www.un.org/Depts/dpko/dpko/contributors/2007/jul07_1.pdf)에 나와 있는 "Monthly Summary of Contributors of Military and Civilian Police Personnel - UN Mission's Summary Detailed by Country"의 수치들과 United Nations, UN Police Magazine, DPI/2444 (2007년 5월)의 수치들을 분석하여 저자가 정리한 표임.

<표 6> 국가별 전체평화유지인력기여도와 경찰인력기여도 비교

(2007년 7월말 기준)

	평화유지인력 (군병력 및 경찰 전체) 50위	경찰인력 50위
1	파키스탄	파키스탄
2	방글라데시	요르단
3	인도	방글라데시
4	네팔	네팔
5	요르단	세네갈
6	가나	인도
7	우루과이	나이지리아
8	나이지리아	포르투갈
9	이태리	필리핀
10	세네갈	미국*
11	프랑스	우크라이나
12	중국	말레이시아
13	에티오피아	터키
14	모로코	루마니아
15	베닌	중국
16	브라질	니제르
17	남아프리카	독일*
18	독일	카메룬
19	스페인	폴란드
20	케냐	프랑스
21	인도네시아	가나
22	스리랑카	짐바브웨*
23	폴란드	베닌
24	터키	부르키나파소*
25	이집트	스리랑카
26	아르헨티나	감비아*
27	말레이시아	말리*
28	나미비아	스웨덴*
29	필리핀	호주*
30	니제르	러시아
31	우크라이나	영국
32	칠레	캐나다*
33	튀니지	스페인
34	잠비아	케냐
35	볼리비아	기니*
36	포르투갈	이집트
37	오스트리아	잠비아
38	대한민국	르완다
39	영국	우간다*
40	벨기에	불가리아*
41	토고	태국*
42	르완다	피지
43	미국	사모아*
44	러시아	아르헨티나

45	슬로바키아	이태리
46	피지	엘살바도르*
47	루마니아	노르웨이*
48	몽골	코트디부아르*
49	핀란드	뉴질랜드*
50	과테말라	덴마크*

저자주 : \*은 파견한 경찰인력이 군병력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국가임.

출처 : UN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DPKO), United Nations Police,  
[http://www.un.org/Depts/dpko/dpko/contributors/2007/jul07\\_1.pdf](http://www.un.org/Depts/dpko/dpko/contributors/2007/jul07_1.pdf)

<표 7> 각국 유엔 경찰인력 지원현황

(2007년 5월 기준)

번호	국가명	합계	UNMIK	UNMIT	UNIOSIL	UNFICYP	ONUB	MINURSO	UNMIS	UNAMA	UNMIL	UNOMIG	ONUCI	MONUC	MINUSTAH
1	요르단	909	68						24		140		382	4	291
2	파키스탄	813	175	195					38		28		127		250
3	방글라데시	776	28	192					27		29		250	250	
4	네팔	541	17	87	2				43	1	256				135
5	세네갈	489		17									81	256	135
6	인도	485	72	5	3	5			23		125		2	250	
7	나이지리아	414	14	54	5				41	1	163		11		125
8	포르투갈	292	4	286	2										
9	필리핀	288	44	145					39	1	34		6		19
10	미국	284	213	3					11		8				49
11	터키	275	151	8	2		2		27		33		20	5	27
12	우크라이나	230	189	3					22		13			3	
13	말레이시아	220		208	1				11						
14	루마니아	219	198	10										1	10
15	중국	184	18	10					9		18				129
16	독일	167	153						5		5	4			
17	카메룬	165					2						66	55	42
18	니제르	159											59	46	54
19	프랑스	144	47										10	9	78
20	폴란드	131	126								3	2			
21	가나	121	35		2				37		40	1	6		
22	짐바브웨	120	18	38					33		31				
23	부르키나파소	111					2							45	64
24	베닌	102					2						36	10	54
25	스리랑카	96		64					22		10				
26	기니	90												28	62
27	말리	88												20	68
28	러시아	76	39	5					8		10	2		3	9
29	호주	74		50		15			9						
30	캐나다	74		6					2				4		62
31	스페인	74	13	10	3										
32	감비아	71		31	2				7		31				
33	영국	71	66		3				2						
34	스웨덴	70	28	5	2				15		12			8	
35	케냐	67	15		1				20		27			4	



90	모잠비크	0													
91	인도네시아	0													
92	크로아티아	0													
93	그레나다	0													
	합 계	9565	2001	1641	28	65	11	6	613	3	1202	12	1157	1033	1793

저자 주 : 유엔 PKO 임무의 약자는 다음과 같다.

UNMIK: 유엔 코소보행정기구  
 UNIOSIL: 유엔 시에라리온 통합 사무소  
 ONUB: 유엔 부룬디 작전  
 UNMIS: 수단유엔파견단  
 UNMIL: 유엔라이베리아 미션  
 ONUCI: 유엔 코트디부아르 미션  
 MINUSTAH: 유엔하이티안정임무  
 UNMIT: 유엔 동티모르 합동임무단  
 UNFICYP: 유엔 키프로스 평화유지군  
 MINURSO: 서부 사하라 주민투표 감시단  
 UNAMA: 유엔아프칸지원단  
 UNOMIG: 그루지야 유엔정전감시단  
 MONUC: 콩고 유엔감시단

출처 : United Nations, UN Police Magazine, DPI/2444, 2007년 5월.

## 2) 여성과 유엔경찰

“평화유지에 있어 여성의 대표성 증가는 미션의 수행에 있어 신뢰성과 효율성을 배가시킨다”는 아프리카 가나 대사 나나 에파-아펜텨(Nana Effah-Apenteng)의 말처럼, 평화유지활동에 있어 여성의 문제를 주류화하는 것은 유엔평화유지국(DPKO)의 가장 우선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sup>98)</sup> DPKO는 여성 문제를 다루는 사무소의 설립을 적극 지지하고, 평화를 존속하는 데 있어 여성의 역할이 강화되도록 하는데 주력해왔다.<sup>99)</sup> 2000년에 통과된 안보리 결의안 1325는 무력분쟁과 사후처리에 있어 여성이 각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인식시키는 한편, 평화와 안보의 유지 및 증진에 있어 여성이 크게 기여할 수 있음을 각인시키고 있다. 결의안은 분쟁예방 및 해결과 평화재건에 있어 여성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이에 관련한 정책결정에 있어 여성의 견해와 입장이 핵심인 것을 강조하며, 평화와 안보 확보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가 요구됨을 밝히고 있다.<sup>100)</sup>

98) UN DPKO, Gender and UN Peacekeeping Operations, [http://www.un.org/Depts/dpko/gender/gender\\_brochure.pdf](http://www.un.org/Depts/dpko/gender/gender_brochure.pdf)

99) UN DPKO, UN Peace Operations 2003 Year in Review, [http://www.un.org/Depts/dpko/dpko/pub/year\\_review03/Priority\\_areas.htm](http://www.un.org/Depts/dpko/dpko/pub/year_review03/Priority_areas.htm)

100) 평화유지활동에 있어 여성의 영향력 증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결의안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유엔 PKO에 있어 여성의 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지만, 점진적으로 여성 인력이 증가되고 있고, 그에 따른 성과가 이루어지고 있다.<sup>101)</sup> 2005년 10월을 기준으로 여성 감독관이 파견된 임무는 아프가니스탄의 UNAMA, 부룬디의 ONUB, 코트디부아르의 United Nations Operation in Côte d'Ivoire(UNOCI), 콩고민주공화국의 MONUC, 아이티의 MINUSTAH, 코소보의 UNMIK, 라이베리아의 UNMIL, 시에라리온의 UNAMSIL, 수단의 UNMIS, 동티모르의 United Nations Office in Timor-Leste(UNOTIL) 등 총 10개로, 이는 당시 전체 유엔평화활동 수 18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여성 인력의 활발한 증가와 이들의 활약은 경찰 부문에서 두드러진다. 2006년 인도는 125명의 여성 경찰관을 라이베리아에 파견하였는데, 이들은 자국에서의 훈련을 마친 뒤 이른바 '구성 경찰부대(Formed Police Unit : FPU)'를 창단하였고, 이들의 활동은 취약한 상황에 놓인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평화유지활동의 능력을 증진시킨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sup>102)</sup> 또한, 2005년 말 UNOMIG가 파견된 그루지야(Georgia)에서 여성경찰연합이 조직되었는데, 이는 남성이 지배적인 위치에 있던 평화유지활동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을 높이고, 여성 경찰 간의 연대의식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sup>103)</sup> 또한 이러한 조직이 다른 지역의 평화유지활동에도 파급되어 전반적인 여성의 역할이 신장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민주적 경찰은 대표성을 갖고(representative), 책임감이 있고(accountable), 공명해야 하는(responsive) 의무를 지닌다. 따라서 대표성 있는 경찰은 다음을 만족해

---

다: i) 평화유지미션에 대하여 사무총장 직속 여성 특별고문관을 보다 많이 임명한다; ii) 군감 시자나 경찰, 인도주의지원 인력으로 파견되는 여성의 수를 증가시킨다; iii) 평화유지업무의 현지 활동 전개에 있어 여성을 포함시킨다; iv) 회원국에 여성에 대한 보호와 여성의 주류화에 대한 교육 방침을 유포한다; v) 여성의 관점을 고려하여 평화 협상, 헌법·선거·사법제도를 구상한다; vi) 강간 등 성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강구한다; vii) 안보리에 제출하는 사무총장 보고서에 여성의 주류화를 언급한다. Gender and UN Peacekeeping Operations, 상동

101)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국제평화활동센터, “성(性) 주류화,” □다차원 유엔평화유지활동□, 2003년 11월.

102) Brian Hansford, “UN News Service,” *UN Police Magazine*, December 2006, [http://www.un.org/Depts/dpko/police/UNPolice\\_mag.pdf](http://www.un.org/Depts/dpko/police/UNPolice_mag.pdf).

103) 상동

야 한다: i) 경찰은 그들이 보호하는 공동체를 충분히 대표해야 한다; ii) 여성과 소수그룹 역시 공평하고 공정한 경찰 채용 정책을 통하여 적절하게 대표되어야 한다; iii) 모든 인류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존중한다.<sup>104)</sup> 달리 말하면 여성이 인류 공동체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곧 법의 강제를 위한 요원 역시 여성과 남성의 50대 50의 비율을 어느 정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많은 여성 경찰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성과는 주로 고수입의 선진국들이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많은 국가 내 연구나 국가 간 비교 연구에서는 여성을 법의 강제를 위한 서비스에 활용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증명해보였다.<sup>105)</sup>

이러한 연구들에 따르면, 여성 경찰이 물리력을 상대적으로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협력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공동체 치안확보를 위하여 요구되는 신뢰를 구축하기 쉽다. 즉 평화유지활동 중에 종종 발생하는 잠재적인 폭력상황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대화의 기술이 필수적이며, 물리력을 통한 전통적인 형태의 대처 방법은 더 이상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 경찰은 평화유지활동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성범죄나 물리적 폭력사태는 여성 혹은 어린이에 대한 남성의 범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의 희생자들은 여성경찰이 대면했을 때 보다 쉽게 사건 조사와 해결에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성과 남성 간의 교류가 억압되어 있는 문화 안에서는 여성 경찰관에 의한 여성 피해자의 접근만이 가능하다. 또한, 치안서비스에 있어 여성비율의 증가를 통하여 여성경찰관에 대한 차별이나 성적 비하가 줄어들고, 여성 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는 등 조직 내부의 분위기와 문화를 바꾸는 효과 역시 가져다줄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여성 경찰 뿐 아니라 남성 경찰인력에게도 이로운 것으로 판단된다.<sup>106)</sup>

104)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 5: Human Rights and Law Enforcement: A Manual on Human Rights Training for the Police*, Human Rights Centre, 1997년.

105) National Center for Women and Policing, a Division of the Feminist Majority Foundation, *Chapter I: Hiring and Retaining More Women: The Advantages to Law Enforcement Agencies: The Advantages to Law Enforcement Agencies in Recruiting and Retaining Women - A Self-Assessment Guide for Law Enforcement*, 2003년.

106)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Professional Training Series No. 5: Human Rights and Law Enforcement: A Manual on Human Rights Training*

## IV. 한국의 PKO 참여현황 및 향후 경찰 PKO 파견 전망

### 1. 한국의 PKO 참여현황과 의의

#### 1) PKO 참여현황

한국은 1991년 유엔에 가입한 이후 평화유지활동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1993년 소말리아 유엔 PKO(UN Operation in Somalia: UNOSOM-II)에 250명의 건설공병대대를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앙골라, 동티모르, 사이프러스, 서부사하라, 부룬디 등 6개 지역에서 PKO 관련 평화정착, 치안유지, 지역재건, 의료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2007년 7월말 현재, 그루지아, 인도/파키스탄, 레바논, 라이베리아, 수단, 아프간, 네팔, 동티모르 등 8개 지역에서 DPKO의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유엔 임무’(UN Mission)<sup>107)</sup>에 총 393명의 군 병력(358명), 군읍서버(30명) 및 경찰(5명)이 파견 중이다.<sup>108)</sup> 이렇듯 지난 14년 동안 한국의 PKO 파견규모는 6개 지역의 종료된 유엔 임무의 기(既)참여인원 4,971명과 현재 참여하고 있는 8개 지역의 연(延)인원 584명을 합하여 총 5,555명으로 세계 28위에 해당한다.<sup>109)</sup> 한국의 PKO 분담금은 2000년 518만 불에서 2006년 6,911만 불로 13배 이상 증가하였고, 한국정부는 유엔 등 국제기구 분담금 채납분 1억 3,000만불을 2008년까지 납부하기로 결정하였다.<sup>110)</sup> 이는 재정적 분담과 인적 파병 등을 통해 유엔 PKO 및 여타 유엔활동에 대한 한국의 기여가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for the Police*, Human Rights Centre, 1997.

107) 유엔 임무(UN Mission)는 크게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s)과 특수한 정치·평화재건임무(special political and/or peacebuilding missions)로 구분된다.

108) UN Department of Peacekeeping (DPKO), “Monthly Summary of Contributors of Military and Civilian Police Personnel - UN Mission’s Summary Detailed by Country,” 2007년 7월 31일, [http://www.un.org/Depts/dpko/dpko/contributors/2007/jul07\\_3.pdf](http://www.un.org/Depts/dpko/dpko/contributors/2007/jul07_3.pdf).

109) 상동.

110) 인남식,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의 의미와 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7년 6월 18일, [http://www.ifans.go.kr/ICSFiles/afiedfile/2007/06/28/jbins07\\_20.pdf](http://www.ifans.go.kr/ICSFiles/afiedfile/2007/06/28/jbins07_20.pdf).

### <표 8> 한국군 및 경찰의 PKO 참여현황

(2007년 7월말 기준)

현재 수행중인 유엔임무(UN Mission)					
파견지역(임무)	유엔임무명	현(現)인원	연(延)인원	최초파병일	임무종료일
인도-파키스탄 정전감시단	UNMOGIP	군읍서버 9명	116명	94년 10월	-
그루지아 정전감시단	UNOMIG	군읍서버 7명	74명	94년 11월	-
라이베리아 지원단	UNMIL	군병력 1명 군읍서버 1명	8명	03년10월	-
수단 임무단	UNMIS	군병력 1명 군읍서버 7명	16명	05년 11월	-
레바논 평화유지단	UNFIL	군병력 356명	356명	07년 7월	-
동티모르 임무단	UNMIT	경찰 5명	5명	06년 11월	-
아프가니스탄 지원단*	UNAMA	군읍서버 1명	4명	03년 7월	-
네팔 임무단*	UNMIN	군읍서버 5명	5명	07년 3월	-
총 파견인원		군병력 358명 군읍서버 30명 경찰 5명 총 393명	총 584명		

종료된 유엔임무(UN Mission)				
파견지역	유엔임무명	연(延)인원	최초파병일	임무종료일
소말리아	UNOSOM-II	공병대대 516명 (경찰 2명 포함)	93년 7월	94년 3월
앙골라	UNAVEM III	공병대대 600명	95년 10월	97년 2월
동티모르	UNIMSET	보병대대 3,328명	99년 10월	03년 10월
사이프러스	UNFICYP	사령관 1명	02년 1월	03년 12월
서부사하라	MINURSO	의료지원단 522명	94년 8월	06년 5월
부룬디	ONUB	군읍서버 4명	04년 9월	06년 12월
총 파견인원		총 4,971명		

출처: UN Department of Peacekeeping (DPKO), "Monthly Summary of Contributors of Military and Civilian Police Personnel - UN Mission's Summary Detailed by Country," 2007년 7월 31일, [http://www.un.org/Depts/dpko/dpko/contributors/2007/jul07\\_3.pdf](http://www.un.org/Depts/dpko/dpko/contributors/2007/jul07_3.pdf); 국방부, "해외파병현황," (2007년 7월 현재), <http://www.mnd.go.kr/policyFocus/koreanSolider/overseas/index.jsp>.

저자주 i) 위의 표는 상기 출처의 수치를 정리·분석하여 저자가 작성함.

- ii) 유엔 임무(UN Mission)는 크게 평화유지활동(peacekeeping operations)과 특수한 정치·평화재건임무(special political and/or peacebuilding missions)로 구분되는데, 아프가니스탄 지원단(UNAMA)과 네팔 임무단(UNMIN)은 후자에 속함.
- iii) 약자로 표기된 유엔임무명은 다음과 같음.  
 UNMOGIP: United Nations Military Observer Group in India and Pakistan  
 UNOMIG: United Nations Observer Mission in Georgia  
 UNMIL: United Nations Mission in Liberia  
 UNMIS: United Nations Mission in Sudan  
 UNFIL: United Nations Interim Force in Lebanon  
 UNMIT: United Nations Integrated mission in Timor-Leste  
 UNAMA: United Nations Assistance Mission in Afghanistan  
 UNMIN: United Nations Mission in Nepal  
 UNOSOM-II: United Nations Operation in Somalia II  
 UNAVEM III: United Nations Angola Verification Mission  
 UNIMISSET: United Nations Mission of Support in East Timor  
 UNFICYP: United Nations Peacekeeping Force in Cyprus  
 MINURSO: United Nations Mission for the Referendum in Western Sahara  
 ONUB: United Nations Operation in Burundi

<표 9> 한국의 PKO 분담금 추이

(단위: 만 불)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PKO 분담금	518	994	950	1,650	4,401	4,322	6,911
유엔정규 분담금	1,063	1,363	2,158	2,499	2,572	3,195	3,065

출처 : 외교통상부, 국제연합 “유엔예산 및 분담금,” <http://www.mofat.go.kr/index.html>; 국정홍보처, “대한민국, 세계를 품는다, 국제기구 분담금 늘려 국가 이미지 개선,” □코리아플러스□, 제 65호, 2007년 7월 1일, p. 11.

## 2) PKO 참여의 한계

세계 수위권의 경제력, 유엔 사무총장배출국으로서의 위상, 국제사회 내 영향력 확대와 더불어 한국에 대한 유엔 PKO 및 제반 국제평화활동에의 참여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적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PKO 참여와 역할수행을 위한 정책이나

여건들이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구체적인 PKO 참여법률과 임무수행절차를 구비함으로써 유엔의 요청에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sup>111)</sup> 한국에는 아직 PKO 상비체제나 전담상설부대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UNSAS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논의한 UNSAS의 3단계 중 한국은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부대규모, 병력수, 반응시간 등을 유엔에 통보하는 것)에 참가하고 있다. 또한 실제 파병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도 상당기간이 지체된 이후에 병력이동이 이루어졌거나 갑작스런 파병으로 군수지원 관련 문제에 직면하는 사례가 발생했다.<sup>112)</sup>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2004년 말 이래 ‘해외파병 전담상설부대’를 창설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다. 분쟁이 표면화된 직후에 신속하게 파견되는 소수의 병력이 많은 시간이 지난 후 파병된 대규모 병력보다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PKO 상비체제나 전담부대의 신설이 힘들 경우, 기존 부대를 지정하여 UNSAS에 부합하는 제반 사항들을 갖추어나갈 필요가 있다.<sup>113)</sup>

둘째, PKO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부서를 규정함으로써 다변화되고 있는 평화유지 활동을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sup>114)</sup> 한국에서 유엔의 PKO 참여요청은 외교통상부를 통해 접수되지만, 참여검토 및 결정에 있어서는 외교통상부와 국방부가 동시에 관여하고, 참여가 확정되면 그 준비과정에서는 국방부가, 부대가 파견된 현장에서는 합동참모본부가 총괄하는 등 그 업무형태가 분리·다원화되어 있다. 이러한 정부부서간 업무분담 구도 하에서는 임무수행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느 부서도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sup>115)</sup> 또한, 대부분의 PKO 참여국들이 군인 뿐 아니라 경찰과 민간인들을 동시에 파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한국도 민-관-군 협력형태의 PKO 파견단 구성에 대한 관련 법률안과 정책마련 및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제반 준비작업을 위해서라도 PKO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단일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111) 김열수, “한국군의 평화활동: 회고와 전망,” □해외파병사 연구총서□, 제 1집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112) 고성윤, 김열수 외, 상동.

113) 제성호, “한국의 PKO참여 법률의 제정방향,”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PO센터, □국제 평화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방안□, 제 2회 PKO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2006년 10월 24일.

114) 김열수, 상동.

115) 국회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국방주요현안분석, 2004, p. 31

셋째, 현재 논의되고 있는 PKO관련 법률안에서 군병력 이외에 경찰, 군무원, NGO 종사자 등 비군사요원들의 역할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2006년 9월 일정한 조건에서 국회의 사전 동의없이 병력을 파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PKO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 법률안’(김명자의원 대표발의)과 ‘국군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선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제출되었는데,<sup>116)</sup> 이 두 법안은 국군파견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평화유지활동에서는 전후평화재건(post-conflict peacebuilding)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다양한 행위자들의 유기적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비군사요원들에 관한 법률을 독립적으로 제정하는 것은 입법 경제적 측면이나 PKO 관련 종합적인 규율마련 면에서 비효율적 이므로 PKO 참여법률안을 군-민-경찰의 활동을 모두 포괄하여 규정하고 규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17)</sup> 최근 들어 김명자, 송영선 의원이 각각 상정한 해외 파병법안의 통합 가능성이 희박하고, 이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외교통상부가 경찰부대 파견을 포함하는 정부입법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이 추진안에 민-관-군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효과적인 유기적 평화유지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sup>118)</sup>

넷째, PKO 참여를 위한 일관된 원칙이 필요하다. 한국은 현재 유엔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내의 상황이나 PKO 파견지역의 정세 등에 따라 ‘임시변통’(ad hoc)의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한국의 PKO 참여규모가 증가하고 국제사회의 요청이 늘어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PKO 참여의 목적, 범위, 강도를 국내외적으로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PKO에 유엔사무총장 배출국으로서의 책임감만으로 참여한다거나, 경제적 이익이나 특정 국가와의 관계만을 고려하여 참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위상에 도움이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익제고와 국제적 명분마련을 위해 모든 지구촌 분쟁에 PKO를 파견하는 것 역시 현명한 처사는 아닌 듯싶다. 이는 국민들 사이에 국제

116)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 법률안(김명자의원 대표발의)과 국군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선의원 대표발의)”, 2006년 9월; 제성호, 상동.

117) 박홍순, “한국의 PKO 업무수행체제 개선방안-민·관·군 통합적 접근의 모색”, 국방대학교 합동 참모대학 PO센터, □국제 평화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방안□, 제 2회 PKO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2006년 10월 24일; 제성호, 상동.

118) “정부에 유엔 PKF 파병권 부여 검토”, □연합뉴스□, 2005년 9월 2일.

구호나 원조의 필요성에 대한 ‘제공자 피로증세’(donor fatigue)를 유발시켜 국제적 책임감을 망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와 국가적 차원의 방침에 기반을 둔 PKO 참여원칙이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모든 PKO 임무에 참여해야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고, 국회에서의 의결과정이 용이해질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도 한국의 원칙과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PKO 참여 증가에 대비한 지식, 전문 인력, 기술육성이 필요하다. 한국의 PKO 참여가 증가하면서 파견요원들의 활동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파병시 요구되는 지식 및 기술뿐만 아니라 평화유지활동에 관한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전문가들 간 학제적 네트워크(interdisciplinary network) 구축을 기초로 한 유기적 협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현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을 경우,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요 분쟁지역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sup>119)</sup> 이를 위해 조기경보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의 경우, 정책수립 및 조기경보국(Policy Planning and Early Warning Unit)을 두어 세계 도처의 분쟁예방과 평화구축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도 분쟁예방센터(Conflict Prevention Centre, CPC) 등을 통해 조기경보 기능확대와 예방외교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특히 “소수민족문제담당 고등판무관”(High Commissioner on National Minorities: HCNM)을 두어 위기에 처했거나 위기에 처할 위험이 있는 소수민족들의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관련 업무수행에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sup>120)</sup>

고무적인 것은 지난 몇 해 동안 국제평화활동의 효율성을 증대해야 한다는 인식과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PKO 상비체제의 부재, 미흡한 국내법적 체계, 파견요원의 전문성과 경쟁력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해 PKO 참여에 관한 법률제정, 민-관-군 통합 PKO 업무수행체계 구축방안, PKO 파견요원에 대한 체계적 교육, 국가급 PO센터 설립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전문가그룹과 정부공무원들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19) 전문성 부족으로 야기될 수 있는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이서향, “한국의 PKO 정책과 실제,” 강성학 편저, □동아시아의 안보와 유엔체제□(서울: 집문당, 2003); 최용호, □한국군 동티모르 파병과 띠모르레스메 탄생□(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120) OSCE High Commissioner on National Minorities, “Overview,” <http://www.osce.org/hcnm/>.

사실 1993년 이래 한국군은 PKO 참여경험이 풍부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고 핀란드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북유럽 유엔훈련센터(Northern Europe United Nations Training Corps: UNTC) 및 폴란드나 아일랜드의 PKO 훈련기관 등에 장교들을 보내어 꾸준히 전문가들을 훈련해왔다. 1995년부터는 장교와 관련 공무원들을 캐나다 소재 피어슨 평화유지센터(Pearson Peacekeeping Center: PPC)에서 파견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 또한 한국군은 PKO 교육의 국내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에서 해외파병 장교, 군옵서버와 협조요원들을 양성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1998년에는 즉각 현지 임무수행능력을 갖춘 요원양성을 위해 이 대학 내에 평화유지과정이 신설되었고, 이곳에서 MNF 참모/협조요원과정, 경찰옵서버 과정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sup>121)</sup> 한편, 국방부는 민-관-군을 포괄하는 종합적 활동을 지원하여 국제평화유지활동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인 방안을 2005년 9월 발표된 장기적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20□의 주요 과제중 하나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UNSAS의 격상과 PKO 상비부대 편성 및 국가급 PKO센터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sup>122)</sup>

### 3) PKO 참여 의의

한국의 평화유지임무는 그 양에서 뿐만 아니라 질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군 인력들의 임무수행은 유엔평화유지임무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소말리아, 앙골라, 동티모르 등지에서 전후 복구사업 및 인도적 지원임무의 성공으로 유엔과 주민들의 찬사를 받은 것은 물론, 일체의 비리나 성추행사건에 연루되지 않음으로써 깨끗하고 능력있는 평화유지군으로서의 이미지를 획득했다. 이와 같이 적극적인 PKO 참여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업적을 축적하는 동시에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국격(國格)을 세계 각지의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집중된 한국의 인식지평 또한 이 과정에서 넓어질 수 있을 것이다.

121)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PKO 과정,” <http://www.kndu.ac.kr/jfsc/>; GlobalSecurity.org, “Special Warfare Command - ROK Military,” <http://www.globalsecurity.org/military/world/rok/swc.htm>.

122) 국방개혁위원회 편, □국방개혁 2020□, 서울: 국방부, 2005년 11월.

더욱이 PKO 참여는 강대국이 밀집되어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군사적 활동 중 하나이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경쟁하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여건 상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동맹관계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세계적 수준에서 볼 때 한국은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니고 있는 국가로서 PKO 참여를 통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특히, 동북아시아 국가 중 일본은 과거 제국주의의 경험과 법적 제약 때문에 평화유지군 파견에 어려움이 있고, 중국은 여전히 분쟁발생국의 주권우선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고도로 훈련된 대규모의 군경 병력과 게릴라전, 시가전, 산악전 등 다양한 형태의 분쟁에 대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점에서도 PKO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요청으로 한국군이 동티모르의 평화유지활동에서 다국적군을 이끌었던 것처럼, 한국이 PKO 임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다.<sup>123)</sup>

이에 더하여 군병력의 일부를 PKO에 파견함으로써 부수적인 효과 또한 얻을 수 있다. 분쟁지역에서의 작전체험은 한국군의 실전(實戰)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교리개발 및 능력구축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대부분의 파견 경비를 유엔이 제공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PKO 파견을 통해 실전경험을 지닌 인원을 정부의 비용지출 없이 획득할 수 있다.<sup>124)</sup>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PKO 참여를 통해 책임감 있는 국가로서 인지도를 확대하고 국제적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한국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명분이 될 수 있다. 더욱이 PKO 파병과 함께 한국기업이 현지에 진출함으로써 전후 복구사업에서 시장선점을 기대할 수 있다.<sup>125)</sup> 따라서 PKO 참여의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외교적 명분과 경제적 실익 모두에 기여하는 일이다.

123) 고성윤, 김열수 외, 상동.

124) 국회국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상동.

125) 국방부, “한국군의 UN 평화유지활동,” 상동.

## 2. 한국의 경찰 PKO의 현황과 전망

탈냉전기 들어 국가 간 전쟁보다는 내전이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에 따른 인도적 위기상황이 심각해지면서 평화유지활동도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전통적인 PKO 개념과 방법으로는 설명하거나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점점 적어지면서, PKO 뿐 아니라 전후 평화구축(post-conflict peace building)이나 평화강제(peace enforcement)와 같은 개념을 포괄하는 ‘평화활동’(peace operation: PO)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sup>126)</sup> 이렇듯 평화재건/구축임무가 중요해지면서 현지 치안이나 선거지원 등 경찰의 활동이 점점 더 두드러지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1994년 소말리아 경찰요원들에게 형법과 국제법을 가르칠 교관 2명을 보내고, 1999년 유엔 감시 하에 실시된 동티모르 독립찬반 투표를 감시하고 관리할 5명의 민간요원들을 파견한 바 있다. 2005년 4월 수단에 파견된 유엔수단임무단(United Nations Mission in the Sudan: UNMIS)에 참여요청을 받아 3명의 경찰을 선발하여 유엔에 통보하였으나 현지사정 악화로 파견이 취소되었다. 따라서 해외치안유지를 목적으로 파견된 것은 2006년 11월 5명의 경찰이 유엔경찰의 자격으로 동티모르로 출국한 것이 처음이었다. 한국 경찰이 동티모르 PKO 업무인 유엔동티모르통합지원단(United Nations Integrated Mission in Timor-Leste: UNMIT)에 참여하게 된 것은 같은 해 8월 유엔 안보리가 회원국 경찰관과 민간인 1,600여명을 동티모르에 파견하기로 결의하고 한국 정부에 파견요청을 한데서 비롯되었다. 당초 유엔이 요청한 규모는 총경급 단장 등 간부 10명과 순경 및 경사 140-150명의 중대급 경찰부대였지만, 요원확보 및 예산상의 문제로 5명만이 참여하게 된 것이다.<sup>127)</sup>

2007년 9월 현재 파견 경찰들은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포르투갈 경찰관과 더불어 현지경찰에 대한 자문과 교육훈련 및 치안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한국경찰의 PKO 참여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고, 경찰부대(중대급) 파견에 대한 정부 입

126) Ramesh Thakur, Chiyuki Aoi, and Cedric de Coning eds.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Peacekeeping Operations* (Tokyo: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2007).

127) “‘친절’할 수밖에 없는 민족… 동티모르의 ‘골 깊은’ 사연,” □조선일보□2007년 1월 22일; “한국 경찰 치안력 첫 수출,” □중앙일보□, 2006년 11월 11일.

장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인지라 경찰청이 2007년 1개 중대급 경찰력(120~140명)을 추가로 파견하려는 계획도 실현여부가 불투명하다.<sup>128)</sup>

한국 경찰의 유엔 PKO 참여는 중대급 경찰부대 파견, 소수 현장요원(부대파견시 지휘요원급) 파견,<sup>129)</sup> 유엔본부 소재 DPKO에서 교육, 훈련, 행정 등을 담당하는 경찰요원의 선발, 그리고 특별고문, 훈련관, 조연관/자문관의 선발 및 추천을 통해 가능하다. 2007년 9월 현재, 경찰청은 DPKO에서 본부요원으로 근무할 경찰 2명을 유엔에 추천하였는데, 이들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interpol)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sup>130)</sup> 최종선발심사는 유엔에서 실시되지만, 유엔이 한국, 일본 등 주요 회원국에 본부경찰요원 및 현장경찰요원의 추천을 의뢰한 것이므로 한국이 파견을 결정할 경우 별다른 문제없이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나 국회입장에서 볼 때, 2007년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 레바논파병 등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중대급 경찰부대의 파견결정은 군부대 파견과 거의 동일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일반 국민들이 유엔 PKO를 위한 파견을 이라크에 파병된 다국적군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PKO에 참여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경찰 활동영역을 개척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위상을 제고”<sup>131)</sup>하기 위한 것이라는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대중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장시간을 요구하는 일임을 고려하여, 정부나 경찰청은 우선적으로 경찰 PKO 파견과 관련한 국내법과 제도를 마련해나가는 방침을 정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은 관계부처와의 의견수렴절차 등을 거쳐 i) 관계규정 정비 및 예산·인원 보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경찰부대가 파견을 점진적으로 추진하고; ii) 대규모의 경찰부대 파견 시 요구되는 필수적 절차인 교육훈련과 관련, 향후 실질적인 참여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경찰의 PKO에 대비한 경찰청 자체의 체계적인 교육기관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sup>132)</sup>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교통상부에서는 경찰부대의 파견을 포함한 PKO

128) “동티모르 경찰관 PKO: 내일 출국 내년 중대급 경찰력 추가파견 추진,” □조선일보□, 2006년 11월 29일, <http://www.chosun.co.kr/national/news/200611/200611290161.html>.

129) 현재 동티모르에 파견된 한국 경찰 5명이 지휘요원급에 속함.

130) 본 정보는 경찰청에 근무하는 익명을 요구한 경감과의 개별 인터뷰를 통해 얻음.

131) 본 보고서의 과제선정배경인 경찰의 ‘유엔 PKO 참여활성화’에서 부분 인용함.

법률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향후 한국 경찰의 PKO 참여는 지금보다 훨씬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

132) 경찰 PKO 참여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위해 본 보고서작성과 같은 연구프로젝트가 추진된 것이다. 관련 전략회의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경찰의 UN-PKO 참여 추진계획” 등이 논의되고 있음 (외사기획과-7557, 2006년 8월 10일).

## V. 한국의 ‘경찰 PKO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방안

### 1. 경찰 PKO센터의 필요성과 타당성

전 인권고등판무관이자 동티모르 및 이라크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를 역임한 고(故) 서지오 디멜로(Sergio Vieira De Mello)는 영국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군인은 더 이상 분쟁 이후 평화재건을 위한 올바른 선택이 아니다.”라고 말한바 있다.<sup>133)</sup> 이는 해당지역의 평화재건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는 군병력보다 구호인력이나 경찰 인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포한다. 무장한 군인은 시민들을 진정시키고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시키는 데에 있어 비효율적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군사적 PKO 인력에 대한 공급이 요구되는 것이다.

실로 평화유지군의 활동이 군사뿐 아니라 인프라 건설, 보건, 교육, 위생, 국가재건으로 확대되면서 그 활동범위가 점점 넓어졌고, 특히 사회적응, 치안유지, 법제도 정착 임무 등의 업무는 한국의 인력이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야이다. 다른 나라들 역시 시민경찰의 파견을 증가시키는 추세이며, 평화재건에서의 민간경찰 역할이 주목받게 됨에 따라 민간경찰과 행정지원 인력 등 새로운 평화유지군 활동인력 확보에 대한 요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수요 및 한국에 대한 기대에 부응해야할 책임이 무거워진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보은(報恩)의 차원, 국가이미지 및 위상제고, 한국 군인과 경찰의 국제역량 함양을 위해서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한국외교의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외교는 남북대치 및 주변 4강에 둘러싸인 특수한 지정학적 여건

133) Colonel KK Sharma, “The Challenge of Change: An approach to training for UN Peacekeeping Operations, Centre for United Nations Peacekeeping,” India, 2003년 12월, [http://www.sam.gov.tr/perceptions/Volume8/December2003/Sharma12Subat\\_2004basimicin.pdf](http://www.sam.gov.tr/perceptions/Volume8/December2003/Sharma12Subat_2004basimicin.pdf).

속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에 편중되어 있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가안보적 시각에 기존 외교가 가장 핵심적 요소를 차지하겠지만, 국제화나 정보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국제문제 뿐 아니라 다른 많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 이해하고 외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한 국가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지구촌전체에 걸쳐 국가와 국민의 운명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더 이상 국가단위로만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경향을 띤다. 따라서 지구촌의 모든 국가들은 상호연관성 혹은 상호취약성 속에 놓여 있으며, 외관상 안전해 보이는 국가들도 복합적 위기상황에 빠진 국가들에 의해 어려운 입장(예: 난민유입, 인질사태)에 처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핵무기, 대량살상무기, 군비경쟁과 같은 전통안보이슈만이 아니라 환경, 여성, 질병, 인권 등과 관련된 '비전통 안보(non-traditional security)' 혹은 '인간안보(human security)' 이슈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전통적 군사안보(국가안보)와 비전통적 안보이슈들을 아우르는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문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정책역량제고를 통해 한국외교정책의 방향과 범위를 확장시켜야 하는 시점에 있다.

이와 동시에 오늘날 국제사회에는 주요한 행위주체가 다양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과거 국제질서에서는 국가가 일률적으로 행위의 주체 세력이었으나 세계화시대는 국가라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EU와 같은 '준 초국가적' 지역연합체, 지방정부, 기업, 국제적인 연계망을 가지는 비정부 민간단체(NGO) 등 비국가적 행위자들의 역할과 활동이 급격하게 증대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군위주의 평화유지활동에 경찰이나 민간요원들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제환경의 변화와 행위자의 다양화 추세 속에서 경찰 PKO 참여의 양적·질적 향상과 활동영역 확대의 중요성을 인식한 대부분의 정부 부처 및 경찰청 내 종사자들은 경찰 PKO센터 설립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조직, 인원, 설립장소, 예산, PKO센터 혹은PO센터<sup>134)</sup>와의 중복성 문제 등의 복잡한 이슈들에 대한 합의와 정책마련이 센터설립 이전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향후 설립될 PKO/PO센터와 별도로 경찰 PKO센터의 설립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론

134) 흔히 PO센터라고 알려져 있지만, 평화활동의 포괄성을 고려하여 PO센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두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적,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고, PO센터와는 어떤 임무와 기능분화가 있어야 하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활발한 내전 당시에는 군대의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막상 내전이 발생한 지 일정시간이 지나면 유엔평화유지군의 ‘고유 임무’는 현지상황 정착에 그다지 크게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국가재건 작업을 위해서는 현지인과의 소통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군복과 실탄을 장전한 총을 가지고 다니는 유엔군은 공포의 대상이 될 확률이 높다. 반면 경찰은 자국에서도 기본적으로 민간인을 상대로 다양한 대민보호 및 봉사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현지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작전을 진행시킬 수 있으며, 유엔경찰은 현지인을 선발하여 경찰관후보로 두고 교육을 시키고 동행함으로써 현지인들에게 지배자가 아닌 협력자의 인상을 줄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분쟁지역에서의 여성의 인권이 취약하다는 점을 가정할 때, 유엔경찰에는 상대적으로 군 인력에 비해 여경이 많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보호나 생활에 관련하여 더욱 친밀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sup>135)</sup>

둘째, 경찰의 PKO참여와 관련하여 국제테러 양상의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래 들어 가장 테러피해가 극심했던 2005년 한 해 동안 ‘영국 런던테러’(7월), ‘인도네시아 발리테러’(10월) 등 세계적으로 총 1,877건의 테러사건이 발생하였고, 사상자는 21,309명에 이르렀다.<sup>136)</sup> 미국의 우방으로서 미국관련 시설이 많은 한국도 국제테러단체의 목표물이 될 확률이 높다.<sup>137)</sup> 또한 2007년 아프간 탈레반에 의한 한국인 인질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해외여행자나 재외한국인들에 대한 보호도 시급한 실정이다. 이렇듯 한국이 직면한 새로운 위협을 고려해 볼 때, 유엔과 국제사회가 개입하고 있는 분쟁지역의 치안문제나 평화재건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평시부터 다른 나라의 경

135) 앞서 인터뷰한 김광희씨에 의하면, 이러한 이유에서 임무수행 시 동티모르 현지인들은 경찰요원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한다.

136) 경찰청, “국제 정세와 치안환경 변화,” □2006년 경찰백서□, <http://www.police.go.kr/pds/whitePaperView.do?code=007007>.

137) 미국과 그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대(對)테러전은 서구적 제도와 정치적 자유에 대한 ‘미래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평화재건과 사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국제 시민경찰을 통하여 분열된 사회를 효과적으로 재건한다면, 궁극적으로 상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대테러전의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William Lewis, Edward Marks, and Robert Perito, “Enhancing International Civilian Police in Peace Operations,” *Special Report*,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2002년 4월 22일.

찰들과의 국제적 공조체제를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화·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가 간 인적, 물적 교류가 확대되고 국제조직의 초국가적 범죄(transnational crime)가 확산되고 있어 다른 국가의 경찰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대응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sup>138)</sup> 따라서 국제범죄의 조직화, 대형화, 지능화와 같은 변화하는 세계치안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공조체제를 확립하고 재외국민 보호강화에 필요한 외국경찰기관과의 교류협력 약정(MOU)을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국가별 여행자와 교민 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치안수요를 결정하고 경찰협력이 필수적인 국가들과 우선적으로 교류협력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sup>139)</sup>

넷째, 이러한 추세는 증가하는 경찰인력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경찰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연결될 수 있다. 경찰은 평화유지활동이 개시된 이래로 수차례 작전에 투입되어 왔으나, 군 인력에 비해 그 숫자가 상당히 미미하며, 때문에 이들을 상대로 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도 미비한 실정이다. 국가들이 보유하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교육기관은 주로 군 인력을 중심으로 한 것이며, 경찰을 중심으로 하거나 경찰을 위한 단독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기관은 거의 전무하다.<sup>140)</sup> 뿐만 아니라 평화유지활동에 있어 경찰의 역할에 대한 학계의 연구나 정책적 논의도 찾아보기 힘들다.<sup>141)</sup>

한 조사에 따르면 평화유지활동에 의한 사상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인 평화유지활동 훈련을 실시한 국가들의 인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업무를 전개하며, 위협에 대한 대처능력도 뛰어나다고 한다.<sup>142)</sup> <표 10>을 보면 1995년 사망자 비율이 전체 참여 경찰 인원 1,088명 중 8명이 사망하여 0.74%였던 데 비해, 2006년 파견된 총 8,695명 중에는 5명이 사망하여 0.06%였다. 이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경찰순직자 비율(0.03%)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이다. 이러한 수치는 해가 거듭하면서 경찰 파견요원

138) 상동.

139) 경찰청 정책홍보실, 외사기획과. “외국경찰과의 협력으로 국제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 <http://www.police.go.kr/policenow/policynewsView.do?id=161&cPage=1&pageType=A&SK=002007>.

140)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eacekeeping Training Centres의 가입 기관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http://www.iaptc.org/> 참고

141) Cerdic de Coning, “Seminar Report: Seminar on The Role of Civilian Police in UN Peace Operations,” ACCORD, 1998. <http://www.trainingforpeace.org/events/1998/civpolrep.pdf>

142) Barry M Blechman & J Matthew Vaccaro, *Training for Peacekeeping: The United Nations Role*, The Henry L. Stimson Center, Washington, July 1994.

들도 PKO 임무에 필요한 정보나 교육을 보다 적절하게 받게 된 데에 어느 정도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한 평화유지요원들은 위협을 회피하거나 그로부터 먼저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단지 평화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방관의 자세를 보인다고 하였다.

<표 10> 경찰 PKO 참여인력의 연도별 사망자 수

연 도	파견경찰수	경찰사망자	비 율(%)
1995	1,088	8	0.74
1996	2,739	5	0.18
1997	3,132	10	0.32
1998	-	4	-
1999	4,435	13	0.29
2000	7,725	3	0.04
2001	7,642	2	0.03
2002	5,333	4	0.08
2003	4,635	4	0.09
2004	6,765	9	0.13
2005	7,241	13	0.18
2006	8,695	5	0.06
2007	9,698	5	0.05

한국 경찰 순직자 비율 (대략적 수치)			
2006	경찰인력수	순직자수	비율(%)
	96,000	25	0.03

저자 주 : - 경찰 PKO 참여자의 연간 사망자수는 유엔 DPKO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 2007년 경찰 PKO의 사망자 수는 8월 31일까지의 집계이다.  
 - 한국 경찰 순직자 비율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대학원생 전경주양이 사이버경찰청 총무과 박병무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보이다.

출처 : UN DPKO, "United Nations Peacekeeping - Fatalities by Year and Appointment Type," <http://www.un.org/Depts/dpko/fatalities/StatsByYearAppointmentType%206.pdf>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파견될 경찰인력들을 교육하고 훈련할 인적·물적 인

프라구축이 중요성이 대두된다. 최근 들어 PKO 특별법(국회사전 동의없이 병력을 파견한다는 내용 포함) 제정을 위한 법률안을 두고 정치권 내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는 반대로, 국회의 사전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찰과 민간인의 PKO 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PKO 상비부대 편성 및 국가급 PO센터 혹은 PO센터 설립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sup>143)</sup> UN-PKO 경찰요원 교육을 전담하는 독자적인 교육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경찰청 자체 내 '경찰 PO센터' 설립에 대한 검토가 가시화되고 있다.

## 2. 세계의 경찰 PKO센터 현황 및 특성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현지에서의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 그리고 PO를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교육하기 위해서는 국가급 차원의 PO센터 설립이 필요하다.”<sup>144)</sup> 이에 따라 1994년 유엔총회는 PKO 군병력 및 민간요원을 상대로 한 평화유지훈련센터를 설립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Resolution 49/37)을 채택하였다.<sup>145)</sup>

이와 마찬가지로 유엔 PKO 임무에 있어 경찰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파견국가들은 군병력이 아닌 비군사적 요원의 역할 및 특성에 맞는 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PKO/PO센터 속에 PO 참여자들의 다양성을 고려한 통합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기관이나, 경찰 PKO 요원들을 전담하여 교육하는 독자적인 경찰 PO센터를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표 11> 참조).

143) PO센터 또는 PO센터 설립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김열수, “국가급 평화활동(PO)센터 설립 방안,”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PO센터. □국제 평화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방안□, 제 2회 PKO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2006년 10월 24일)을 참조할 것.

144) 김열수, 상동, p. 59.

145) Canana Pearson Peacekeeping Center, “Our Roots,” <http://www.peaceoperations.org/web/1a/en/pa/A20EB5D052514C04BE3968CA3C161941/template.asp>

&lt;표 11&gt; 세계의 평화유지활동 훈련센터 현황

(2007년 8월 기준)

국 가	관련기관	경찰훈련센터	설립년도
가나	코피 아난 평화유지활동 훈련 센터	n.a	n.a
	Kofi Annan International Peacekeeping Training Centre		
	www.kaiptc.org		
그리스	다국적 평화작전 지원센터	x	2005
	Multinational Peace Support Operations Centre		
	www.mpsotc.gr		
나이지리아	서아프리카 경제통합기구	x	1975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		
	www.eia.doc.gov		
남아프리카	평화임무 훈련센터	n.a	n.a
	Peace Mission Training Centre		
	n.a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분쟁해결 연구센터	n.a	n.a
	African Centre for the Constructive Resolution of Disputes		
	www.accord.org.za		
네덜란드	네덜란드 군 훈련센터	x	1995
	Royal Netherlands Army		
	www.rmy.nl/spo		
노르웨이	노르웨이 평화유지활동 센터	x	1995
	Norwegian Armed Forces Peacekeeping Training Centre		
	www.mil.no/felles		
노르웨이	평화유지 활동 센터	n.a	n.a
	Training for Peace, NUPI		
	www.nupi.org		
뉴질랜드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n.a	n.a
	www.mfat.govt.nz		
	n.a		
덴마크	덴마크 병참 및 헌병 학교	x	1969
	Danish Logistics School/Danish Army Service Support and Military Police School		
	www.hok.dk		
덴마크	덴마크 수비군	n.a	n.a
	Defence Command Denmark		
	www.forvaret.dk		
독일	독일 연방 국방부 산하 훈련센터	n.a	n.a

	Fuehrungsakademie der Bundeswehr		
	www.fueakbw.de		
독일	국제평화 활동 센터	x	1998
	Centre for Intersectional Peace operations		
	www.zif_berlin.org		
독일	나토 스쿨	x	2000
	NATO School		
	www.natoschool.nato.int		
독일	독일 연방 경찰학교	n.a	n.a
	Federal Police Academy		
	www.bundespolizei.de		
루마니아	루마니아 지역 훈련센터	n.a	n.a
	PfP Regional Training Centre		
	www.gcsd.ch		
러시아	러시아 경찰 평화유지활동 훈련 센터	o	n.a
	Police Peacekeeping Training Centre		
	www.ptc.h10.ru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평화유지 센터	n.a	n.a
	Peacekeeping Training Centre		
	n.a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평화유지활동 훈련 센터	x	1996
	Malaysian Peacekeeping Training Centre		
	www.maf.gov		
미국	미군 평화유지활동 연구소	x	1993
	Army Peacekeeping Institute		
	www.asc.army.mil/docs		
미국	전미 방위대학	x	1962
	Inter American Defense College		
	www.jid.org		
미국	포토맥 국제전략 센터	x	1997
	Potomac Strategies International		
	www.potomacstrategies.com		
미국	민-군 교류연구 센터	x	1994
	The centre for Civil-Military Relations, California		
	www.ccmr.org		
미국	미국 평화유지활동 연구소	x	2003
	US Army Peacekeeping & Stability Operations Institute, Carlisle		
	www.carlisle.army.mil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평화활동 훈련센터	o	1999
	Bangladesh Institute of peace support operation training		
	www.bipsot.net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평화지원활동 훈련센터	x	2003
	Peace Support Operations Training Centre		
	www.psotc.org		
불가리아	라보스키 국방 및 평화유지훈련 센터	n.a	n.a
	Rakovski National Defence and Staff College Peacekeeping Training Centre		
	n.a		
세네갈	세네갈 평화유지활동 훈련 본부	o	2000
	Senegal Peacekeeping Training Headquarters		
	n.a		
스웨덴	스웨덴 국제평화군 센터	n.a	n.a
	Swedish Armed Forces International Centre- SWEDINT		
	www.swedint.mil.se		
스웨덴	볼케 베르나도토이 학교	x	1999
	Folke Bernadotte Academy		
	www.folkeebe dotemy.sp		
스위스	제네바 안보정책 센터	n.a	n.a
	Geneva Center for Security Policy		
	www.gcsh.ch		
스페인	스페인 국제협력단	x	1992
	Coordination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Unit		
	n.a		
슬로바키아	유엔 훈련 센터	n.a	1993
	UN Training Centre		
	n.a		
싱가포르	싱가포르 경찰 국	n.a	n.a
	Singapore Police Force		
	www.spf.gov.sg		
아르헨티나	평화 활동 합동 훈련센터	x	1995
	Peace Operations Joint Training Centre		
	www.caecopaz.mil.ar		
아일랜드	유엔 훈련 학교	n.a	n.a
	UN Training School		
	www.military.ie/overseas/untsi.htm		
영국	영국 작전훈련 자문그룹	n.a	n.a
	Operational Training Advisory Group		
	www.army.mod.uk		

요르단	요르단 외교연구원	n.a	n.a
	Institute of Diplomacy		
	www.id.gov.jo		
요르단	요르단 평화유지활동 연구원	n.a	n.a
	Peacekeeping Institute		
	n.a		
우루과이	우루과이 평화유지활동 본부	n.a	n.a
	Uruguayan Army HQ, Peace Keeping National System , Army HQ		
	n.a		
우루과이	우루과이 평화유지활동 센터	n.a	n.a
	Uruguay PKO School		
	n.a		
우크라이나	평화유지활동 전문가 모임	x	1997
	Peacekeeping Veterans Association		
	www.euro.org		
우크라이나	평화유지활동 센터	n.a	n.a
	Peacekeeping Centre		
	n.a		
이집트	분쟁해결과 평화활동을 위한 카이로 센터	n.a	n.a
	Cairo Centre for Training on Conflict Resolution and Peacekeeping in Africa		
	n.a		
이탈리아	성 안나 국제학교	n.a	n.a
	Sant' Anna School of University Studies		
	www.sssup.it		
인도	유엔평화유지활동 지원센터	n.a	n.a
	USI-Centre for UN Peacekeeping		
	www.usiofindia.org		
일본	정부 내각 위원회 산하 평화유지활동지원센터	n.a	n.a
	Government Cabinet Office		
	www.pko.go.jp/PKO		
잠비아	민주주의와 국제관계 연구소	n.a	n.a
	Institute of Diplomacy and International Studies		
	n.a		
짐바브웨	남아프리카 개발연합 지역평화유지군 훈련센터	x	1993
	SADC Regional Peacekeeping Training Centre		
	www.sardc.net		
체코공화국	평화 유지활동 훈련센터	n.a	n.a
	Peacekeeping Operations Training Centre		

	n.a		
칠레	칠레 합동 평화유지 활동센터	0	1993
	Chilean Joint Corps for Peacekeeping Centre		
	www.cecopac.cl		
캐나다	피어슨 평화유지 센터	0	1994
	Pearson Peacekeeping Centre		
	www.peaceoperations.org		
캐나다	캐나다 평화지원훈련 센터	n.a	n.a
	Canadian Forces Peace Support Training Centre		
	www.armyapp.dnd		
케냐	케냐 평화지원훈련 센터	n.a	n.a
	Peace Support Training Centre		
	www.trainingforpeace.org		
코트디부아르	평화유지활동 훈련센터	n.a	n.a
	Peacekeeping Training Centre		
	n.a		
크로아티아	국제 평화유지군 훈련 센터	x	2001
	International Military Training Centre		
	www.morh.hr		
터키	유엔 작전센터	n.a	n.a
	PfP Training Centre		
	www.bioem.tsk.mil.tr		
파키스탄	평화유지 훈련과 프로그램	n.a	n.a
	Peacekeeping Training Program and School		
	n.a		
페루	페루 군 합동 훈련 기구	n.a	n.a
	Joint Command of the Army Forces		
	n.a		
폴란드	폴란드 국방 대학	n.a	n.a
	National Defence University		
	n.a		
폴란드	폴란드 군 훈련 센터	n.a	n.a
	Military Training Centre for PSOs		
	n.a		
프랑스	경찰 국제활동 훈련센터	n.a	n.a
	Gendarmerie Nationale International Training Centre		
	www.interieur.gouv		
피지	경찰학교	x	1990
	Police Academy		
	n.a		

피지	평화유지군 훈련 그룹	n.a	n.a
	Peacekeeping Force Training Group		
	n.a		
핀란드	핀란드 국제방위군 센터	n.a	n.a
	Finnish Defence Forces International Centre		
	www.fincent.fi		
헝가리	헝가리 방위군 평화 지원 훈련센터	n.a	n.a
	Peace Support Training Centre of Hungarian Defence Forces		
	www.magvaroszag.hu		
헝가리	내무부 산하 국제훈련센터	n.a	n.a
	Ministry of the Interior, International Training Centre		
	www.hirkereso.hu		
호주	호주 방위군 전투훈련 센터	o	1993
	Australian Defence Force Warfare Centre		
	www.defence.gov.au/adfwc		
호주	호주 국제평화활동 작전센터	x	1999
	The Austrian International Operations Command Centre		
	www.bmlv.gv.at		
호주	오스트리아 평화분쟁 연구센터	x	1982
	Austrian Study Centre for Peace and Conflict Resolution		
	www.aspr.ac.at/ipt.htm		

저자주 : 본 표는 국제평화유지활동센터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eacekeeping Training Centres: IAPTC)의 회원국으로 수록된 나라들을 중심으로 저자가 웹사이트 등을 확인하여 만든 것임.

본 표에서 경찰훈련센터가 있는 곳은 o, 없는 곳은 x, 유무여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지 못한 곳은 n.a.로 표기함.

출 처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eacekeeping Training Centres (IAPTC)/ USI - Centre for United Nations Peacekeeping, <http://www.iaptc.org/membership.htm>

이들 평화활동센터를 운영하는 국가들 중 유엔경찰관련 훈련프로그램을 보유한 주요 국가들 및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 북유럽 유엔훈련센터(UNTC)

1997년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등 북구 4개국 국방장관 간 협의로 만들어진 북유럽군 공동체(Nordic Coordinated Arrangement for Peace Support:

NORDCAPS)는 유엔, NATO, EU, OSCE와 관련된 평화유지활동을 사안별로 협의하고 조정하는 대표적인 기구이다. NORDCAPS는 군병력의 평화지원활동(peace support operations: PSO)<sup>146)</sup>과 관련해 기존의 '북유럽 군사협의그룹(Nordic Cooperation Group for Military UN matters: NORDSAMFN)'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sup>147)</sup>

또한 앞서 언급한대로 이들 북유럽 4개국은 유엔 PKO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1960대 중반이래 유엔 상비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1964년부터 '북유럽 유엔훈련센터(Northern Europe United Nations Training Corps: UNTC)'를 설립하고 각 국가별로 전문교육과정을 분담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덴마크는 민간경찰 과정과 민간협력과정을 담당하여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들 국가들은 지역 PO센터와는 별도로 각 국가별 PO센터도 운영하고 있다.<sup>148)</sup> 1956년 중동지역의 유엔 PKO인 유엔긴급군(UN Emergency Force)에 군병력을 파견한 이래 세계 각 지역에 연인원 8만여 명을 참여시킨 스웨덴의 경우 국방부(Swedish Armed Forces) 산하에 국제훈련센터(international training center)를 두고 자국의 군인과 경찰, NGO종사자들을 훈련시킬 뿐 아니라 50여개 국가의 PKO 요원들을 교육시키고 있다.<sup>149)</sup> 이 센터는 별도로 운영되는 파병훈련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해외파병부대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에 역점을 두고 있다.<sup>150)</sup>

### ◎ 호주의 평화유지센터(ADFPKC)

호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유엔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하여 활발하게 평화유지활동을 지원해 왔으며, 초기 군 병력 위주의 파병에서 현재는 그 범위가 경찰, 민간인 등으로 확장되어, 양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현저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호주 방

146) 영국과 북유럽 국가를 비롯한 유럽국가들은 'Peace Operation'이란 용어대신 'Peace Support Operation'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147) Nordic Coordinated Arrangement for Peace Support (NORDCAPS), "Purpose of NORDCAPS," <http://www.nordcaps.org/?id=80>.

148) 김열수, 상동

149) Swedish Armed Forces, "International Training Center, International Activities," <http://www.mil.se/article.php?lang=E&id=7296>

150) 김열수, 상동.

위군(the Australian Defense Department)이 분쟁의 변화양상과 그에 따른 국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1993년 1월부터 기존의 호주방위군전쟁센터(Australian Defense Force Warfare Centre: ADFWC)의 주요 부서로서 평화유지센터(Australian Defense Force Peacekeeping Center: ADFPKC)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호주방위군본부에 있던 합동작전지휘부(Joint Exercise Planning Staff)가 1997년부터 ADFWC로 재배치됨에 따라 특정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과정을 거친 군-관-민 요원들을 해외작전에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sup>151)</sup>

ADFWC는 유엔임무와 같은 합동작전에 대비한 보다 실질적인 훈련을 통하여 현지의 작전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특히 앞서 언급한 ADFPKC는 평화유지활동이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가진 부서로서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다. ADFPKC는 평화유지활동에 관련한 전문가를 보유하고 관련 경험들을 축적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호주방위군에 대한 작전프로그램 지원, 평화유지활동 관련 전술 및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정기적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내외의 저명한 학자, 연구원, 군, 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적극적인 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sup>152)</sup>

한편, 위의 IAPTC가 정리한 표에는 나타나있지 않지만, 2004년 2월 설립된 호주의 '국제파견그룹(International Deployment Group: IDG)에서는 호주와 태평양섬국가들의 해외파병을 관리, 교육하고 있으며,<sup>153)</sup> 한국 경찰 PKO 파견시 위탁교육의 장소로도 고려되고 있는 기관이다.<sup>154)</sup>

### ◎ 캐나다의 피어슨 평화유지활동 센터(PPC)

151) Australian Defense Force, Peacekeeping Center, "About the Center," <http://www.defence.gov.au/adfwc/peacekeeping/index.htm>.

152) 다양한 실전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ADFPKC는 파병되는 지역정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작전수행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어, 호주방위군에 대한 훈련 외에도 유엔경찰에 파견하는 병력들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Australian Defence Force Warfare Centre (ADFWC), "About the Center," <http://www.defence.gov.au/adfwc/peacekeeping/>

153) Australian Federal Police, "International Deployment," <http://www.afp.gov.au/international/IDG.html>.

154) 저자가 2007년 3월 경찰청의 한 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다.

캐나다의 피어슨 평화유지활동 센터(Pearson Peacekeeping Center: PPC)는 1994년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31개국에서 15,000명 이상의 민-관-군 전문가들이 훈련과정을 이수했을 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sup>155)</sup> 과거 발생한 분쟁에 대한 연구자료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분쟁의 양상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전문적이고도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편성한 결과이다. 공식적으로는 비정부기관이지만, 운영과 관련한 상당부분의 자금이 캐나다 정부로부터 지원된다.<sup>156)</sup>

PPC는 분쟁지역에서 근무하거나 근무예정인 군병력 이외에도 민간인과 경찰병력을 상대로 한 워크숍, 평화활동 시뮬레이션, 회의 등을 통하여 보다 다차원 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효율적인 문제해결을 모색한다. 특히 PPC에서는 ‘작전 지역에서의 경찰임무’에 관련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두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경찰활동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PPC는 유엔 PKO와 관련하여 민-관-군에 대한 작전상의 훈련 및 민군 협조과정 이외에도 인권교육, 병참교육, 위기관리 교육, 조기 경보 및 조기 대응 교육 등 다차원적인 문제에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훈련을 통하여 해당 임무에 적합한 인원을 파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sup>157)</sup>

### ◎ 방글라데시 평화지원센터(BIPSOT)

방글라데시는 유엔 PKO의 모든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으로는 눈에 띄게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1988년 유엔평화지원활동(UN Peace Support Operations: UNPSO)에 참가하기 시작한 방글라데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평화유지활동을 지원해 왔고, 그 결과 1996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력을 제공하는 나라가 되었다. 또한 1999년 6월 평화유지활동훈련센터(Peacekeeping Operation Training Center: PKOTC)

155) PPC는 1957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는 캐나다의 전(前) 수상 레스터 피어슨(Lester B. Pearson)을 기려 만들어졌다.

156) Canana Pearson Peacekeeping Center, “Our Mission,” <http://www.peaceoperations.org/web/1a/en/pa/6CAA0C1E716A4A4B98DE0F0468E66617/template.asp>; 신명순, “캐나다 평화유지활동(PKO)과 한국·캐나다 협력방안 고찰.” □캐나다연구□. Vol 13, No.1 (2002년 9월), pp.25-50.

157) Canana Pearson Peacekeeping Center, “What We Do,” <http://www.peaceoperations.org/web/1a/en/pa/E3EF6D7E05604ABB9717DEEE5A99B913/template.asp>.

를 설립하고 난 이후에는 보다 체계적인 훈련을 받은 인력을 세계 각국으로 파견할 수 있게 되었다. 2002년 1월 PKOTC는 방글라데시평화지원활동센터(Bangladesh Institute of Peace Support Operation Training: BIPSOT)로 개명하고, 군인들뿐 아니라 PO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방글라데시인들의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다.<sup>158)</sup>

PKOTC의 경우, 남아시아의 유엔 PKO에서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기 위해 매년 유엔 임무에 참여하는 많은 국가들과 함께 정기적인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MPE-2, CPX on HA/DR 과 같은 합동 가상훈련을 실시하여 유엔평화유지 활동 시 요구되는 국가 간 합동훈련에 대비한 교육에 집중하고 있다.<sup>159)</sup> BIPSOT로 명칭이 변경된 후 센터의 임무와 기능이 더욱 다양화되어 옵서버 과정, 상비부대 간부교육, 참모장 교과과정, 파병부대 훈련 지원 등과 더불어 경찰 교육지원과정을 운영하고 있다.<sup>160)</sup>

#### ◎ 러시아의 경찰평화유지활동 훈련센터(PPTC)

러시아는 1992년부터 경찰을 처음 파견한 이후로 1999년까지는 파견병력 수를 41명 이하로 제한하였지만, 2007년 8월 현재 총 122명의 러시아 경찰병력이 코소보를 비롯한 보스니아, 그루지야,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 콩고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1997년 이래 경찰병력에 대한 훈련을 위한 센터를 운영해왔으며, 2000년 5월에는 경찰 평화유지활동 훈련센터(the Police Peacekeeping Training Center: PPTC)를 설립하여 곧 파견할 경찰들 뿐 아니라 향후 파견할 수 있는 경찰인력들에 대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158) Bangladesh Institute of Peace Support Operation Training (BIPSOT), "Home," <http://www.bipsot.net/>.

159) 이들의 훈련 과정은 총 4개로 분류되는 데, 우선 첫 번째는 파견 전 단계로 파병을 준비하는 부대는 2주간 각각의 파견지역에 적합한 훈련을 통하여 효율적인 임무수행과 예상되는 위협에 대해 대비를 하는 훈련을 한다. 두 번째는 파병결정이 정해진 군에 대한 훈련으로, 이들은 총 4주간의 훈련을 통하여 평화활동에 관련하여 일반적인 것에서부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것까지 훈련 받게 된다. 세 번째는 군 감시단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일 년에 두 번 각각 4주간에 걸쳐 군 감시단으로서의 임무에 대해 익히고 해당 임무에서의 효율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 훈련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특별 훈련 프로그램으로 유엔평화활동에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분쟁 법, 국제 인도 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밖에 임무수행시 발생할 수 있는 폭도들에 의한 데모, 자연재앙, 구호 활동 등에 대한 대비 훈련을 실시한다. Bangladesh Institute of Peace Support Operation Training (BIPSOT), "Training Information," <http://www.bipsot.net/trai.html>.

160) Bangladesh Institute of Peace Support Operation Training (BIPSOT), 상동.

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PPTC는 경찰의 활동이 초기에는 단순한 컨설팅과 모니터링에 한정되어 있었던 것에 비해, 현재는 법의 강제(law enforcement) 기능까지 포괄하는 등 복합적이고 광범위해진 데에 착안, 그에 걸맞은 훈련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sup>161)</sup>

PPTC의 훈련프로그램은 유엔의 역할과 기능 등과 같은 일반적인 것을 포함하여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유엔작전환경 속에서 요구되는 국제인권법까지 그 범위가 다양하다. 특히 유엔경찰과 관련해선 파견 지역 로컬경찰병력에 대한 선발 및 훈련, 안전 및 위기 관리 훈련, 파견지역 모니터링, 지도읽기와 차량 운전, 정보 습득과 협상 기술 등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프로그램은 유엔에서 권장하고 있는 유엔표준훈련기준에 따르고 있다.<sup>162)</sup>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각국의 평화유지활동을 지원, 교육하는 기관으로 범정부차원의 PO센터와 군병력 훈련을 주 임무로 하는 군 차원의 훈련센터를 들 수 있다. 기관운영 형태에 따라 군인들만을 위한 독자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별도형,’ 교육과 정책 및 훈련을 분리하여 운영하되 국방부가 평화활동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하는 ‘일부 분리 혹은 일부 통합형,’ PKO 전문교육과 연구만이 아니라 부대훈련을 모두 군의 PO 훈련센터에서 진행하는 ‘통합형’으로 나눌 수 있다. 방글라데시, 네팔과 같은 개발도상국들은 통합형 PO센터나 유사한 기관을 운영하는 반면, 독일이나 태국의 경우는 일부 분리운영을 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는 피어슨 평화센터(PPC)가 PO와 관련한 교육과 연구활동을 진행하는 국가급 PO센터라면, 캐나다 평화지원훈련센터(Canadian Forces Peace Support Training Centre: PSTC)는 부대훈련을 담당하는 분리형 기관이라 할 수 있다. 군 차원의 PO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형태이고, 후자는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하는 군인들을 훈련하는 분리형 센터라 할 수 있다.<sup>163)</sup> 덧붙여 주목할 것은 러시아는 경찰 PO센터가 있는 반면, 별도의 PO센터를 운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161) Russian Federal Police Peacekeeping Training Centre (PPTC), “General Information,” [http://www.ptc.h10.ru/eng/eng\\_index.htm](http://www.ptc.h10.ru/eng/eng_index.htm).

162) Russian Federal Police Peacekeeping Training Centre (PPTC), “Learning,” [http://www.ptc.h10.ru/eng/eng\\_index.htm](http://www.ptc.h10.ru/eng/eng_index.htm)

163) 김열수, “국가급 평화활동(PO)센터 설립방안,” 상동.

이 밖에도 여러 나라들이 PKO 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나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평화강제활동이 '주권존중과 불간섭'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임을 역설해 온 중국은 21세기 들어 급변하는 안보정세에 부응하고, 국가위상에 걸맞은 국제사회의 영향력제고를 위해 유엔 PKO에 많은 인원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2004년 국방부 산하에 부대파견과, 관찰요원과, 법제과 등 3개의 PKO 부처를 신설하였고,公安部 소속으로 PKO 훈련센터를 설치하여 옵서버, 참모요원, 경찰요원 등을 교육하고 있다.<sup>164)</sup> 칠레의 경우, 1993년 칠레 합동평화유지센터(the Chilean Joint Corps for Peacekeeping Centre: CECOPAC)를 설립하였다. CECOPAC은 평화유지활동에 관련한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부서와 평화유지활동에 관련한 직접적인 훈련을 담당하는 훈련 부서를 따로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평화지원활동(PSO)에 파견될 민간요원, 경찰, 군인들을 교육 훈련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sup>165)</sup>

<표 11>을 토대로 살펴보면, 국제평화유지활동센터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eacekeeping Training Centres: IAPTC)의 회원국으로 수록된 총 53개국, 72개 PKO나 PO 관련 교육훈련 센터나 기관들 중 8개국(독일, 방글라데시, 러시아, 세네갈,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의 관련 웹사이트에서만 경찰 PKO에 관한 교육훈련과정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중 독일연방경찰학교(Federal Police Academy), 러시아 경찰평화유지활동 훈련센터(Police Peacekeeping Training Centre), 싱가포르 경찰국(Singapore Police Force) 등 세 곳만이 경찰 PKO 요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한 별도의 기관이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나머지 5개국의 기관에서는 군병력 위주의 PKO 파견요원들을 교육하는 가운데,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경찰 PKO 훈련과정이 있거나 민-관-군 통합교육과정에 경찰을 포함시켜 교육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IAPTC의 웹사이트 정보에 따르면, 17개국 23개 기관들에서는 경찰 파견요원을 교육 훈련시키는 별도의 과정이나 통합프로그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나머지 기관이나 센터의 경우 그 웹사이트에 PKO 파견요원들 교육훈련에 경찰

164) 김열수, 상동, p. 64. 중국은 아직까지 국제평화유지활동센터연합(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eacekeeping Training Centres: IAPTC)의 회원국으로는 등록되어있지 않다 (<표 12> 참조).

165) Chilean Joint Corps for Peacekeeping Centre (CECOPAC), "Mission," <http://www.cecopac.cl/ENGLISH/inicio.htm>.

요원이 포함되어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거나 웹사이트가 존재하지 않아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sup>166)</sup> 이와 별도로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의 PKO 센터가 조사한 각국의 PKO 전문기관을 살펴보면, 방글라데시와 더불어 네팔, 스리랑카, 가나에서도 군, 경찰 및 민간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sup>167)</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경찰 PKO 파견요원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기관이나 훈련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 국가급 경찰 PKO센터 설립 및 활성화 방안

#### 1) 한국의 PKO/PO 센터 설립추진 현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방부는 PKO에 관한 정책의 연구와 민-관-군을 포괄하는 통합적인 교육을 국가차원에서 담당하게 될 PKO센터의 설립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다. 국가급 PKO/PO센터가 개설되면 해외평화활동에 관한 정부방침과 운영체계의 일관성이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가수준의 노력과 함께 민간단체인 제주평화연구원의 PO 센터 설립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소재 국제평화활동센터(PKO 센터)를 중심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국가급 PKO/PO센터 설립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합동참모대 PKO 센터는 경찰, 외교관, NGO 단체를 포함한 해외파병간부교육, PKO 교리발전 및 정책연구, 대내외 관련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및 자료전파, 그리고 교육 및 자료지원을 주요 임무로 삼고 있다.<sup>168)</sup>

합동참모대의 PKO 센터 건립을 위한 연구와 관련하여 그 설립 및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온 국내 연구가들에 따르면, 국가급 PO 센터 설립을 위해서는 3단계의 점진적 과정이 필요하다. 우선 현행 1단계(2007년)에서는 국방부 소속의 국가급 PO센터를 설립하

166)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eacekeeping Training Centres (IAPTC)/ USI - Centre for United Nations Peacekeeping, <http://www.iaptc.org/membership.htm>.

167)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PKO 센터, “PKO 현황,” <http://www.kndu.ac.kr/jfsc/>.

168)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PKO 센터, “임무/기능,” <http://www.kndu.ac.kr/jfsc/>.

기 위해 센터의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센터의 소속, 시설위치, 예산편성 등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2단계(2008-2009년)에서는 국가급 PO센터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PKO관련 지식과 경험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센터를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사안, 시설위치, 예산편성 등의 준비를 해야 한다. 3단계(2010년 이후)에서는 국가급 PO 센터로서 임무와 기능이 충실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2단계에서 군과 관련된 요소 중 교육과 훈련을 동시에 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군 PO 센터로 이전해야 한다. 또한 PKO/PO 센터를 설립할 때 그 명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PKO라는 용어의 익숙함을 고려할 때 '한국 PKO센터'가 무난하고 대중적 인지도도 높을 것 같기는 하나, 전통적 평화유지를 강조하는 PKO와 평화재건이나 치안, 인도적 문제 등을 포괄하여 다루는 PO의 개념이 유엔에서 달리 사용되고 있고 센터업무를 포괄한다는 측면에서는 '한국 PO'센터로 불러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sup>169)</sup>

한편, 제주평화연구원의 경우, 2006년 3월 유엔군축담당 사무차장을 역임한 일본의 아카시 야수시(Akashi Yasushi) 대사가 제주도에 PO센터의 유치 필요성을 거론하고, 같은 해 6월 장 마리 게노(Jean Marie Guehenno) 유엔 DPKO 사무차장이 향후 한국에 PO센터가 설립될 경우 유엔이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을 표명하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 연구원은 2006년 10월 평화활동지역센터(가칭)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2007년 12월까지 PKO센터에 대한 장기적 비전목표를 제시하고 설립추진을 위한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평화활동지역센터의 구체적인 임무 및 역할, 조직 구조, 인력구성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sup>170)</sup>

두 경우 모두 PKO/PO센터가 설치될 경우, 군사적 PKO 요원 중심으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질 것이고, 비군사적 파견요원들에 대한 교육은 민-관-군 합동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나 국내외 PKO 참여요원들에 대한 공통 교육을 통해서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는 경찰 요원, 특히 대규모 경찰부대가 파견시 요구되는 필수적 절차인 교육훈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다. 또한 구호나 지원이 필

169) 김열수, 2006년 상동; 김선범, "PKO 센터 활성화 방안," 합동참모대 주관 제 1회 PKO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2005년 11월 29일.

170) 고성윤, 김열수 외, 상동.

요한 곳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현지 경찰력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장기적인 목적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것이 ‘경찰기동력(Standing Police Capacity: SPC)’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데,<sup>171)</sup> 이 역시 독립적인 교육훈련기관이 필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경찰 UN-PKO의 효율적 활용방안 및 체계적인 교육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해 요원을 위한 교육을 독립적인 경찰 PKO센터를 설립하자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 정원,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과 관련하여 단시일 내에 독립적 기관이 설립되지 못할 시, 국가급 PO센터 내에서 경찰요원의 교육훈련을 별도로 다루는 하부조직(sub-system)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단시일 내에 독자적인 경찰 PKO 센터를 설립하거나, 여러 가지 여건상 (적어도 당분간은) 국가급 PKO/PO 센터 내에 하부조직으로 경찰 PKO 센터가 마련되는 경우라도 센터의 분명한 비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시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캐나다의 피어슨평화유지활동센터(PPC)와 러시아의 경찰평화유지활동 훈련센터(PPTC)의 모델 및 제주평화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PKO/PO 센터건립과 관련된 계획 등을 참고하여, 경찰 PKO 센터설립에 관한 비전, 설립방향 및 센터의 기능과 설립모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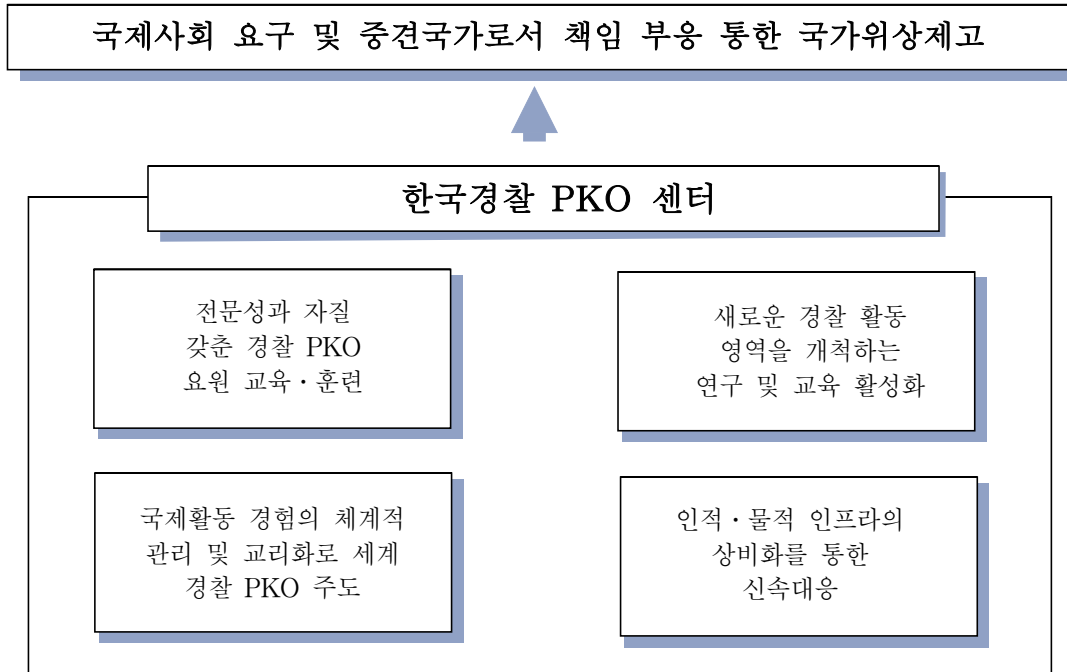
## 2) 경찰 PKO/PO 센터의 비전 및 설립방향

□대한민국 경찰 PKO 센터□(가칭)는 범국가적 평화활동(PKO/PO) 업무를 지원하는 동시에 경찰의 PKO/PO활동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그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은 비전에 따라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 경찰의 PKO/PO 참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증가에 부응하고, 국제사회의 중견국가로서의 책임이행을 통한 국가위상제고를 위하여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경찰 PKO 요원을 교육 훈련시킨다.

171) ‘경찰 기동력(Standing Police Capacity)’이란 즉각적이고도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면서도 장기적인 관점의 국가 재건을 지원하는 경찰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엔에서 만들어낸 용어이다.

- 글로벌시대, 상호의존시대를 맞아 새로운 경찰 활동영역을 개척하는 연구와 교육을 활성화한다.
- PKO/PO 참여를 위한 한국 경찰의 국제적 활동역량과 체계화된 실전경험을 획득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한다.



□대한민국 경찰 PKO 센터□(가칭)의 궁극적인 목표는 PKO에 참여하는 경찰요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지원체계를 수립하는데 있다. 따라서 국방부, 외교통상부, 국무총리실 등 관계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통해 해외파견 노하우 및 PKO 활동과 관련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확보해야 하며, 유엔 및 제반 지역전문가, 학자, PKO 근무경험자들로 구성된 국제활동센터를 지향해야 한다.

독자적인 경찰 PKO/PO센터를 설립할 경우,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국무총리실 산하 센터를 설립할 경우 행정부 내 신규 독립기구 형태로 하며, 센터의 정체성 및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부, 훈련부, 교육부, 국제교류부, 기획업무부를 두어 경찰 PKO 요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및 경찰 PKO 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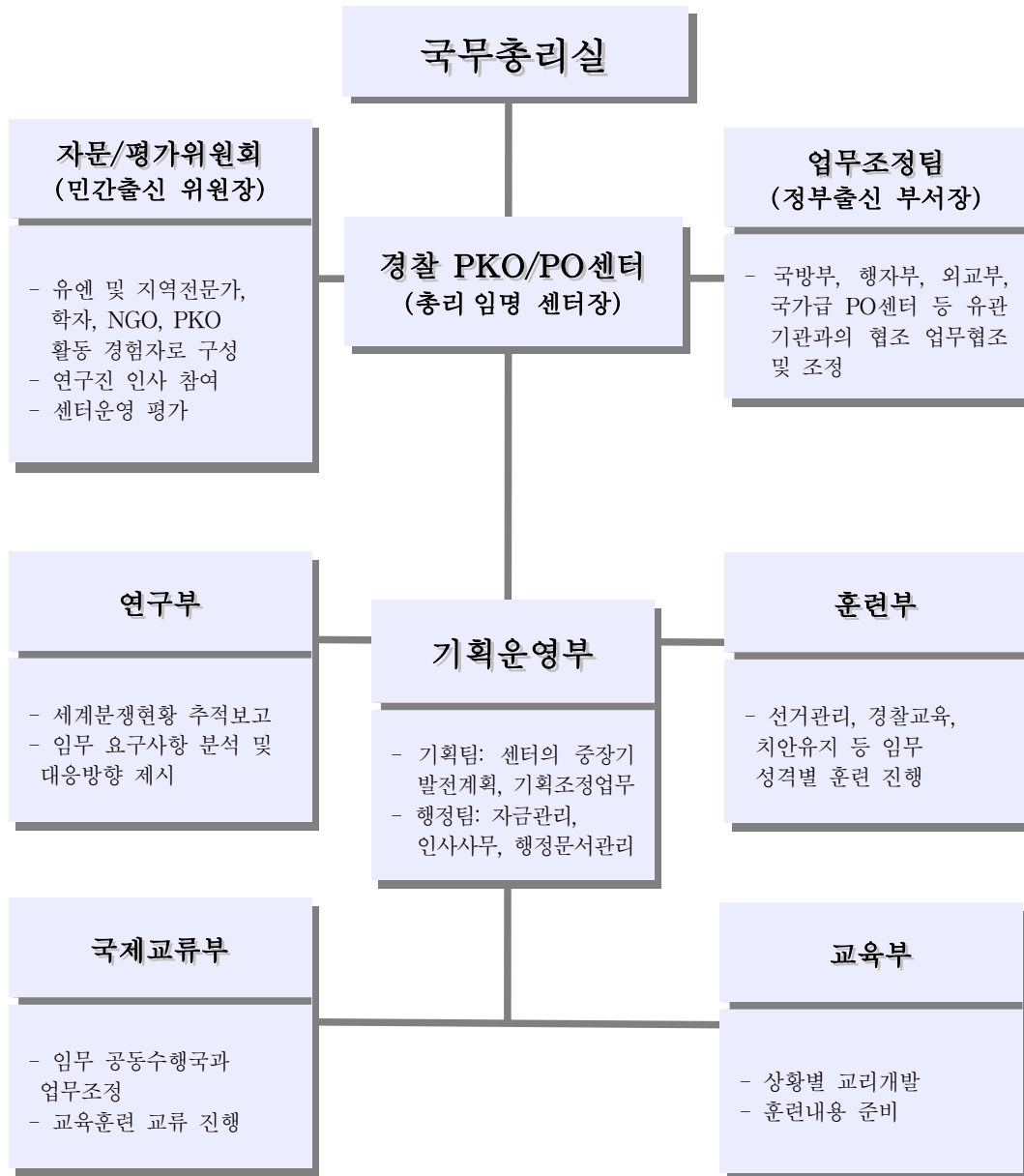
화를 위한 교리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업무조정부를 두어 유관 정부부처 및 향후 설립될 국가급 PKO/PO 센터와의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센터의 효율성과 투명성제고를 위해 자문/평가위원회나 이사회를 구성하고 중장기 발전 계획이나 PKO/PO 임무에 대한 추진과 심사, 그리고 자금관리 및 운용에 대한 감사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 제약에 의해 단시간 내에 경찰 PKO요원들을 위한 전담기구를 만들지 못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향후 설립될 국가급 PKO/PO 센터 내에 하부조직으로 경찰 PKO 센터를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림 3>에서처럼 군, 경, 민간요원 교육훈련을 총괄한 ‘민-관-군 통합 PKO센터’ 체제도를 만들 수 있으나, 이 경우 군위주의 PKO/PO 활동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림 4>과 같이 국가급 PKO/PO 센터 내 경찰과 군 PKO를 분리하고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여 운영하는 것이 경찰 PKO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최근 추진되고 있는 PKO 참여법률안이 상정될 시 그 안에는 다변화된 평화임무에 대한 인식과 함께 경찰인력을 포함한 비군사요원의 PKO 참여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인력을 포함한 PKO 참여요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통합소양교육 및 성격별 전문교육, 그리고 훈련과 관계된 사안 등이 법률이나 시행령에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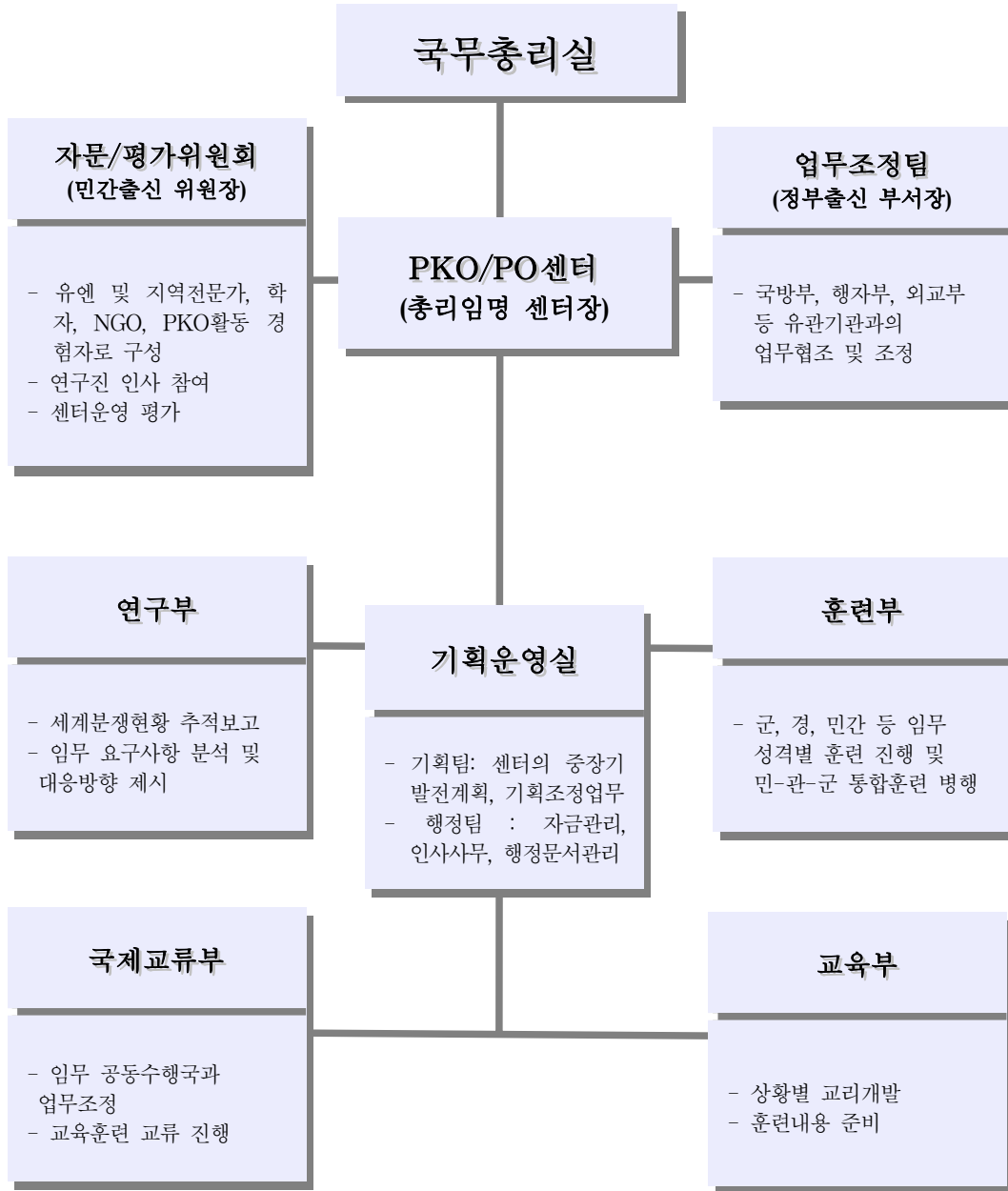
효율적인 교육과 훈련을 위해 되도록 빠른 기간 내에 이를 주관하는 PKO/PO센터를 설립하고 특정 교육이나 훈련을 담당할 기관(들)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센터설립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보완할 국내 타 교육기관에 특별교육을 위탁하거나 외국 기관이나 PO센터 등에서 과견을 보내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sup>172)</sup> 이러한 계획은 경찰 PKO센터가 독자적 기관으로 설립되거나 국가급 PKO/PO 센터의 하부조직으로 만들어 지는가에 상관없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172) 제성호, 상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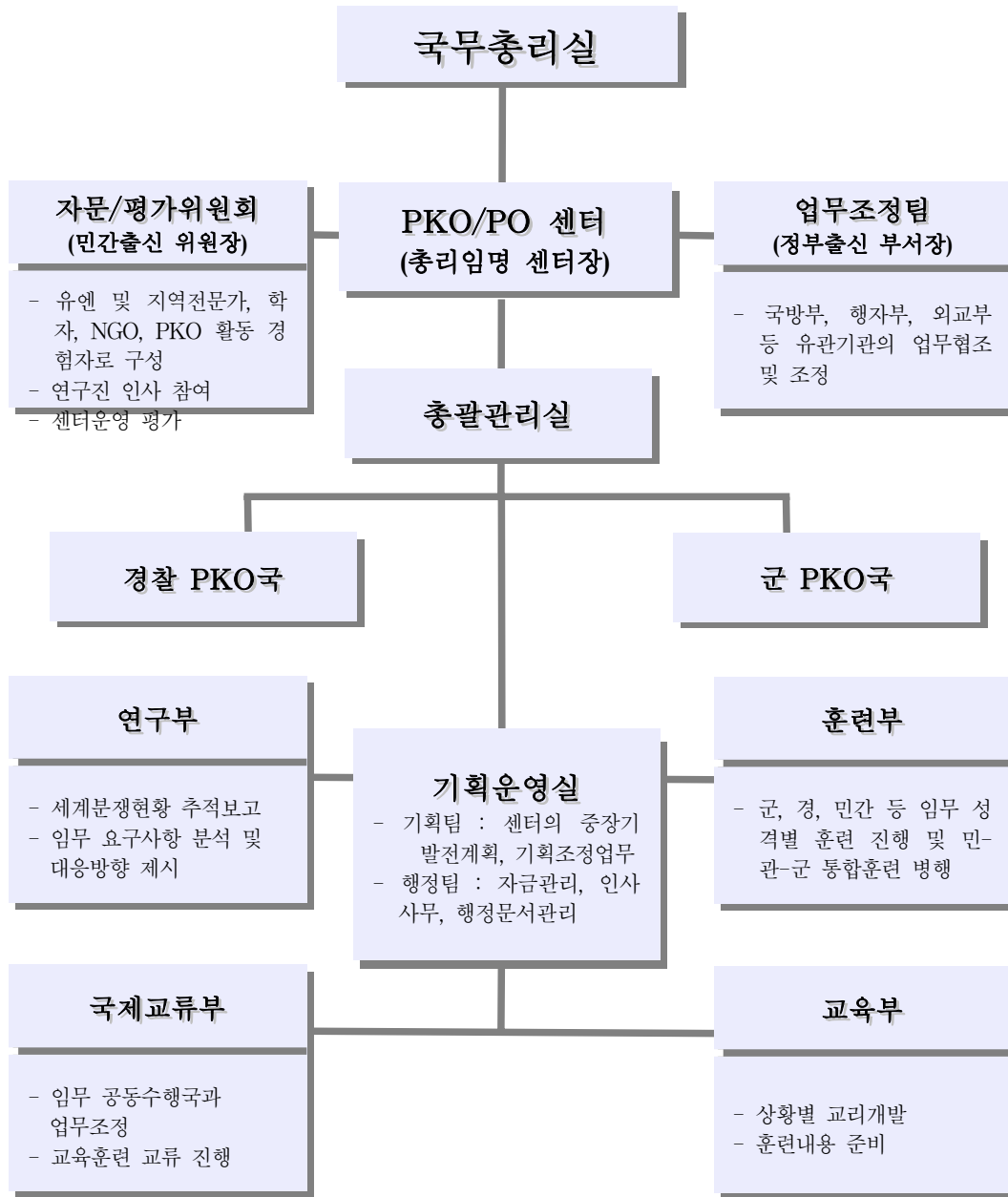
<그림 2> 경찰 PKO/PO센터 설립시 체계도



<그림 3> 국가급 PKO/PO 센터 체계도



<그림 4> 국가급 PKO/PO 센터 내 경찰과 군 PKO 분리운영시 체제도



### 3) 센터의 기능과 활성화 방안

국무총리 산하 경찰 PKO/PO센터가 설립되면, 총리임명 센터장의 총 책임 하에 연구부, 훈련부, 교육부, 국제교류부, 업무조정부 등 5개 부서와 기획운영실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연구부는 세계분쟁현황을 추적하고 관련 데이터를 축적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개연성이 높은 지역과 세계 각지의 분쟁관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경찰 PKO 임무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경찰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평화활동 참여정책을 연구한다. 특히 □경찰 PKO 연감□(가칭)을 연 1회 발간하고, □e-경찰 PKO 뉴스레터□(가칭)를 1-2주에 한 번씩 인터넷을 통해 배포한다.

훈련부는 선거관리, 경찰교육, 치안유지 등의 임무와 관련한 성격별, 유형별 훈련을 진행하며, 경찰 PKO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힘든 훈련의 경우, 관련 기관에 위탁훈련을 맡긴다. 여성경찰의 수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성(gender)을 고려한 특별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파견지 경찰교육 및 훈련 업무를 담당할 훈련관에 대한 특별훈련과정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경찰 PKO 참여대상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상황별 PKO 교리를 개발하고, 훈련내용을 숙지시키고, 파견될 지역이나 세계 분쟁지역에 대한 참여대상자들의 이해도를 높인다. 또한 현 교육능력을 분석하고 추가 교육수요를 파악한 후 교육대상자, 시기, 교과과정 구성 등에 관한 세부적 안을 마련한다. 한편, PKO는 참여유형에 따라 유엔 DPKO에서 교육, 훈련, 행정을 담당할 본부요원, 특별고문, 훈련관, 자문관 등으로 근무하게 될 PKO 현장요원 등으로 나뉘게 되는데 훈련부와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특별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더불어 민-관-군 통합교육과정도 부분적으로 도입하여 경찰들이 현장에 파견되었을 때 모든 PKO 참여자들과의 공동업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시킨다. (<그림 5> 참조).

국제교류부는 PKO 임무 공동수행국과 업무조정을 하고 해외 PKO 센터나 관련 교육훈련 기관과 교류를 진행하며, 유관 연구기관과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특히 센터를 건립한 후 초반기에는 PKO 파견후보자를 국방부 PKO센터나 해외 PKO 센터에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안이 검토될 수 있다. 한 예로 2006년 6월 한국 경찰청장이 호주를 방문하여 호주연방경찰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경찰 PKO 요원들을 IDG에서의 교육훈련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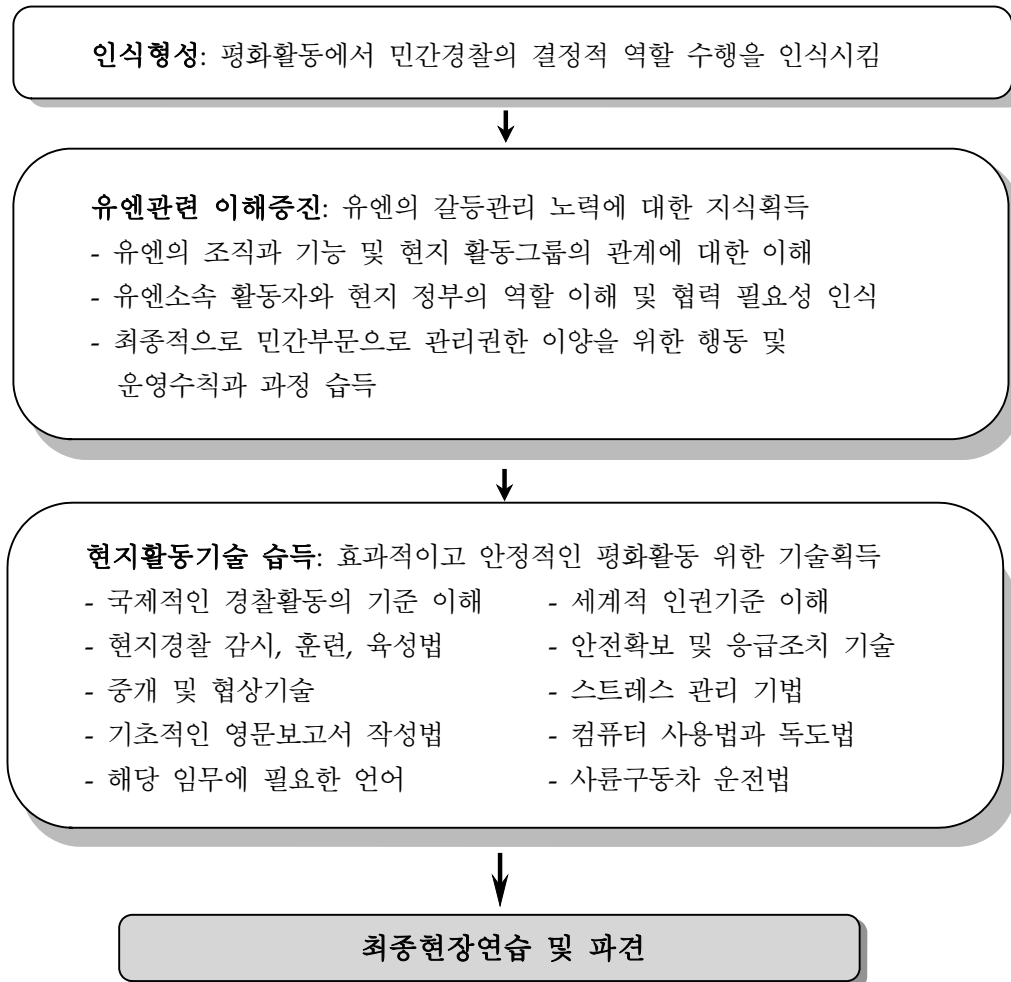
지원의사를 표명한 바 있는데,<sup>173)</sup> 이러한 국제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센터가 안정기에 접어들면, 센터 내 국제교류부와 협력하여 해외 경찰PKO 파견요원들에 대한 위탁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업무조정부는 정부출신 부서장의 책임 하에 경찰청, 국방부, 행정자치부, 외교통상부, 국가급 PO센터 등 국내의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방안을 구축한다. 한편, 유엔 PKO 참여경찰들의 급여, 특수수당 등 처우제도가 미흡한 실정인데, 정원, 예산과 관련하여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PKO에 참여하는 개개 경찰요원들이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법적지위와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일관된 노력을 경주한다.

기획운영실은 센터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업무기획과 조정을 담당하는 기획팀과 자금관리, 행정문서관리, 인사사무를 담당하는 행정팀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상기 5개 부서에 행정지원을 제공한다. 이에 덧붙여 유엔 및 지역전문가, 학자, NGO종사자, PKO 활동경험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평가위원회를 두어 센터운영을 평가하고 자금운영 등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73) 저자가 2007년 3월 경찰청 직원과의 인터뷰에서 얻은 정보이다.

<그림 5> 경찰 PKO/PO 센터에서의 교육훈련 과정



\* 각 훈련 단계에서 모든 파견 후보자들은 유엔 소속의 선발보조팀 (Selection Assistance Team: SAT)에 의한 시험을 치름.

## VI. 결 론

PKO에 대한 규정이 현장에는 명시되어있지 않지만, 유엔은 이를 통해 지난 60여년에 걸쳐 지구촌 곳곳의 분쟁에 개입하여 왔다. 비록 여러 PKO들이 그동안 실패하였거나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지만, 분쟁지역이나 평화협상이 진행 중인 여러 곳에서 평화유지군의 주둔과 평화유지 역할이 긴장을 줄이고 평화조성 및 분쟁해결에 중대한 공헌을 해왔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sup>174)</sup> 또한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아직까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한편, 1964년 처음 시작된 경찰의 PKO 참여 역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유엔 PKO 전반을 관장하는 DPKO의 조직을 살펴보면, DPKO의 수장인 사무차장(Under-Secretary General: USG) 직속으로 동등한 위상의 군 부처(military division)와 경찰부처(police division)가 있을 정도로 PKO에 있어 경찰의 역할은 중요하다. 또한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경찰활동 영역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국제사회에서의 국위선양을 위해 경찰의 PKO 참여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에 부응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2007년 9월 현재 5명의 한국경찰이 동티모르에서 PKO 임무를 수행 중에 있으며, 중대급 경찰부대 파견에 대한 검토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7월 아프간 탈레반 인질사태 및 3개월 앞으로 다가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라크와 레바논 등에 파병된 한국군 문제가 논란거리가 되면서 군병력, 경찰인력, 민간인파견 등 어느 유형의 PKO 참여도 정치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부대를 파견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는 PKO 임무수행을 위한 파견을 미국 정부의 이라크전쟁과 같은 다국적군 파병과 동일시하는 여론 등이 주요 요인이므로 시간을 두고 그 차이점을 주지시키고, PKO 수행의 당위성과 필요성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즉 군사적인 측면에서 외국 군대나 경찰들과의 연합작전 경험 및 평화재건임무 등을

174) 이신화, 2005, 상동.

통해 경험을 축적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을 뿐 아니라, 모범적인 평화유지활동을 통해 현지 정부나 주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호의적 인식을 심어주어 국가이미지와 위상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도 임무지역의 혼란상황이 진정된 후 재건지원 및 경제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선점할 수 있다는 실익이 있다는 점도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즉, PKO 참여는 세계평화를 위한 의무로서 한국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보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국제질서 형성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동시에, 국가발전을 위한 기회 또한 발견할 수 있는 ‘윈-윈 게임’이라는 것을 주지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PKO 참여 등과 같은 해외 활동으로 인한 사상자 발생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표 11>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경찰의 PKO 참여의 경우 사망자 비율이 전체 참가자의 0.03% 정도로 국내 임무수행 중 순직한 경찰관 수의 비율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에 대한 홍보를 통해 평화유지활동이 어느 정도 안전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경찰 PKO 참여에 관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제고해야 하겠지만, 이는 인식변화를 요구하는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경찰 PKO와 관련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통해 경찰부대의 파견을 위한 기틀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규모의 경찰부대파견시 요구되는 필수적 절차인 교육훈련과 향후 실질적인 참여효과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국가급 경찰 PKO센터 설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적극적 경찰 PKO활동을 위해서는 경찰 PKO 파견대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독립적인 경찰 PKO 센터가 생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예산, 정원,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여러 가지 제약사항을 고려해볼 때, 단시일 내에 경찰 PKO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센터가 설립되는 것은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가급 PKO/PO 센터 설립이 가시화 되고 있는데, 이 역시 군사적 PKO 요원 중심으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질 것이고, 비군사적 파견요원들에 대한 교육은 민-관-군 합동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나 국내외 PKO 참여요원들에 대한 통합 교육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는 경찰 요원, 특히 대규모 경찰부대가 파견시 요구되는 필수적 절차인 교육훈련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결론적으로, 독립적 기관이 설립되지 못할 시 국가급 PO센터 내에서 경찰요원의 교육 훈련을 별도로 다루는 하부조직(sub-system)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하부조직으로 경찰 PKO 관련부서가 마련되는 경우라도 부서의 분명한 비전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명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이를 독립적인 경찰 PKO 센터로 전환, 발전시키는 교두보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경찰청, “국제 정세와 치안환경 변화,” □2006년 경찰백서□, <http://www.police.go.kr/pds/whitePaperView.do?code=007007>.
- 고성윤, 김열수 외, □유엔 평화활동 지역센터 구축방안 기초연구□,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 보고서 06-1, 2007년 3월.
-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국제평화활동센터, “성(性) 주류화,” □다차원 유엔평화유지활동□, 2003년 11월.
- 국방부, “한국군의 UN 평화유지활동,”(2007년 7월 현재), <http://www.mnd.go.kr/help/etc/index.jsp>.
- 국방부, “해외파병현황,” (2007년 7월 현재), <http://www.mnd.go.kr/policyFocus/koreanSolider/overseas/index.jsp>.
- 국방개혁위원회 편, □국방개혁 2020□, 서울: 국방부, 2005년 11월.
- 국정홍보처, “대한민국, 세계를 품는다, 국제기구 분담금 늘려 국가 이미지 개선,”□코리아플러스□, 제 65호, 2007년 7월 1일.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파견에 관한 법률안(김명자의원 대표발의)과 국군부대의 국제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송영선의원 대표발의)”, 2006년 9월.
- 김선범, “PKO 센터 활성화 방안,” 합동참모대 주관 제 1회 PKO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2005년 11월 29일.
- 김열수, “한국군의 평화활동: 회고와 전망,” □해외파병사 연구총서□, 제 1집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 김열수, □국제지구를 통한 분쟁관리: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PKO)□ (서울: 오름, 2000).
- 김열수, “국가급 평화활동(PO)센터 설립 방안,”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PO센터, □국제 평화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방안□, 제 2회 PKO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2006년 10월 24일.
- 김열수, “PKO 참여법안의 향후 제정방향,” 외교통상부 주최 PKO 참여법안 세미나 발표문. 2007년 4월.
- 박홍순, “한국전쟁과 UN의 개입(1950): 과정과 배경,” 강성학 편, □유엔과 한국전쟁□ (서울: 리북, 2004).

- 박흥순, “한국의 PKO 업무수행체제 개선방안-민·관·군 통합적 접근의 모색,”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PO센터□국제 평화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방안□, 제 2회 PKO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2006년 10월 24일.
- 신명순, “캐나다 평화유지활동(PKO)과 한국·캐나다 협력방안 고찰.” □캐나다연구□, Vol 13, No.1(2002년 9월), pp.25-50.
- 이서향, “한국의 PKO 정책과 실제,” 강성학 편저, □동아시아의 안보와 유엔체제□(서울: 집문당, 2003).
- 이신화, “국제분쟁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역할을 중심으로,” □신아세아□, 제 11권 제4호 (2004), pp. 61-85.
- 외교통상부, 국제연합 “유엔예산 및 분담금,” (2007년 7월 현재), <http://www.mofat.go.kr/index.html>.
- 인남식,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병의 의미와 과제,”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7년 6월 18일, [http://www.ifans.go.kr/ICSFiles/afieldfile/2007/06/28/jbins07\\_20.pdf](http://www.ifans.go.kr/ICSFiles/afieldfile/2007/06/28/jbins07_20.pdf).
- 제성호, “한국의 PKO참여 법률의 제정방향,” 국방대학교 합동참모대학 PO센터, □국제 평화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방안□, 제2회 PKO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2006년 10월 24일.
- 최용호, □한국군 동티모르 파병과 띠모르레스떼 탄생□(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 허남성, 김열수, 최종철, □한국군의 국제적 역할 확대방안: 평화유지 활동을 중심으로□, 2002년도 국회 국방위원회 정책연구 용역과제 보고서, 2002년.
- Aboagye, Festus B. and Alhaji M. S. Bah. “Liberia at a Crossroads: A preliminary look at the United Nations Mission In Liberia (UNMIL) and the protection of civilians.” ISS Paper 95, November 2004.
- Aboagye, Festus B. and Martin R. Rupiya. “Enhancing Post-Conflict Democratic Governance through effective Security Sector Reform in Liberia.” In *A Torturous Road to Peace: The Dynamics of Regional, UN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Interventions in Liberia*, edited by Festus Aboagye and Alhaji M. S. Bah. Pretoria: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May 2005.
- ActionAid. “MINUSTAH: DDR and Police, Judicial and Correctional Reform in Haiti, Recommendations for change.” ActionAid, July 2006.
- Adelman, Howard. “Refugee Repatriation.” In *Ending Civil Wars: The*

- Implementation of Peace Agreements*, edited by Stephen John Stedman, Donald Rothchild and Elizabeth M. Cousens. 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2002.
- Amnesty International. *Mozambique: Human Rights and the Police*. AFR 41/001/1998, 1 April 1998.
- Annan, Kofi. *The Question of Intervention* (New York: United Nations, 1999).
- Ashdown, Paddy. "What I Learned in Bosnia." *New York Times*, 28 October 2002.
- Aziakou, Gerard. "Council ponders draft resolution on deploying UN troops in Darfur." *Agence France-Presse*, 30 August 2006.
- Azimi, Nassrine, ed. *The Role and Functions of Civilian Police 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Debriefing and Lessons*. Report and Recommendation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Singapore. London: Kluwer Law International and United Nations Institute for Training and Research, December 1996.
- Bailer, Michael, Robert Maguire, and J. O'Neil G. Pouliot. "Haiti: Military-Police Partnership for Public Security." In *Policing the New World Disorder*, edited by Robert B. Oakley, Michael J. Dziedzic, and Eliot M. Goldberg.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98.
- Bajraktari, Ylber, Arthur Boutellis, Fatema Gunja, Daniel Harris, James Kapsis, Eva Kaye, and Jane Rhee. *The PRIME System: Measuring the Success of Post-Conflict Police Reform*, A workshop report from the Woodrow Wilson School of Public and International Affairs, Princeton Universit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January 2006. <http://www.wws.princeton.edu/research/PWReports/F05/wws591b.pdf>.
- Bayley, David H. *Democratizing the Police Abroad: What to Do and How to Do It*. Washington, DC: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2001.
- \_\_\_\_\_. *Changing the Guard: Developing Democratic Police Abroa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November 2005.
- Brahimi Report. *Report of the Panel on United Nations Peace Operations*. [http://www.un.org/peace/reports/peace\\_operations/](http://www.un.org/peace/reports/peace_operations/)

- Broer, Harry, and Michael Emory. "Civilian Police in UN Peacekeeping Operations." In *Policing the New World Disorder*, edited by Robert B. Oakley, Michael J. Dziedzic, and Eliot M. Goldberg.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98.
- Bronsen, Rachel. "When Soldiers Become Cops." *Foreign Affairs* 81, No. 6, November/December 2002.
- Brown, Michael ed. *The International Dimensions of Internal Conflict*. Cambridge: The MIT Press, 1997.
- Bruce, David, and Rachel Neild. *The Police that We Want: A Handbook for Oversight of the Police in South Africa*. Johannesburg: Centre for the Study of Violence and Reconciliation and the 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2005.
- Bryden, Alan, Timothy Donais, and Heiner Hanggi. "Shaping a Security Governance Agenda in Post-Conflict Peacebuilding." Geneva Centre for the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DCAF), Policy Paper No. 11, November 2005.
- Brzoska, Michael, and Andreas Heinemann-Gruder. "Security Sector Reform and Post-Conflict Reconstruction Under International Auspices." In *Reform and Reconstruction of the Security Sector* edited by Alan Bryden and Heiner Hanggi. Baden-Baden: Nomos Verlagsgesellschaft, 2004.
- Call, Charles T. "Challenges in Police Reform: Promoting Effectiveness and Accountability." IPA Policy Report. New York, NY: International Peace Academy, 2003.
- \_\_\_\_\_. "Competing Donor Approaches to Post-Conflict Police Reform." *Conflict, Security, and Development* 2, No. 1, Spring 2002.
- \_\_\_\_\_. "Democratization, War and State-Building: Constructing the Rule of Law in El Salvador." *Journal of Latin American Studies* 35, No. 4, November 2003.
- \_\_\_\_\_. "Institutionalizing Peace: A Review of Post-Concept Peacebuilding Concepts and Issues for DPA."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31 January 2005.
- Call, Charles T. and Michael Barnett. "Looking for a Few Good Cops."

- International Peacekeeping* 6, No. 4, Winter 1999.
- \_\_\_\_\_, Charles T and William Stanley. "Protecting the People: Public Security Choices after Conflicts." *Global Governance* 7, No. 2, Spring 2001.
- Carlson, Scott. *Legal and Judicial Rule of Law Work in Multi-Dimensional Peacekeeping Operations: Lessons-Learned Study*. Peacekeeping Best Practices Unit. New York, NY: United Nations, March 2006.
- Carothers, Thomas. "The Rule of Law Revival." *Foreign Affairs* 77, No. 2, March/April 1998.
- Center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nual Review of Global Peace Operations 2007* February 2007. [http://www.cic.nyu.edu/internationalsecurity/docs/peacekeeping\\_BRIEFINGPAPER.pdf](http://www.cic.nyu.edu/internationalsecurity/docs/peacekeeping_BRIEFINGPAPER.pdf)
- Challenges Project. *Meeting the Challenges of Peace Operations: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Phase II Concluding Report 2003-2006. Stockholm: Elanders Goteb, 2005.
- Claude, Jr. Inis. *Pow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Random House, 1962.
- Collier, Paul and Nicholas Sambanis eds. *Understanding Civil War: Evidence and Analysis*. Washington DC: World Bank, 2005.
- Cordone, C. "Human Rights Training for Police." *International Peacekeeping* 6, No. 4, Winter 1999.
- Coutts, Sheila (Rapporteur). "Managing Security Challenges in Post-Conflict Peacebuilding." International Peace Academy Workshop Report. New York, NY: International Peace Academy, 22-23 June 2001.
- Davis, Robert C. "The Use Citizen Surveys as a Tool for Police Reform." New York, NY: Vera Institute of Justice, July 2000.
- Day, Graham. "The Training Dimension of the UN Mission in Bosnia and Herzegovina (UNMIBH)." *International Peacekeeping* 7, No. 2, Summer 2000.
- Day, Graham, and Christopher Freeman. "Policekeeping is the Key: Rebuilding the Internal Security Architecture of Postwar Iraq." *International Affairs* 79, No. 2, March 2003.
- \_\_\_\_\_. "Operationalizing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Policekeeping

- Approach.” *Global Governance* 11, No. 2, April-June 2005.
- De Coning, Cedric ed. *Seminar on the Role of Civilian Police in UN Peace Operations*. A report on a seminar on the role of Civilian Police in UN Peace Operations. Durban, South Africa: Training for Peace Partnership, ACCORD, 25-27 February 1998.
- Diehl, Paul. “Peacekeeping Operations and the Quest for Peace,”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03, No. 3, pp. 485-507, Autumn, 1988.
- Dodds, Felix and Tim Pippard eds. *Human & Environmental Security: An Agenda for Change*. London: Earthscan, 2005.
- Donais, Timothy. “Back to Square One: The Politics of Police Reform in Haiti.” *Civil War* 7, No. 3, August 2005.
- \_\_\_\_\_. “Peacekeeping’s Poor Cousin: Canada and the Challenge of Post-Conflict Policing.” YCISS Working Paper No. 29, York University Centre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Studies, August 2004.
- Doyle, Michael W. and Nicholas Sambanis. *Making War and Building Peace: United Nations Peace Opera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 \_\_\_\_\_. “International Peacebuilding: A Theoretical and Quantitative Analysi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92, pp. 779-801, 2000.
- Durch, William J. ed. *The Evolution in UN Peacekeeping: Case Studies and Comparative Analysis*. New York, NY: St. Martins Press, 1993.
- Durch, William J. Victoria K. Holt, Caroline R. Earle, and Moira K. Shanahan. *The Brahimi Report and the Future of UN Peace Operations*. Washington, DC: The Henry L. Stimson Center, 2003.
- Dwan, Renata, ed. *Executive Policing: Enforcing the Law in Peace Operations*. SIPRI Research Report No. 1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_\_\_\_\_. “Policing Europe, European Policing? The Challenge of Coordination in International Policing.” Summary of workshop held at th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Stockholm, Sweden, 4-5 May 2001.

- Dziedzic, Michael J. "Introduction." In *Policing the New World Disorder*, edited by Robert B. Oakley, Michael J. Dziedzic and Eliot M. Goldberg.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98.
- \_\_\_\_\_. "Kosovo." In *Twenty-First Century Peace Operations* edited by William Durch and Tobias Berkman.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forthcoming.
- Dziedzic, Michael J. and Andrew Blair. "Bosnia and the International Police Task Force." In *Policing the New World Disorder*, edited by Robert B. Oakley, Michael J. Dziedzic, and Eliot M. Goldberg.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98.
- Dziedzic, Michael and Col. Christine Stark. "Bridging the Public Security Gap: The Role of the Center of Excellence for Stability Police Units in Contemporary Peace Operations." USIP Briefing,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June 2006.
- Ebo, Adedeji. "The Challenge and Opportunities of Security Sector Reform in Post-Conflict Liberia." Occasional Paper No. 9. Geneva: Center for the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DCAF), December 2005.
- Eide, Espan B. and Tor Tanke Holm. "Introduction." *International Peacekeeping* 6, No. 4, Winter 1999.
- \_\_\_\_\_. *Peacebuilding and Police Reform*. London: Frank Cass, 2000.
- Ferguson, Chris. "Police Reform, Peacekeeping and SSR: The Need for a Closer Synthesis." *Journal of Security Sector Management* 2, No. 3, September 2004.
- Field, Kimberly C. and Robert M. Perito. "Creating a Force for Peace Operations: Ensuring Stability with Justice." *Parameters* 32, No. 4, Winter 2002/2003.
- Fischer, Jeff. "Elections and International Civilian Policing: History and Practice in Peace Operations." IFES White Paper,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lection Systems, June 2002.
- Fortna, Virginia Page. "United Nations Transition Assistance Group." In *The Evolution in UN Peacekeeping: Case Studies and Comparative Analysis* edited by William J. Durch. New York, NY: St. Martins Press, 1993.

- Fukuyama, Francis,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Free Press, 1992.
- Gantz, Peter. "European Constabulary Police Needed to Improve UN Peace Operations." *Refugees International*, May 2005
- \_\_\_\_\_. "Haiti: UN Civilian Police Require Executive Authority." *Refugees International*, March 2005.
- \_\_\_\_\_. "Civilian Policing Capacity for Peace Operations –Private Sector Solution or Permanent Capacity?" *Refugees International*, November 2003
- Gourlay, Catriona. *Lessons Learned Study: Rosters for the Deployment of Civilian Experts in Peace Operations*. Peacekeeping Best Practices Unit,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eacekeeping. New York, NY: United Nations, February 2006.
- Groenewald, Hesta, and Gordon Peake. *Police Reform through Community-Based Policing: Philosophy and Guidelines for Implementation*. New York, NY: International Police Academy, September 2004.
- Gurr, Ted Robert. *People Versus States: Minorities at Risk in the New Century*. Washington D. 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2000.
- Heyzer, Noeleen. "Women, War and Peace: Mobilizing for Security and justice in the 21st Century," Felix Dodds and Tim Pippard eds. *Human & Environmental Security: An Agenda for Change*. London: Earthscan, 2005.
- ICISS,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Ottawa: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 2001.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eacekeeping Training Centres (IAPTC)/ USI – Centre for United Nations Peacekeeping. <http://www.iaptc.org/membership.htm>
- Jean-Marie Guehenno, panelist. *Assessing Its Value, Looking to the Future– Peacekeeping*. Meridian International Center, May 2006. [http://www.vodium.com/MediapodLibrary/detail.asp?eventID=8438wk64&sessionArgs=0A1U000000100000111&dataset=pn100286\\_meridian\\_unfuture&library=pn100286\\_meridian\\_unfuture](http://www.vodium.com/MediapodLibrary/detail.asp?eventID=8438wk64&sessionArgs=0A1U000000100000111&dataset=pn100286_meridian_unfuture&library=pn100286_meridian_unfuture).

- Guillermo O'Donnell. "Why the Rule of Law Matters." *Journal of Democracy* 15, No. 4, October 2004.
- Hansen, Annika S. *From Congo to Kosovo: Civilian Police in Peace Operations*. Adelphi Paper No. 343. London: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02.
- \_\_\_\_\_. "Strengthening Indigenous Police Capacity and the Rule of Law in the Balkans." In *The United Nations and Regional Security: Europe and Beyond* edited by Michael Pugh and Waheguru Pal Singh Sidhu. London/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2003.
- Hartz, Halvor. "CIVPOL: The UN Instrument for Police Reform." *International Peacekeeping* 6, No. 4, Winter 1999.
- Hartz, Halvor, and Laura Mercean, with Clint Williamson. "Safeguarding a Viable Peace: Institutionalizing the Rule of Law." In *The Quest for a Viable Peace: International Intervention and Strategies for Conflict Transformation* edited by Jack Covey, Michael J. Dziedzic, and Leonard R. Hawley.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2005.
- Heinemann-Gruder, Andreas and Igor Grebenschikov. "Security Governance by Internationals: The Case of Kosovo." *International Peacekeeping* 13, No. 1, March 2006.
- Hewitt, J. Joseph, Jonathan Wilkenfeld, and Ted Robert Gurr. *Peace and Conflict 2008*. Boulder and London: Paradigm Publishers, 2008.
- Hills, Alice. "International Peace Support Operations and CIVPOL: Should there be a permanent Global Gendarmerie?" *International Peacekeeping* 5, No. 3, Autumn 1998.
- \_\_\_\_\_. "The Inherent Limits of Military Police Forces in Policing Peace Operations." *International Peacekeeping* 8, No. 3, Autumn 2003.
- Hood, Ludovic. "Security Sector Reform in East Timor, 1999-2004." *International Peacekeeping* 13, No. 1, March 2006.
- Huang, Reyko. *Securing the Rule of Law: Assessing International Strategies for Post-Conflict Criminal Justice*. New York, NY: International Peace Academy, November 2005.

- Human Rights Watch. "Tortured Beginnings: Police Violence and the Beginnings of Impunity in East Timor." *Human Rights Watch* 18, No. 2 (C), New York: Human Rights Watch, April 2006.
- Huntington, Samuel.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Oklahoma: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 Hurwitz, Anges. "Rule of Law Programs in Multidimensional Peace Operations: Legitimacy and Ownership." Conference Paper. Geneva Centre for the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 (DCAF), April 2005.
- Hurwitz, Agnes and Gordon Peake (Rapporteur). *Strengthening the Security-Development Nexus: Assessing International Policy and Practice Since the 1990s*. Conference Report. New York, NY: International Peace Academy, April 2004.
- Hylton, Judy S. "Security Sector Reform: BiH Federation Ministry of the Interior." *International Peacekeeping* 9, No. 1, Spring 2002.
-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Arms Availability and the Situation of Civilians in Armed Conflict: A study presented by the ICRC." ICRC publication 1999 ref. 0734. Geneva: ICRC, 1999. <http://www.icrc.org/Web/eng/siteeng0.nsf/htmlall/p0734>.
- International Crisis Group. "Bosnia's Stalled Police Reform: No Progress, No EU." Europe Report 164. Brussels: International Crisis Group, 6 September 2005.
- \_\_\_\_\_. "Liberia and Sierra Leone: Rebuilding Failed States." Africa Report No. 87. Brussels: International Crisis Group, December 2004.
- \_\_\_\_\_. "Rebuilding Liberia: Prospects and Perils." Africa Report No. 75. Brussels: International Crisis Group, 30 January 2004.
- \_\_\_\_\_. "Sierra Leone: The State of Security and Governance." Africa Report 67. Brussels: International Crisis Group, September 2003.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06*. London: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2006.

- Jakobsen, Peter Viggo. "Military Forces and Public Security Challenges." In *The United Nations and Regional Security: Europe and Beyond* edited by Michael Pugh and Waheguru Pal Singh Sidhu. London/Boulder: Lynne Rienner Publishers, 2003.
- Jensen, Erik. "The Rule of Law and Judicial Reform: The Political Economy of Diverse Institutional Patterns and Reformers' Responses." In *Beyond Common Knowledge: Empirical Approaches to the Rule of Law* edited by Erik Jensen and Thomas Hell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 Jones, Seth G. Jeremy M. Wilson, Andrew Rathmell, K. Jack Riley. *Establishing Law and Order After Conflict*. Santa Monica, CA: RAND Corporation, 2005.
- Kaspersen, Anja T. Espend Barth Eide, and Annika S. Hansen. *International Policing and the Rule of Law in Transitions from War to Peace*. Working Paper No. 4. Challenges to Collective Security, NUPI's UN Programme. Oslo: NUPI, 2004.
- King's College, Conflict, Security & Development Group. *A Review of Peace Operations: The Case for Change*. London: International Policy Institute, King's College London, 2003.
- Kroeker, Mark. "Blue Beret Policing: To Protect and Serve Abroad," *UN Police Magazine*, December 2006.
- Langille, H. Peter. *Bridging the Commitment-Capacity Gap: Existing Arrangements and Options for Enhancing UN Rapid Deployment*. Monograph No. 19. Wayne: Center for UN Reform Education, 2002.
- Latham, Elizabeth Jean. "CivPol Certification: A Model for Recruitment and Training of Civilian Police Monitors." *World Affairs* 163, No. 4, Spring 2001.
- Lee, Shin-wha. *Promoting Human Security: Ethical, Normative and Educational Frameworks in East Asia*. Paris and Seoul: UNESCO, 2004.
- \_\_\_\_\_. "Unintended Consequences of Peace Operation on Humanitarian Action," edited by Chiyuki Aoi, Cedric de Coning, and Ramesh Thakur, *Unintended Consequences of Peacekeeping Operations*.

- Tokyo and New York: United Nations University, 2007.
- \_\_\_\_\_. “Preventive Diplomacy and UN Peacekeeping in Conflict Regions: Lessons from the Rwandan Genocide,” *Korea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5, No. 1, 2002. pp.71-92 (2003년 9월 출판)
- Lewis, William, Edward Marks and Robert Perito, “Enhancing Intranational Civilian Police in Peace Operations,” *USIP Special Report*. Washington D. 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2002.
- Lewis, William, Edward Marks, and Robert Perito. “Enhancing International Civilian Police in Peace Operations.” Special Report No. 85,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April 2002.
- Lynch, Colum. “Misconduct, Corruption by U.S. Police in Bosnia.” *Washington Post*, 29 May 2001.
- Mani, Rama. “Conflict Resolution, Justice and the Law: Rebuilding the Rule of Law in the Aftermath of Complex Political Emergencies.” *International Peacekeeping* 5, No. 3, Autumn 1998.
- \_\_\_\_\_. “Contextualizing Police Reform: Security, the Rule of Law and Post-Conflict Peacebuilding.” *International Peacekeeping* 6, No. 4, Winter 1999.
- Marenin, Otwin. “United States Police Assistance to Emerging Democracies.” *Policing and Society* 8, 1997.
- \_\_\_\_\_. “Restoring Policing Systems in War Torn Nations: Process, Problems, Prospects.” Geneva: Geneva Centre for the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2005.
- McMullin, Jareme. “Reintegration of Combatants: Were the Right Lessons Learned in Mozambique?” *International Peacekeeping* 11, No. 4, Winter 2000.
- Meek, Sarah. “Policing in Sierra Leone.” In *Sierra Leone: Building the Road to Recovery* edited by Mark Malan, Sarah Meek, Thokozani Thusi, Jeremy Ginifer, Patrick Coker. ISS Monograph 80. Pretoria: Institute for Security Studies, March 2003.
- Mobekk, Eirin. *Identifying Lessons in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Policing Missions*. Policy Paper No. 9. Geneva: Geneva Centre for the Democratic Control of Armed Forces (DCAF), November 2005.

[http://www.dcaf.ch/\\_docs/pp09\\_united-nations-international\\_policing.pdf](http://www.dcaf.ch/_docs/pp09_united-nations-international_policing.pdf).

\_\_\_\_\_. "International Post-Conflict Policing Operations: Enhancing Co-Ordination and Effectiveness." Background Paper. International Conference, Wilton Park, 26-29 January 2004.

Moore, Mark H. and Anthony A. Braga. "Measuring and Improving Police Performance: The Lessons of Compstat and its Progeny." *Policing* 26, No. 3, 2003.

Neild, Rachel. "From National Security to Citizen Security: Civil Society and the Evolution of Public Order Debates." Report for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tic Development, Montreal: International Centre for Human Rights and Democratic Development, 1999.

\_\_\_\_\_. "Democratic Police Reforms in War-Torn Societies." *Conflict, Security, and Development* 1, No. 1, Summer 2001.

Oakley, Robert B. Michael J. Dziedzic and Eliot M. Goldberg, eds. *Policing the New World Disorder: Peace Operations and Public Security*.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98.

O'Donnell, Guillermo. "Why the Rule of Law Matters." *Journal of Democracy* 15, No. 4, October 2004.

O' Neill, William G. *Kosovo: An Unfinished Peace*. International Peace Academy Occasional Paper Series. Boulder, CO: Lynner Rienner Publishers, 2002.

\_\_\_\_\_. *Police Reform in Post-Conflict Societies: What We Know and What We Still Need to Know*. New York, NY: International Peace Academy, April 2005.

Osland, Kari M. "The EU Police Mission in Bosnia and Herzegovina." *International Peacekeeping* 11, No. 3, Autumn 2004.

Oswald, Bruce. "Addressing the Institutional Law and Order Vacuum: Key Issues and Dilemmas for Peacekeeping." United Nations Peacekeeping Best Practices Unit. New York, NY: United Nations, September 2005.

- Peake, Gordon and Kaysie Studdard. "Policebuilding: The International Deployment Group in the Solomon Islands." *International Peacekeeping* 12, No. 4, Winter 2005.
- Peake, Gordon. *Policing the Peace: Police Reform Experiences in Kosovo, Southern Serbia and Macedonia*. London: Saferworld, January 2004.
- Pearce, Jenny. "Peace-Building at the Periphery: Lessons from Central America." *Third World Quarterly* 20, No. 1, 1999.
- Perito, Robert. *Where is the Lone Ranger when we need him? America's search for a post-conflict stability force*. Washington, DC: US Institute of Peace, 2004.
- Pomfret, Joshua. "Police Find It Hard to Fill Jobs." *The Washington Post*, 27 March 2006.
- Puchala, Donald J. Katie Verlin Laatikainen, and Roger A. Coate, *United Nations Politics: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a Divided World*.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earson Prentice Hall, 2007.
- Primosch, Edmund G. "The Roles of United Nations Civilian Police (UNCIVPOL) with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Th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 43, No.2. (April 1994), pp. 425-431.
- Pugh, Michael and Wahegure Pal Singh Sidhu. *The United Nations and Regional Security: Europe and Beyond*. London: Lynne Rienner Publishers, 2003.
- Ramsbotham, Oliver and Tom Woodhouse, *Encyclopedia of International Peacekeeping Operations*. Santa Barbara: ABC-CLIO, 1999.
- Rawski, Frederick. "To Waive or Not to Waive." *Connecticut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8, 2002.
- Rees, Edward. *Security Sector Reform (SSR) and Peace Operations: "Improvisation and Confusion" from the Field*. Peacekeeping Best Practices Unit. New York, NY: United Nations, March 2006.
- Robert, Rotberg. "Failed States, Collapsed States, Weak States: Causes and Indicators." In *State Failure and State Weakness in a Time of Terror* edited by Robert Rotber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Press, 2003.

- Sands, David. "The Thin Blue Line." *The Washington Times*, 24 July 2006.
- Sarre, Rick. "Community Policing. Success or Failure? Exploring Different Models of Evaluation." In *The Police and the Community: Proceedings of a Conference Held 23-25 October 1990* edited by Julia Vernon and Sandra McKillop. Canberra: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1992.
- Schear, James A. and Karl Farris. "Policing Cambodia: The Public Security Dimensions of U. N. Peace Operations." In *Policing the New World Disorder* edited by Robert B. Oakley, Michael J. Dziedzic, and Eliot M. Goldberg.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98.
- Schmidl, Erwin A. "Police Functions in Peace Operations: An Historical Overview." In *Policing the New World Disorder* edited by Robert B. Oakley, Michael J. Dziedzic, and Eliot M. Goldberg.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98.
- \_\_\_\_\_. *Police in Peace Operations*. Vienna: Landesverteidigungsakademie, Militarwissenschaftliches Buro, 1998.
- Schor, Miguel. "The Rule of Law." In *Encyclopedia of Law and Society: American and Global Perspectives* edited by David Clark. London: Sage Publications, 2005.
- Serafino, Nina. *Policing in Peacekeeping and Related Stability Operations: Problems and Proposed Solutions*.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30 March 2004.
- Shaw, Mark. "Crime and Policing in Transitional Societies—Conference Summary and Overview." In *Crime and Policing in Transitional Societies*. (Seminar Report). Jan Smuts House, University of the Witswatersrand, 30 August–1 September 2000. Johannesburg: Konrad Adenauer Stiftung, 2001.
- Shimizu, Hirofumi and Todd Sandler. "Peacekeeping and Burden-Sharing, 1994-2000," *Journal of Peace Research*, Vol. 39, No. 6. November 2002, pp. 651-668.
- Sismandis, Roxanne D.V. *Police Functions in Peace Operations*. Report from a workshop organized by the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 Washington, DC: US Institute of Peace, 1997.
- Spatafora, Amb. Marcello. "Statement by H. E. Ambassador Marcello Spatafora, Permanent Representative of Italy to the United Nations." 60th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Agenda Item 32, Comprehensive Review of the Whole Question of Peacekeeping Operations in All Their Aspects, Special Committee and Decolonization Committee. New York, 24 October 2005. [http://www.italyun.org/docs/statemen/2005\\_10\\_24\\_spatafora.htm](http://www.italyun.org/docs/statemen/2005_10_24_spatafora.htm).
- Stanley, William. "International Tutelage and Domestic Political Will: Building a New Civilian Police Force in El Salvador."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30, No. 1, Spring 1995.
- Stedman, Stephen John, "Spoiler Problems in Peace Processe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2, No. 2, Fall 1997, pp. 5-53.
- Steenkamp, Chrissie. "The Legacy of War: Conceptualizing a 'Culture of Violence' to Explain Violence after Peace Accords." *The Round Table* 94, No. 379, April 2005.
-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SIPRI Yearbook 2006*.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Strohmeier, Hansjorg. "Collapse and Reconstruction of a Judicial System: The United Nations Missions in Kosovo and East Timor."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95, No. 1, January 2001.
- Suhrke, Astri. "Peacekeepers as Nation-builders: Dilemmas of the UN in East Timor." *International Peacekeeping* 8, No. 4, Winter 2001.
- Thakur, Ramesh, *The United Nation, Peace and Security: From Collective Security to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 Thakur, Ramesh, Chiyuki Aoi, and Cedric de Coning eds.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Peacekeeping Operations*. Tokyo: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2007.
- Thompson, Drew. "Beijing's Participation in UN Peacekeeping Operations," *China Brief*, Volume 5, Issue 11, May 10, 2005, pp.7-10.
- Tschirgi, Necla. *Post-Conflict Peacebuilding Revisited: Achievements, Limitations, Challenges. Policy Paper, Security-Development Nexus*

*Program*. New York, NY: International Peace Academy, October 2004.  
[http://www.ipacademy.org/PDF\\_Reports/IPA\\_E-REPORT-POST-CONFLICT\\_final.pdf](http://www.ipacademy.org/PDF_Reports/IPA_E-REPORT-POST-CONFLICT_final.pdf).

Tulchin, Joseph S. and Heather A. Golding. "Looking Ahead: Steps to Reduce Crime and Violence in the Americas." In *Crime and Violence in Latin America: Citizen Security, Democracy, and the State* edited by Hugo Fruhling, Joseph Tulchin, and Heather Golding. Washington, DC: Woodrow Wilson Center Press, 2003.

United Nations, *UN Police Magazine*, December 2006.

\_\_\_\_\_. *UN Police Magazine*, DPI/2444, May 2007.

\_\_\_\_\_. *Budget for the support account for peacekeeping operations for the period from 1 July 2006 to 30 June 2007,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0/727. 23 March 2006.

\_\_\_\_\_. *Comprehensive review of the whole question of peacekeeping operations in all their aspects: Report of the Special Committee on Peacekeeping Operations*. A/54/839, 20 March 2000.

\_\_\_\_\_. *Eleventh Progres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United Nations Mission in Liberia*. S/2006/376, 9 June 2006.

\_\_\_\_\_.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of the Committee on Peacekeeping Operation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60/640, 29 December 2005.

\_\_\_\_\_. *Identical Letters Dated 21 August 2000 from the Secretary-General to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and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A/55/305-S/2000/809, 21 August 2000.

\_\_\_\_\_. *Letter dated 9 February 2005 from the Secretary-General addressed to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S/2005/79, 9 February 2005.

\_\_\_\_\_. *Management Audit of the United Nations Civilian Police Operations: Review of the efficiency and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functioning of the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activities of the Office of the Internal Oversight Services, Fifty-fifth session, Agenda items 116 and 126,

A/55/812, 1 March 2001.

United Nations. *Monthly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Darfur*, S/2006/430, 21 June 2006

\_\_\_\_\_. *Nineteenth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United Nations Organization Mission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S/2005/603, 26 September 2005.

\_\_\_\_\_. *Performance Report on the Budget for the Support Account for Peacekeeping Operations for the Period from 1 July 2003 to 30 June 2004: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A/59/714, 25 February 2005.

\_\_\_\_\_. *Report of the Panel on United Nations Peace Operations*. A/55/305 . S/2000/809, 21 August 2000.

\_\_\_\_\_.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Darfur*. S/2006/591, 28 July 2006.

\_\_\_\_\_.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mplementation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783 (1992)*. S/24800, 15 November 1992.

\_\_\_\_\_.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United Nations Angola Verification Mission*. S/22627, 20 May 1991.

\_\_\_\_\_.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United Nations Angola Verification Mission (UNAVEM II)*, S/1995/97, 1 February 1995.

\_\_\_\_\_.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United Nations Interim Administration Mission in Kosovo*. S/1999/1250, 23 December 1999.

\_\_\_\_\_.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United Nations Operation in Mozambique (ONUMOZ)*. S/1994/89/Add.1, 28 January 1994.

\_\_\_\_\_.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United Nations Operation in Mozambique (ONUMOZ)*. S/24892, 3 December 1992.

\_\_\_\_\_.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United Nations Stabilization Mission in Haiti*. S/2004/908, 18 November 2004.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United Nations Transitional Administration in East Timor*. S/2000/53, 26 January 2000.

\_\_\_\_\_.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s High-level Panel on Threats, Challenges and Change* A/59/565, 2 December 2004.

\_\_\_\_\_. *Report of the Special Committee on Peacekeeping Operations and its Working Group at the 2006, Substantive Session*. A/60/19, 22 March 2006.

\_\_\_\_\_. *The Rule of law and transitional justice in conflict and post-conflict societie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S/2004/616, 23 August 2004.

\_\_\_\_\_. *Seventh progres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United Nations Operation in Cote d'Ivoire*. S/2006/2, 3 January 2006.

\_\_\_\_\_. *Speci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election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S/2005/320, 26 May 2005.

\_\_\_\_\_. *Special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United Nations Transitional Authority in Cambodia*. S/24286, 14 July 1992.

\_\_\_\_\_. *Supplement to An Agenda for Peace: Position Paper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Occasion of the Fiftieth Anniversary of the United Nations*. A/50/60. S/1995/1, 25 January 1995.

\_\_\_\_\_.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621 (2005)*. S/RES/1621 (2005), 6 September 2005.

\_\_\_\_\_.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704 (2006)*. S/RES/1704, 25 August 2006.

\_\_\_\_\_.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694 (2006)*. S/RES/1694, 13 July 2006.

\_\_\_\_\_.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867 (1993)*. S/RES/867, 23 September 1993.

\_\_\_\_\_.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460 (1996)*. S/1996/460, 21 June 1996.

- United Nation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65 (2004)*. S/RES/1565, 1 October 2004.
- \_\_\_\_\_. Report of the Seminar on the Role of Police in Peacekeeping Operations. New York, NY: United Nations, 20-21 March 1998.
- \_\_\_\_\_. Report of the Follow-up Workshop on Civilian Police i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New York, NY: United Nations, 29-30 July 1999.
- \_\_\_\_\_. Selection Standards and Training Guidelines for UNCIVPOL. Draft, May 1997.
- \_\_\_\_\_. *The Blue Helmets: A Review of United Nations Peace-keeping*, 3rd edition. New York: United Nations, 1996.
- \_\_\_\_\_. "Mission Totals." New York, NY: United Nations, 30 June 2001. <http://www.un.org/Depts/dpko/dpko/contributors/>.
- \_\_\_\_\_. "Mission Totals." New York, NY: United Nations, 31 December 2003. <http://www.un.org/Depts/dpko/dpko/contributors/>.
- \_\_\_\_\_. "Monthly Summary of Contributions." 30 June 2006. <http://www.un.org/Depts/dpko/dpko/contributors/>.
- \_\_\_\_\_. "Monthly Summary of Troop Contribution to United Nations Operations." 30 June 2001. <http://www.un.org/Depts/dpko/dpko/contributors/>.
- \_\_\_\_\_. "UN Mission's Contributions by Country." 31 July 2005 and 31 October 2005. <http://www.un.org/Depts/dpko/dpko/contributors/>.
- \_\_\_\_\_. United Nations Civilian Police Principles and Guidelines. New York, NY: United Nations, December 2000.
- \_\_\_\_\_. The United Nations Transitional Administration in Eastern Slavonia, Baranja and Western Sirmium (UNTAES), January 1996-January 1998: Lessons Learned. Peacekeeping Best Practices Unit. New York, NY: United Nations, July 1998. <http://pbpu.unlb.org/pbpu/library/UNTAES.pdf>.
-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Operations, Background Note." February 2006.

<http://www.un.org/Depts/dpko/dpko/archive/2006/bn0206e.pdf>.

---

\_\_\_\_\_. "United Nations Political and Peacebuilding Missions, Background Note." 30 June 2006. <http://www.un.org/Depts/dpko/dpko/archive.htm>.

---

\_\_\_\_\_. "United Nations Political and Peacebuilding Missions. Background Note." 31 March 2006. <http://www.un.org/Depts/dpko/dpko/archive/2006/bn0306e.pdf>.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and Edward Rees. "Light Blue: Public Perception of Security and Police Performance in Kosovo." Pristina: UNDP Kosovo, June 2004.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The Center of Excellence for Stability Police Units: Exploring the Way Ahead." A Workshop Report. Washington, DC: US Institute of Peace, Center of Excellence for Stability Police Units, and U.S. Army Peacekeeping and Stability Operations Institute, 2 December 2004. [http://www.usip.org/pubs/usipeace\\_briefings/2006/coespu.pdf](http://www.usip.org/pubs/usipeace_briefings/2006/coespu.pdf).

Vetschera, Heinz, and Matthieu Damian. "Security Sector Reform in Bosnia and Herzegovina: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ternational Peacekeeping* 13, No. 1, March 2006.

Weinmann, Achim. "Resourcing the Recurrence of Intrastate Conflict: Parallel Economies and Their Implications for Peacebuilding." *Security Dialogue* 36, No. 4, 2005.

Weiss, Thomas G. Weiss, David P. Forsythe, Roger A. Coate. "Principles of Traditional Peacekeeping," edited by Thomas G. Weiss, David P. Forsythe, Roger A. Coate, *The United Nations and Changing World Politics*, 4th ed. Boulder: Westview, 2005.

Whelan, Peter, "Civilian police in peace support operations," *The Ploughshares Monitor*. Vol. 26, No. 4, Winter 2005.

Woods, James. "Mozambique: The CIVPOL Operation." In *Policing the New World Disorder*, edited by Robert B. Oakley, Michael J. Dziedzic, and Eliot M. Goldberg. Washington, DC: National Defense University Press, 1998.

Ziegler, Melissa and Rachel Nield (Rapporteurs). "From Peace to Governance:

Police Reform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Conference Report,  
Washington Office on Latin America, August 2002.

#### 웹 페이지

국방부 <http://www.mnd.go.kr>  
국제연합 <http://www.un.org>  
국제연합코소보임시행정기구 <http://www.unmikonline.org/>  
뉴욕대학 국제협력연구센터 <http://www.cic.nyu.edu/internationalsecurity/>  
미국 국무부 <http://www.state.gov>  
옵살라대학교 분쟁데이터 프로그램 <http://www.pcr.uu.se/>

#### 정기간행물

BBC News  
Guardian  
Nepal Times  
Reuters  
UN Police Magazine